

연구보고서(수시) 2019-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주유선
김기태 · 김보미

【책임연구자】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Assessing Effect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the U.S.: Does Race Matter? Race and Social Problems, 2019, 11, 212-224.

【공동연구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주 유 선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16-3 93330

발간사 <<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얼핏 보면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는 흔히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단지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소위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 혹은 ‘보통’과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며, 사회에서 그 존재를 부정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특히 날이 갈수록 이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재되어 있는 형태의 차별이 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는 소수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와 같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근시일 내에 주요한 정책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다수자이지만, 소수자이다. 다른 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19
제2절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34
제3장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	47
제1절 국내 정책	49
제2절 국외 정책	72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89
제1절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93
제2절 북한이탈주민	98
제3절 동성애자	101
제4절 소결	105

제5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09

제1절 조사 개요 111

제2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117

제3절 소결 15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9

제1절 정책 제언 161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남은 과제 175

제3절 나가며 177

참고문헌 179

부 록 199

부록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지 199

부록 2. 부표 및 그림 214

표 목차

〈표 2-1-1〉 기존 연구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	27
〈표 3-1-1〉 인권교육지원법안(가칭) 관련 주요 흐름	53
〈표 3-1-2〉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주요 내용	55
〈표 3-1-3〉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57
〈표 3-1-4〉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정책(2018~2020년)	62
〈표 3-1-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영역	65
〈표 3-1-6〉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현황	66
〈표 3-1-7〉 인권기본법(가칭) 관련 주요 흐름	69
〈표 4-1-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외국인 이민자·노동자	96
〈표 4-2-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북한이탈주민	100
〈표 4-3-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동성애자	103
〈표 4-4-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	106
〈표 4-4-2〉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2018년)	107
〈표 5-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113
〈표 5-1-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114
〈표 5-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16
〈표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118
〈표 5-2-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121
〈표 5-2-3〉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경험 여부	124
〈표 5-2-4〉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	126
〈표 5-2-5〉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	130
〈표 5-2-6〉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133
〈표 5-2-7〉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134
〈표 5-2-8〉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134
〈표 5-2-9〉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36
〈표 5-2-10〉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38

〈표 5-2-11〉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경험 여부	139
〈표 5-2-12〉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	140
〈표 5-2-13〉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143
〈표 5-2-14〉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144
〈표 5-2-15〉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144
〈표 5-2-16〉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46
〈표 5-2-1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	148
〈표 5-2-18〉 대인 신뢰	149
〈표 5-2-19〉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50
〈표 5-2-20〉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51
〈표 5-2-21〉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152
〈표 5-2-22〉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152
〈표 5-2-23〉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153
〈표 5-2-24〉 사회정의 척도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154
〈표 6-1-1〉 교육을 통한 접근	167
〈표 6-1-2〉 소수자/다수자 교류 및 문화 프로그램	170
〈표 6-1-3〉 미디어 관련 정책적 개입	172
〈표 6-1-4〉 법적·제도적 정책 개입	174

그림 목차

[그림 2-2-1] ABC모델	37
[그림 4-1-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외국인 이민자·노동자) ..	94
[그림 4-1-2]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외국인 이민자·노동자) ..	95
[그림 4-1-3]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한국	97
[그림 4-1-4]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1~6차 국가 비교	98
[그림 4-2-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북한이탈주민)	99
[그림 4-2-2]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북한이탈주민)	100
[그림 4-3-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동성애자)	102
[그림 4-3-2]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동성애자)	102
[그림 4-3-3]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한국	104
[그림 4-3-4]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국가 비교	105
[그림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118
[그림 5-2-2]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경험 여부	125
[그림 5-2-3]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가족으로서)	127
[그림 5-2-4]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친구로서)	128
[그림 5-2-5]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일터에서)	128
[그림 5-2-6]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우리 동네에서)	129
[그림 5-2-7]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가족으로서)	131
[그림 5-2-8]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친구로서)	131
[그림 5-2-9]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일터에서)	132
[그림 5-2-10]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우리 동네에서)	132
[그림 5-2-11]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경험 여부	139
[그림 5-2-12]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대중매체)	141
[그림 5-2-13]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소셜미디어)	141
[그림 5-2-14]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온라인 게임 및 웹툰)	142
[그림 5-2-15]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142
[그림 6-1-1] 소수자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정책 방향 틀	162

부록 목차

〈부표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214
〈부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215
〈부표 3〉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216
〈부표 4〉 집단 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비교	217
〈부표 5〉 집단 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비교	219
〈부표 6〉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	236
〈부표 7〉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	236
〈부표 8〉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236
〈부표 9〉 인권교육	238
〈부표 10〉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현황	242
[그림 1]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으로서)	221
[그림 2]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으로서)	221
[그림 3]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친구로서)	222
[그림 4]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친구로서)	222
[그림 5]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일터에서)	223
[그림 6]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일터에서)	223
[그림 7]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224
[그림 8]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224
[그림 9]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으로서)	225
[그림 10]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으로서)	225
[그림 11]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친구로서)	226
[그림 12]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친구로서)	226
[그림 13]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일터에서)	227
[그림 14]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일터에서)	227

[그림 15]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228
[그림 16]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228
[그림 17]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대중매체)	229
[그림 18]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대중매체)	229
[그림 19]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소셜미디어)	230
[그림 20]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소셜미디어)	230
[그림 21]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온라인 게임 및 웹툰)	231
[그림 22]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온라인 게임 및 웹툰)	231
[그림 23]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232
[그림 24]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232
[그림 25]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233
[그림 26]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233
[그림 27]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234
[그림 28]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234
[그림 29]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	235
[그림 30]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	235
[그림 31]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237

Abstract <<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The Case of South Korea

¹⁾Project Head: Chu, Yoosu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in South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Social minorities in this study are conceptualized as: immigrant workers, North Korean refugees, and sexual minorities. This study is guided by a contact theory, a minority-threat theory, and a social justice perspective. Secondary data sets, such as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tudy (2013-2018), and the World Values Survey (waves 1-6), were analyzed. We also conducted a web-survey with 1,000 respondents to investigate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We found that contact matters for its impact on prejudice. The quality of contact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antity of contact. Regarding minority-threat theory, Koreans are more likely to hav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when they have a higher level of generalized trust, social trust, and social cohesion. Also, social justice is associated with less prejudice towards minorities. Several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were drawn with

Co-Researchers: Kim, Ki-tae Kim, Bomi

regard to reducing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towards social minorities.

*Key words: social minorities, migrant workers, North Korean refugees, sexual minorities,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1. 서론

-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혐오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여러 통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함.
-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이래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9%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임.
- 국제비교연구인 제6차 2010-2014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 또한 한국인은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일관되게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거부감(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단순히 개인의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편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 첫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정의하고자 함.
-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존 국내외 2차 자료(사회통합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조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넷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을 검토함.
- 다섯째,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및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한 사회 내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받는 집단으로 정의함.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구분함.
-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중에서도 새로운 소수자이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 및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주목함.

- 개인적 차원의 접촉이론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집단 위협감, 사회정의 관점을 이론적 논의의 틀로 삼음.
- 접촉이론: Allport(1954)의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낯선, 외집단과의 직접접촉과 상호작용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집단 위협감: 불안감이나 위협감과 같이 접촉에서 느낀 주관적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편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 사회정의 관점: 보편적 인권과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사상에 기반하여 소수자 집단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이들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

3.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

- 인식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법적·제도적 개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인식 개선: 인권교육지원법안(가칭), 교과과정 내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인식 개선 캠페인, 지자체·민간단체 중심 캠페인, 인권보도준칙 등
- 법적·제도적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 관련 조례 및 인권기본계획, 인권기본법(가칭), 차별금지법(가칭), 혐오표현금지법(가칭) 등
-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 유럽연합의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정책, 유럽연합의 소수자 관련 통계 구축 정책 등

4.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동성애자 집단,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순.
- 직장 동료, 이웃과 같이 사회적 거리가 먼 관계보다 가족, 친구처럼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관계에 대한 포용성이 높음.

□ 세계가치관조사 제1차-제6차 분석

-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이지만, OECD 국가 평균뿐 아니라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포용도를 보이고 있음.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암묵적 편견이 명시적 편견보다 높고, 성소수자의 경우 명시적 편견이 암묵적 편견보다 높았음.

□ 접촉에 따른 편견

- 직간접 접촉 여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주노동자와 일터에서 자주 만날 경우, 명시적 편견이 높았음.
즉 비수평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에서의 잦은 접촉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빈도(quantity)보다 중요한 것은 접촉인상(quality)임. 직간접 접촉 모두 접촉 인상이 '긍정적'인 경우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감소. 특히 미디어에서 받은 접촉 인상이 중요함. 소수자를 다루는 미디어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
- 위협 인식에 따른 편견
 - 위협 인식이 낮을수록(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만족할수록) 세 집단에 대한 명시적이 편견이 낮아졌음.
- 사회정의감에 따른 편견
 - 사회정의감이 높을수록 명시적 편이 낮았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암묵적 편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첫째, 교육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신념이 형성되고 정교화되는 아동·청소년기에는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반편견 교육 등이 필요함.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 성인기에는 일방적 ‘계몽’이 아니라, 관련 실무 담당자, 공공영역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 긍정적 접촉 경험이 편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수자·소수자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소수자’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가 필요함.

□ 셋째,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개인의 차별행동은 기관, 국가적 개입에 의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음.
- 인권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 보편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 용어: 사회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편견, 차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월 19일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정유경, 2019. 6. 19.; 노현웅, 2019. 6. 24.). 정현울 익산시장 또한 지난 6월 11일,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나눔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 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박임근, 2019. 6. 25.). 이러한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명백한 비하·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정현울 시장은 이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 ‘당신들은 잡종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띄워 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했다(박임근, 2019. 6. 25.). 이러한 정 시장의 발언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일부 정치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2009년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던 인도 출신 보노짚 후세인 교수에게 한 한국 남성이 버스 안에서 “더러운 놈...

냄새가 난다”, “너 어디서 왔느냐, 아랍 놈이냐”와 같은 발언을 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기소된 첫 모욕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노정연, 2019).

이처럼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혐오는 마냥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러 통계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이래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9%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 비교 연구인 제6차 2010-2014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 또한 한국인은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일관되게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거부감(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단순히 개인의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자와 접촉한 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영역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신뢰 정도, 경제 상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제약하고, 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크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게으르다”와 같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명시적 편견과, 장애인에게 “집에 편하게 있지 밖에 왜 나와서 고생이냐”와 같은 동정 어린 말이나 태도,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남

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보호적인(benevolent) 태도에서 확인 되듯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편견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는 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거부감 같은 명시적 편견에 초점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엔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암묵적 편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현경, 2011; Pettigrew & Meertens, 1995). 암묵적 편견은 특히 소수자에 대한 보다 은밀하고 일상적인 형태의 차별로 이어지고, 소수자로 하여금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내면화(victimization)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 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 등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신경희, 최지원, 2015; 안혁근 외, 2010)에 동의하여, 사회적 소수자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국내외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양상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 고찰, 인식 조사 결과 분석, 정책 검토 등을 통하여, 이를 정책 제언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 장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사회적 소수자 개념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를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접촉이론, 집단 위협이론, 사회정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유럽연합)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가통계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의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포용 정도를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국제 비교 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1~6차)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내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분석·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고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를 정의하였다.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국내·외(유럽연합)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법, 정책,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나. 양적 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을 함께 조사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다. 양적 분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2차 자료(한국행정연구원의 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 1~6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지 개발에 있어, 관련 소수자 연구 경험이 있고 조사지 및 척도 개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심리학)에게 자문하여 도움을 받았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인권 및 소수자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온 인권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제2절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소수자 개념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 미국 및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유럽에서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경의 재형성, 인구 이동 등으로 출신 국가 밖에 거주하는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¹⁾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수자 논의가 시작되었다(Gleason, 1991). 미국에서는 다인종 국가의 특성상 인종 간 관계에 주목하여 인종적 측면에서의 소수자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미국의 사회학자인 Donald Young(1932, Gleason, 1991에서 재인용)은 생물학적 특성, 국가적·문화 특성, 혹은 이 두 가지의 결합적 특성으로 구별되는 집단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소수자 집단(minority peoples)’, ‘인종적·민족적 소수자(minorities of racial or national origi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Gleason, 1991). 하지만 미국의 이민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인종 간 관계가 주요 사회 갈등 및 운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Donald Young(1932)의 용어는 주로 인종(race)을 가리키는 용어와 큰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Gleason, 1991). 즉 흑인이 곧 소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의 논의는 현재의 포괄적인 소수자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개념은 Louis Wirth(1945, Gleason, 1991에서 재인용)의 논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1) 유고슬라비아에 거주하는 알바니아, 러시아에 거주하는 체첸 등(Berbrrier, 2002).

수 있다(Gleason, 1991). Wirth(1945)는 전후 유럽에서 논의되었던 소수민족적 마이너리티 개념에서 벗어나는 한편, Young(1932)이 논의하였던 인종적 측면에서의 소수자 개념 또한 확장하였다(Gleason, 1991; Berbrier, 2002). Wirth(1945)는 다음과 같이 소수자를 정의하였다: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에서 구별되고 불공평하게 취급받으며, 따라서 자신들을 집합적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²⁾

Wirth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 설명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정교화하였다(Gleason, 1991). 첫째,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향유하는 지배 집단(a dominant group)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수자 지위는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소수자들은 따로 구별되어지고, 그 결과 이들의 다른 을 강조하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발전시킨다. 넷째, 소수자 개념은 수적 규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즉 소수자는 인구 규모상 지배 집단을 능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Wirth의 정의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한정되었던 논의의 외연을 보편적인 소수자 집단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Wirth는 소수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소수자 개념의 핵심으로 두었다(Berbrier, 2002).

소수자 개념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 부당한 대우, 차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Wirth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특히 Rose 외(Rose & Rose, 1948; Gleason, 1991, p. 399 재인용)는 “종교,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해 혐오(hatred)받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소수

2) “We may define a group of people who, because of their physical or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singled out from the others in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for differential and unequal treatment, and who therefore regard themselves as objects of collective discrimination.” (Wirth, 1945, p. 347; van Amersfoort, 1978, p. 218에서 재인용)

자를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Wirth(1945)의 개념과 더불어 현재의 연구에서도 널리 인용되고 있는 개념은 Dworkin 외(1999)의 개념이다. Dworkin 외(1999)는 소수자는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차별적 대우(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집단의식을 가진 그룹(group awareness)이라고 정의하였다.³⁾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Wirth(1945)의 개념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첫째, 소수자는 신체적 요소부터 언어, 생활양식 등에서 지배 집단과 식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소수자는 지배 집단과 비교하여 권력, 자원 등에서 열세에 있고, 이러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 또한 부족하다. 셋째, 소수자는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집단으로서의 의식 혹은 자각이다. 소수자는 사회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더 나아가 집단에 대한 자긍심을 획득한다.

하지만 위의 Wirth(1945)나 Dworkin 외(1999)의 논의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점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주관적’ 인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소수자를 규정할 때 이러한 주관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소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자신이 소수자임을 주장하는 집단들(groups claiming minority status)에 의해 소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Gleason, 1991; Loseke, 1999; Berbrier, 2002).

국제법상 소수자 규정은 국내 관련 법 및 정책 수립 시 근거로 작용해 왔다(신경희, 최지원, 2015). 따라서 국제인권법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규

3) “a minority group is a group characterized by four qualities: identifiability, differential power, 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and group awareness” (p. 17). Hays-Thomas(2012)에서 재인용.

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소수집단은 한 국가 내에서 민족적(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측면에서 다수자와 다른 특징을 가진 규모가 작은 집단이다(박정원, 2009; 신경희, 최지원, 2015). 1966년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⁴⁾ 제27조⁵⁾는 소수자를 종족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로 규정하고 있다(The UN General Assembly, 1966).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의 소수자 권리선언(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또한 민족적(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⁶⁾만을 의미한다(The UN General Assembly, 1992). 유엔의 소수자 권리선언은 B규약에 비해 소수자의 정체성 유지 권리, 국가의 소수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박정원, 2009). 이러한 협의의 소수자 개념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화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신경희, 최지원, 2015). 위의 국제법상 소수자 개념은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보호 의무를 지는 최소한의 정책 대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상의 소수자 유형을 ‘한정형’(유효종, 이와마 아키코, 2012)이라고 일컫는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위의 한정된 해석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조,⁷⁾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항,⁸⁾ 경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16 December 1966. 이 규약은 한국에서 1990년 7월 10일 조약 제1007호로 발효되었다(외교부, 2017).

5)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외교통상부 공식 번역.

6)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7)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2조 2항⁹⁾ 등에 나타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민족적(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 이외에 포괄적인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학자마다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해 온 소수자 개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긴 쉽지 않지만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자 개념에 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가변적이다. 원숙연(2017)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 성소수자와 같은 새로운 소수자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박가나(2016)는 “소수자를 영구적이거나 고정된 것, 안정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이라고 밝히며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소수자 집단과 구분되는 이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새로운 소수자 집단이 등장한다고 보았다. 홍미화(2014) 또한 오늘날 소수자는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점이 크기 때문에 소수자는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수종(2005)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을 소수자로 정의하고, 모든 개인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이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소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변적이고 유연한 소수자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 비교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소수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

-
- 8)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9)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수자 개념이 유연해질수록 소수자의 범위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노출된다.

둘째, 소수자는 연구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소수자 연구에서는 인종적 소수자, 특히 흑인은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사회와 달리 단일 민족 사회라고 여겨진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적 의미의 소수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자로 여겨진다(안혁근 외, 2010; 원숙연, 2017). 한편 영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연구한 Townsend(1979)는 빈곤 측면에서 소수자를 정의하여, 한부모가족, 여성 및 부양 성인, 대가족, 실업자, 장기요양 가정, 장애가정 등 빈곤이 심하면서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는 집단을 소수자로 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각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소수자 유형은 사회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가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셋째, 소수자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지어, 소수자는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소수자 정체성(multiple-minority identities)을 중첩적으로 가질 수 있다(박가나, 2016). 즉 여성, 장애인 등 하나의 개별 영역에서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지만, 여러 영역에서 이들 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지닌 소수자도 존재한다. 여성이면서 장애인, 인종적 소수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소수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넷째, 소수자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김정진, 2011). 일례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소수자에 해당되었던 비백인 유색인종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백인이 수적 열세에 놓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 사회에서 백인은 여전히 경제

적·정치적으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수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과 흑인도 마찬가지이다(Bloom, 1971; van Amersfoort, 1978 재인용). 백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의 7.9%(Statistics South Africa, 2019)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소수자의 규모적 열세보다는 지배 집단에 대비되는 권력의 열세, 지배 집단에 종속되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수자(minority)라는 용어 대신 종속 집단(subordinate group)(Feagin & Feagin, 2003) 혹은 ‘억압받는 사람(oppressed) 대 특권층(privileged)’과 같은 용어(Berbrrier, 2002; Nibert, 1996)를 쓰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자는 지배 집단 및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이등 국민(second-class citizens)의 대우를 받는다(Townsend, 1979). 이러한 차별 대우는 사회로부터 구별되고, 배제되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별 대우에 의문을 품고 저항하면서 소수자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소수자의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박경태(2008)는 집단 소속감이 존재하면 소수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라고 구분하였다. 유효중, 이와마 아키코(2012)의 연구에서도 약자는 집단의 특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지만, 소수자는 집단의식이나 특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보았다.

아래 <표 2-1-1>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쓰인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연구자의 힘이 닿는 대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표는 관련 전체 연구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면,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 개인이 아닌 집단 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Wirth(1945)나 Dworkin(1999)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소수자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이지만, 별도의 개념 정의를 기술하지 않은 연구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표에 포함하였다.

개별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아래 표의 조작적 정의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연구들이 주로 어떠한 집단을 연구하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1-1〉 기존 연구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조직적 정의

구분	개념적 정의	조직적 정의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 선정 근거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노인	성소수자(동성애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강방글·이영선(2013)	-	-	○	○		○	○				
김상학(2004)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나이, 인종,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혹은 기타의 측면에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나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169쪽)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소수자 집단	○			○	○		○		
류승아(2017)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주장이 다수 집단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227쪽)	신체/정신		○		○		○		
박가나(2016)	자신이 가진 신체적, 문화적 조건들로 인하여 사회의 권력적 다수 집단으로부터 배제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별을 받는 집단(74쪽)	전영평(2007)이 제시한 소수자 유형 중 신체적, 권력적, 경제적, 문화적 소수자	○ (신체적)	○ (권력적)	○ (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	○ (문화적)	○ (문화적)	○ (문화적)	

구분	개념적 정의	조직적 정의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 선정 근거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노인	성소수자(동성애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박경태 (2008)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민족·인종적 소수자				○					학교, 혼혈인
박수미·정기선 (2006)	-	-	○	○		○	○				이혼자, 자발적 무자녀 부부, 편부모 가정의 자녀, 외모 관련 집단
신경희·최지원 (2015)	-	-	○	○	○	○	○	○	○	○	아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안혁근 외(2010)	-				○	○		○		○	이주 외국인 한정

구분	개념적 정의	조직적 정의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 선정 근거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노인	성소수자(동성애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원숙연 (2017)	Dworkin 외(1999)의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 소수집단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에 기초한 집단의식 또는 연대의식에 기반(228쪽)	새롭게 등장한 소수집단				이주 외국 인	○				
윤인진· 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의 부분으로서 특정한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자신이 소수자 집단 성원이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 노인,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는 소수자로 구분(103쪽)				○	○	○		○		
이정민· 이동영 (2019)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따른 집합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63쪽)	각 집단이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배제 대상으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음(64쪽)	○		○				○		

구분	개념적 정의	조직적 정의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 선정 근거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노인	성소수자(동성애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영평 (2007)	사회적 약자로서의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결국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111쪽)	신체적 소수자, 권력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	○		○	○		○			비정규직,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일본군 위안부, 남북자 가족 등
홍미화 (2014)	주변의 집단과 권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차별과 편견을 받는 사람들 내지 집단으로서, 살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보편성과 관련되며 가변성을 내포하는 개념(3쪽)	Hall & Rhomberg(1998)의 편견 영역(성, 연령, 인종, 성적 취향, 신체적·정신적 능력, 사회적·경제적 능력, 종교적·정신적 신념, 가족 구성, 이주문화 형성)에 근거(7쪽)	○ (신체적·정신적 능력)	○ (성)	○ (이주 문화 형성)	○ (이주 문화 형성)	○ (연령)	○ (성적 취향)	○ (이주 문화 형성)	○ (이주 문화 형성)	홀리스(가족 구성), 소수종교 인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정신적 신념), 난민 및 비정규직 노동자(사회적·경제적 능력)

구분	개념적 정의	조직적 정의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 선정 근거	장애인	여성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노인	성소수자(동성애자)	난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Foa (2015)						○ (이민자/인종적 소수자)	○	○			동거 커플, 과음자
Townsend (1979)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그러한 특성으로 남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관련 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족(566쪽)	영국 빈곤이라는 연구주제와 관련	○ 장애인 가족 포함			○ (아일랜드 출신 가정)					한부모, 대가족, 실업자, 고령자 장기 유병의 영향을 받는 가족, 여성저소 두가장, 남성저소 두가장, 비백인 가정, 아일랜드 출신 가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는 한 사회 내에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지배 집단에 의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집단으로 보고,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와는 구분하고자 한다.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 간 용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소수자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소수자가 되는 원인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홍미화, 2014) 소수자와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동의하여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주목하려고 한다.

첫째, 흔히 장애인이나 여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달리,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소수자 집단이다. 새롭게 등장한 소수자 집단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들 문제가 현재 또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아직 구체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하였거나(이주노동자 및 성소수자) 혹은 북한이탈주민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해 정책 대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외집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¹⁰⁾의 경우 2019년 9월 30일 현재 58만 명(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기준)을 약간 웃돌고 있다(법무부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2019). 2005년 26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체류 자격 중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2009년까지 포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준)

(윤정혜, 2014). 이처럼 고용허가제에 의해 관리되는 취업 외국인 이외에도, 재외동포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고용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시장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 자격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체류 자격 및 출입국을 관리하는 출입국 정책 이외에는 이들을 한국 사회의 정주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더 나아가 이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받고 있다(주진우, 2018). 또한 성소수자의 경우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보도된 탈북 모자 아사 사건(서혜미, 선담은, 2019. 8. 14.)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가 재환기되면서, 이들을 아직도 한국의 2등 시민으로서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둘째,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의 경우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대치되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하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성적 가치관인 이성애(heterosexuality)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한국은 단일 민족국가라는 신화 속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정도가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강하다(사회통합실태조사, 2018).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오랜 분단으로 인한 언어, 사고방식, 문화 등의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셋째,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기존의 소위 전통적 소수자들은 집단화 및 사회운동을 통해 당사자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축적된 데 비해(신경희, 최지원, 2015, 윤수중, 2005),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은 아직 집단화의 정도가 미약하다. 하지만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편견 및 차별이 심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당사자 운동, 참여 및 상호연대가 절실한 집단들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소수자로서의 목소리 내기가 당사자들에 의해 주도 되기보다, 한국인 활동가 중심의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통해 진행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안혁근 외, 2010), 성소수자 또한 당사자 집단화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최근 집단화, 세력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특히 미국의 민간 CIA라고 불리는 국립민주주의진흥재단(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인해 당사자 인권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권단체 연석회의, 2009).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새로운 소수자이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 및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편견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1. 편견이란

편견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Prejudice’는 무엇을 하기 전이라는 의미의 ‘Pre’와 판단이라는 ‘Judgment’로 나눌 수 있다(Mendoza-Denton, 2011). 이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나 집

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공정함과 거리가 멀다. 편견(偏見)의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풀이되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인출, 2019. 8. 16.). Allport(1954)는 편견을 ‘잘못되고 완고한 일반화에 기반한 반감(an antipathy based upon a faulty and inflexible generalization)’이라고 규정하였다(Phelan, Link, & Dovidio, 2008, p. 9 재인용). 이처럼 편견은 나의 관점에 비추어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 및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향한 잘못된 일반화, 부정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Brown, 2010).

편견은 크게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더 나아가 공격적인 태도 등은 명시적(explicit)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할 것이다”,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게으를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와 같은 인식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편견’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편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명시적 편견을 전통적인(old-fashioned) 형태 혹은 근본적인(fundamental) 편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llemers & Barreto, 2009).

한편 위와 같은 명시적 편견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 방식을 피해 보다 은밀한 형태의 편견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은밀한 형태의 편견은 흔히 “요즘 세상에 누가 여성을 차별해”와 같이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더 노력하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다”와 같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는 형태를 띤다(Sears, 1988;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이 밖에도, 장애인에게

“집에 편하게 있지 밖에 왜 나와서 고생이냐”와 같은 동정어린 말이나 태도,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보호적인(benevolent) 태도 또한 암묵적 편견에 속한다(Glick & Fiske, 1996). 암묵적 편견은 표면적으로는 온정적이거나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보다 상징적이고(symbolic), 새로운(modern) 형태의 편견이다(Dovidio, Kawakami, & Gaertner, 2002). 혹은 실제로 본인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암묵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Al Ramiah, Hewson, Dovidio, & Penner, 2010). 이러한 암묵적 편견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있는 ‘the real you’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최근 편견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Mendoza-Dento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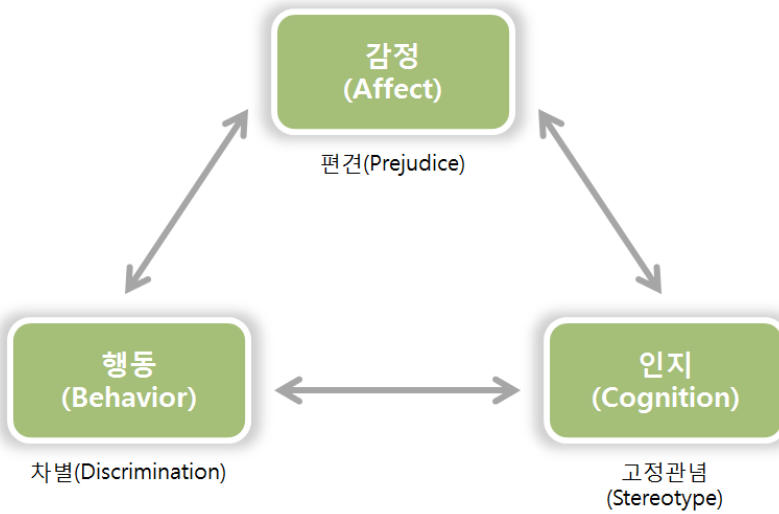
이처럼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은 드러나는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이 열등하다는 생각,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에 기반을 둔 것이다(Ellemers & Barreto, 2009).

편견을 단순히 개인의 인식적, 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다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편견적 태도나 인식은 그 집단에 대한 실제 차별(Discrimination)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별은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를 뜻한다(Dovidio & Gaertner, 1986). Correll 외(2010)는 차별은 개인과는 상관없이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편견 즉 인식 차원이 차별이라는 행위 차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Eagly와 Chaiken(1998)의 ABC모델(감정affect ↔ 행동behavior ↔ 인지cognition)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ABC모델([그림 2-2-1] 참조)에 따르면 편견은 감정(affect)

의 영역으로 이는 즉 차별이라는 행동(behavior)과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¹¹⁾

[그림 2-2-1] ABC모델



자료: Stangor(2011)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러한 편견과 차별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 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와 Dovidio, Brigham, Johnson, & Gaertner(1996)는 메타분석을 통해 명시적 편견과 차별 사이에 상관계수 0.30 이상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암묵적 편견의 경우 명시적 편견보다는 약간 낮은 상관성(상관계수 = 0.27)을 보였다. Schütz와 Six(1996) 또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편견과 차별에 관한 6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하여, 편견과 차별 행위 간(상관

11) ABC모델에는 편견, 차별 행동 이외에 인지(cognition) 영역에 잘못된 믿음(beliefs)인 고정관념(stereotype)이 있으며, 이러한 믿음 또한 편견 및 차별 행동에 영향을 준다.

계수=0.364), 편견과 차별 의도 간(상관계수=0.449)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이 존재함을 밝혀낸 바 있다. Talaska, Fiske, & Chaiken(2008)의 연구 또한 인종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57개의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편견이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차별적 행동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도 Cuddy, Fiske, & Glick(2007)의 연구는 고정관념이 차별에 미치는 영향과 편견이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편견이 고정관념보다 차별적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ovidio 외(2002)는 백인-흑인 간 관계에서 백인이 흑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명시적 편견이 흑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편견이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편견은 개인적 영역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의 성격¹²⁾이나, 정치적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¹³⁾ 혹은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¹⁴⁾과 같이 흔히 알려진 개인적 성격 요인이 편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Prejudice-in-People Model로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Murphy, Kroeper, & Ozier, 2018).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요인 못지않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편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eeusen & Kern, 2016). 사회구조적 요인은 국가의 경제 상황(Hatton, 2017), 소수자 집단의 수적 규모(Hjerm, 2007)에서부터 국가

12)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소수자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13)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소수자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 내 구성원, 집단 간 우열(superior-inferior)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회지배경향성이 강하면 편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icia,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 Lalonde, Guguer, Fountaine, & Smith, 2007).

내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관 같은 요인(Meeusen & Kern, 2016), 사회 내 불평등(Kende, Phalet, van den Noortgate, Kara, & Fisher, 201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편견을 연구할 때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셋째, 편견은 단순히 한 그룹에 대한 편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대한 편견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이를 Meeusen(2017)은 편견의 총체성(totality of prejudice)이라고 이름 짓고, 한 집단에 대한 편견이 사회 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이민자나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동성애자나 무슬림에 대한 편견 또한 가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편견은 개인적 영역의 '잘못됨'으로 치부하기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편견에 관한 이론 검토

아래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주요 요인인 접촉을 설명하는 접촉이론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주요 요인인 집단 위협감, 사회정의 관점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겠다.

가. 접촉이론

편견을 설명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Allport(1954)의 접촉 가설(intergroup contact hypothesis)이다. Allport는 1954년 그의 유명한 저서 *The Nature of Prejudice*를 통해 집단 간, 특히 인종적·민족적 집단 간 접촉에 관한 가설을 주장하였다. Allport가 주장할 당시 이는 아

직 이론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Pettigrew(1998) 등의 후속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규명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체계를 갖춘 접촉이론(contact theory)으로 발전되었다(Hewstone & Swart, 2011). 현재 접촉이론은 Allport가 처음 제안한 인종적·민족적 집단 간 관계뿐 아니라 성소수자 및 장애인 등 여러 대상에 관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Caspi, 1984; Vonofakou, Hewstone, & Voci, 2007; Yuker & Hurley, 1987).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낯선, 외집단과의 직접 접촉과 상호작용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접촉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인종 간 관계에서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Hamberger와 Hewstone(1997)의 연구에서는 유럽(서독, 프랑스, 영국)에서 새로운 이주민과의 접촉이 이들에 대한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새로운 이주민과 친구로서의 관계가 특히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Wagner, Christ, Pettigrew, Stellmacher, & Wolf(2007)의 연구 또한 독일 내 동독 거주자와의 직접접촉 증가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직접접촉의 편견 감소 효과는 다른 소수자 집단, 구체적으로 비만인(Alperin, Hornsey, Hayward, Diedrichs, & Barlow, 2014), 동성애자(Herek & Capitanio, 1996) 등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Allport(1954)는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접촉 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Hewstone & Swart, 2011에서 재인용). 먼저 집단 간 동등한 지위에 기초해야 한다. 동등한 지위는 접촉이 시작되기 이전이나(Brewer & Kramer, 1985) 접촉이 일어나는 동안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Lotan, 1995). 둘째,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 운동 팀에서의 접촉이 대표적인 예이다(Chu & Griffey, 1985). 셋째,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관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호 긍정적인 접촉에는 개인 간 노력을 넘어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허용되는 사회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ettigrew & Tropp, 2006).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과연 접촉에 필수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Pettigrew와 Tropp(2006)의 메타분석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위의 이상적인 접촉 조건이 다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접촉 경험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더 큰 효과가 발휘되지만, 단순히 접촉 경험을 쌓는 경우에도 편견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Allport의 접촉이론은 대면 접촉이 아닌 간접적 형태의 접촉 연구에도 확장되어 왔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듣는 것,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접촉 등이 그 예이다. Schiappa, Gregg, & Hewes(2005)는 긍정적 집단 간 관계를 보여 주는 TV를 시청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Cameron & Rutland(2006)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담은 이야기를 읽은 아동들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직접접촉뿐 아니라 간접접촉 또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llport의 접촉이론은 개인 간, 집단 간 접촉이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편견에 대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Kende et al., 2018).

나. 집단 위협감 이론

최근에는 불안감이나 위협감과 같이 접촉에서 느낀 주관적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편견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Voci & Hewstone, 2003). 집단 위협감 이론은 이러한 집단 간 느끼는 위협감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위협감 이론은 나와는 다른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위협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한된 자원이나 권력 등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라는 점이다. 즉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자원, 복지서비스, 혹은 정치적 권력 등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놓고 기존 집단과 새로운 집단 간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히 한 국가 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민자와 내국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Blalock(1967)의 소수자 집단 위협(minority group threat) 이론 혹은 Stephan & Stephan(2000)의 집단 위협감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론들이 대표적이다. Blalock(1967)의 이론은 경제적 위협, 정치적 위협 두 가지 형태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Hjerm, 2007 재인용). 경제적 위협은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이 이민자를 취업의 기회, 임금, 직업 안정성 등에서 경쟁자로 보고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대공황 당시 백인과 흑인 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흑인에 대한 린치 행동, 부당한 대우 등이 증가하였다(Bodapati, Anderson, & Brinson, 2008). 정치적 위협은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내국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력, 힘의 축소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을 의미한다. 이 집단 위협감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이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Welch et al., 2011).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집단 간 경쟁은 설령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Meuleman, Davidov, & Billiet, 2009).

집단 위협감 이론은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어떠한 소수자-다수자 집단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Stacey, 2018). 따라서 성소수자(Stacey, 2018),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증가로 인한 남성 중심 조직(김수한, 2015), 비정규직-정규직 간 관계(권석균 외, 2012) 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을 활용하여 집단 간 편견 및 이로 인한 주관적 위협감, 갈등을 분석한 바 있다.

다. 사회정의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social justice perspective)은 소수자 집단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이들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이다(Loewen 외, 2010). 즉 사회정의의 관점은 이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사상에 기반하여, 이들 또한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Longmore, 2003; Miller, 2001; Waddington & Diller, 2000),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eisman, 1999; Loewen 외, 2010 재인용). 사회정의의 관점은 여성 차별, 성소수자 차별, 노인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여러 소수자 관련 이슈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의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Johnson, 2006).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정의의 관점은 20세기의 널리 알려진 사상가인 Rawls까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Rawls는 사회정의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인 공정(fairness)과 공평(equality)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Blackwell, Ricks, & Dziegielewski, 2004). 첫째, 공정과 관련하여 특히 정책집행기관(institutions of practices)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⁵⁾ Rawls는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공정(just)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공평(equality)과 관련하여 Rawls는 “인간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¹⁶⁾ Rawls 이후에도 Nussbaum(1999) 또한 사회정의를 인권적 관점과 연관시켜 논의를 확장하였다. 특히 Nussbaum(1999)은 모든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존엄과 가치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가치로 인해 사람은 사회에서 공평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Nussbaum의 이론은 이후에도 보편적 인권보장과 관련한 논의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Blackwell 외, 2004). 사회정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점(benefits)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의 관점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왔다. 특히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행동 의지 등과 편견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15)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the principles of fairness has two parts, the first which states the institutions of practices in question must be just, the second which characterizes the requisite voluntary acts” (Rawls, 1971, p. 112).

16) “the features of human beings in virtue of which they are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Rawls, 1971, p. 504).

3. 본 연구에의 함의

본 장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국제인권법 및 일반 학술 영역에서 어떻게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새로운 소수자이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대한 편견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연구를 살펴보면, 소수자 개별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차별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를 이루었다(윤인진, 송영호, 2018). 하지만 소수자 차별은 소수자에 대한 주류 사회의 태도나 인식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즉 편견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편견을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적 태도인 명시적 편견, 내재되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보다 은밀한 형태를 보이는 암묵적 편견으로 나누어 편견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규명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견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배경(접촉이론, 집단위협론, 사회정의 관점)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수집단과의 접촉 경험, 이들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 사회정의감 등을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이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 3 장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정책

제1절 국내 정책

제2절 국외 정책

3

사회적 소수자 관련 << 국내·외 정책

제1절 국내 정책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개입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전영평, 2010). 한국 사회는 민주화 운동 및 경제 발전, 인권의식 향상 등으로 소수자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지난 20여 년간 크게 증가해 왔다(전영평, 2010). 한국의 소수자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공공정책에서 소수자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소수자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등 개별 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사례가 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해 크게 이슈화되면서부터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실태. 짓밟힌 인권, 남은 건 절망감뿐”(신창호, 2001. 12.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통 코리아”(박수균, 김성훈, 2006. 8. 31.)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혹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는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소수자를 소위 ‘취약계층’으로 낙인찍음과 동시에 이들을 정책상 구별 짓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사회에서 수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열세에 놓인 소수자는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로 명명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basic needs)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일에 정책적 관심이 쏠렸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다소 시혜적이고, 이들을 사회복지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 보장’이 아니라 ‘보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존재하지만, 먼저 이들이 매우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이라는 동질적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이들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구분 짓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김정선, 2011). 이러한 식의 구별 짓기 및 낙인찍기는 비단 다문화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집단화를 구성하고, 개별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소수자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연대하면서, 이러한 개별 집단에 대한 시혜적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욕구 보호가 아닌 권리 보장,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를 위해 모인 129개의 단체는(2019년 10월 기준)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공정책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 관련 정책은 장애인, 여성,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개별 법률 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책 또한 개별 소수자 보호 차원의 정책과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주요 정책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정책은 크게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감소하고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더 나아가 법적·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 침해를 금지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편견 감소 및 인식 개선

편견 감소 및 인식 개선에는 먼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편견을 감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은 첫째,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둘째, 초·중·고의 교과과정 교육을 포함한 일반 시민 대상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편견을 감소하고, 다름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소수자 세 집단 중 국내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 입국 등의 관리적 측면 이외에는 국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사회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다.¹⁷⁾ 하지만 이는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관련 종사자의 상담 관련 자질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일 뿐,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감소를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외에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물론 201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회원국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도 존재한다.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으며, 개인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기에 앞서 최소한 국가, 공공 영역에 의한 인권침해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영역(장애인식개선, 정신건강증진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¹⁸⁾ 이외에 현재 공적 영역 공무원에 대한 보편적 인권교육 의무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왔다. 먼저 2007년 11월 정부 입법부터 시작해, 2011년 3월 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14년 10월 유승민 의원

17)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9. 1. 15.>]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 부표 인권교육 참고

대표 발의, 2018년 8월 정성호 의원 등의 법안 발의가 대표적 예이다. 이들 법안은 법안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이러한 법안 발의 시도는 초창기에는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최근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종교계 및 사회단체가 이러한 법안을 ‘동성애 옹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발의자가 자진 철회하였다.

〈표 3-1-1〉 인권교육지원법안(가칭) 관련 주요 흐름

발의 시기	발의 주체	법안 내용	결과
17대 국회 (2007. 11. 2.)	정부(행자부) 입법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및 구급·보호시설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등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18대 국회 (2011. 3. 31.)	이은재 의원 등 15인 발의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지원 조직 수립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19대 국회 (2014. 10. 10.)	유승민 의원 등 45인 발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주도 종합계획 수립 등	시민단체 반대로 자진 철회
20대 국회 (2018. 8. 24.)	정성호 의원 등 20인 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구급·보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시민단체 반대로 자진 철회

주: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과제(국가인권위원회, 2012) 및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나. 일반 시민 대상 교육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초중고 대상 교과과정 교육과 성인 대상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1990년대 이후에 처음 엿볼 수 있는데, 2000년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인권 및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등장하였다(허수미, 2008).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신을 존중하듯이, 다른 사람 또한 존중해야 함을 알고, 이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박의섭, 2001; 허수미, 2008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 이 네 가지 영역의 인권교육 내용 범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문용린 외, 2003).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도덕, 사회 등의 교과과목을 통해 인권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구정화, 2018).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인권교육이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구정화, 2018). 인권교육의 범위는 사회적 편견, 공감에서부터 실제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 조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인권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2〉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주요 내용

인권교육 내용 범주	내용 영역	구분	도덕	사회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2.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3. 인권적 가치와 태도	초등	6학년: 평화적 갈등 해결 6학년: 공정한 사회	4학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존중 6학년: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중등	9학년: 폭력에 내재된 비도덕성 지적 및 대처 9학년: 양성평등, 사회적 편견 통제, 모든 인권에 대한 공감 9학년: 문화적 다양성 존중 9학년: 정의로운 사회	9학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기르기
		초등	-	-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1. 자유권적 인권 2. 사회권적 인권 3. 연대권적 인권	중등	-	9학년: 인권 보장의 중요성 이해 9학년: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해
		초등	6학년: 인권 존중 방법	6학년: 인권의 중요성 인식, 인물 탐구 6학년: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 탐구 6학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 6학년: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헌법 6학년: 헌법 내 권리와 의무의 조화
III.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1. 인권의 의의와 역사 2. 국내외 인권 관련 문서와 법 3.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와 제도	중등	-	9학년: 민주주의 정치 이해 9학년: 인권 보장의 중요성 이해 9학년: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구제 방법 조사

인권교육 내용 범주	내용 영역	구분	도덕	사회
IV.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	1. 인권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2.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초등	4학년: 다문화 사회, 다양성 수용	6학년: 편견, 차별 등 해결 방안 탐구 6학년: 인권보장 실천 태도 기르기 6학년: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 참여
		중등	9학년: 평화적 갈등 해결 9학년: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의식 함양	9학년: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9학년: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 해결 방안 탐구 9학년: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구제 방법 조사 9학년: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해

주: 위의 자료를 저자가 요약함.

자료: 구정화(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표 3(13쪽), 표4(15쪽)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이버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3〉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주요 영역	콘텐츠	대상
인권 일반	인권의 이해	교직원/학생(중고)
	세계인권선언(어린이용/일반용)	어린이용: 유치원/초등 일반용: 교직원/학생(중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교직원/학생(중고)
학교 내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 과정	교직원/학생(중고)
성차별	차별 예방	교직원/학생(중고)
	성희롱 예방	교직원/학생(중고)
	성차별 예방	교직원/학생(중고)
이주민 차별	이주민과 인권	교직원/학생(중고)
장애 차별	장애인 차별 예방	교직원/학생(중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교직원/학생(중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다.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관련 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관련 활동은 ‘교육하고 바꾸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또한 캠페인이나 활동의 특성상 관련 기구나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 ‘마주’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a). 이 캠페인의 목적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혐오차별에 대항하고 연대한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a). 손글씨 카드 쓰기, 이를 기념사진으로 남기기, SNS에 공유하기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 공익광고, 플래시몹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지자체 차원의 활동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인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북 인권문화 컨벤션, 2011년부터 시작된 광주의 세계인권도시포럼 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북 인권문화 컨벤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애기, 인권문화 확산과 도민의 인권 증진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영화제, 인권 홍보 및 체험을 위한 부스 운영, 인권 관련 OX 퀴즈, 인권 체험, 인권침해 신고전화 안내 등 지역주민이 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 ‘보호’가 아닌 이들의 ‘권리’에 주목하여, “모든 소수자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의 참여가 권리임을 밝히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민간단체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차별금지, 인권 증진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 인권영화제는 ‘차이’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가 ‘주장’되고 ‘전

달'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권 감수성의 확산을 위해 1996년부터 진행된 영화제이다.

이 외에 대학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축제 등에서 '배리어프리존(barrier-free zone)' 및 문자통역, 수화통역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축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 외모를 평가하지 말 것' 등의 축제 계명을 통해 축제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박세원, 이사야, 2019. 6. 3.).¹⁹⁾

라. 인권보도준칙

언론의 보도가 인권문화 및 인권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주목하여,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실시하였던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성평등 관련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준칙위원회 검토, 세미나 등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심미선, 2013). 이후 2014년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인권보도준칙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인권보도준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상적 보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민주주의, 인격권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인 장애인, 노인, 성적 소수자,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 대한 보도 시 보도 강령을 가지고 있다(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확산 및 인권 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전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인권보도

19) 출판 대신 '인권' 중시. 대학축제가 달라졌어요! 박세원, 이사야(2019. 6. 3.).

상' 20)을 제정하여 언론의 인권보도 확산을 증진하고자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b).

2. 법적·제도적 차별금지 방안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언급했듯이, 편견적인 인식은 인식의 차원을 벗어나 차별적인 행동이나 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 행위나 표현을 금지하는 사회적 규범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한다. 이 밖에 인권기본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권보장조례 혹은 인권헌장이 수립되고 있다.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정부의 인권에 관한 정책 전 영역에 걸쳐 정부에 권고하고,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20) 심사기준은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 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 보도에 중점을 둔.

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 n.d.-a).

전략목표 중 하나로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차별 해소,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사법제도에서의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2018년도부터 특별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대응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국내 혐오 표현 실태에 관한 연구, 온라인상 혐오 표현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 수행,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치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19c).

〈표 3-1-4〉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정책(2018~2020년)

전략목표	성과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II.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7. 장애인 등의 탈시설, 사회 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8. 이주민 난민의 인권 보호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 보호와 평등권 실현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15. 북한 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 강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비전과 정책(2018-2020).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²¹⁾가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행정부 내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에 의거하여 수립한다(법무부, 2018).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국가

21) 흔히 법무부의 역할로는 범죄와 관련된 사법, 출입국 등과 같은 법질서 집행을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제1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정책(2012~2016)을 거쳐, 현재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약 2년간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수립·공표되었다.

법무부는 국가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부터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법무부, 2018).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인권정책에 관한 거시적인 목표를 제안한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대상이나 목표는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에는 국가의 인권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반영된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인권 관련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마다 각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UPR)²²⁾를 실시하고 있다. 1·2차 정례인권검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이 권고되었지만 사회적 취약자 또는 소수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정례인권검토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외동포 분야에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이주여성과 같은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2017년 11월 행해진 3차 정례인권검토는 한국 정부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22) 1기 UPR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기 UPR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행해졌다. 3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 중이다. UPR 권고 사항의 수락 및 이행 여부는 수검국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수검국이 거부한 권고 사항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참여를 보장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 이주노동자 인권, 성소수자 권리 보호 영역, 차별금지법 제정 등 218개 영역에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법무부, 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회적 소수자가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소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41쪽), “성소수자”(293쪽),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294쪽), “이주민 문화 교류 지원-(중략)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263쪽). 이와 같은 표현에 미루어 볼 때, 인종이나 종교, 언어, 성적 지향, 여성, 국적이나 출신국과 같은 속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이주민·난민의 보호를 고려해야 함”(188쪽)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p.289)이란 표현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아래 <표 3-1-5>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보여 준다. 먼저 크게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마다 세부 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 영역마다 각 부처별 달성 과제를 설정하였다.

〈표 3-1-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영역

대영역	세부 영역
I.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안전권
II.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차별금지
III.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결사·집회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IV.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참정권
V.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노동권 •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VI.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여성 분야 • 아동·청소년 분야 • 장애인 분야 • 노인 분야 • 이주민 지원과 사회 통합
VII. 인권인식과 인권문화를 높여 가는 사회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과 인권

자료: 법무부(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조례 및 인권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조례는 개별 소수자를 보호하는 조례와 포괄적인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형태의 조례로 나뉘 볼 때, 개별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는 다수 존재한다(안진, 2011). 그에 반해 포괄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조례는 매우 미흡하다(안진, 2011).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인권조례 제정이 확산되었다. 아래 표는 광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현황으로, 기초지자체는 부표로 수록하였다.

〈표 3-1-6〉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현황

시도	조례
강원도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그 조례의 내용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바로 조례에 명시된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담은 것이다(인권도시연구소, n.d.).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37개 추진 과제, 100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서울시, 2018). 이 중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편견 해소’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이 있다. 또한 이 외에도 ‘3-5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하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 정책 수립 및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 인권기본법(가칭) 관련 논의

기본법은 주요 국정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원칙·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우기택, 2016). 또한 기본법은 관련 정책의 내용과 담당 조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수준 높은 정책 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우기택, 2016). 또한 관련 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해 향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우기택, 2016). 이 밖에도 기본법 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우기택, 2016).

한국 사회는 소수자 중 개별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들, 지자체별 인권조례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 혹은 보장과 관련한 법제가 여럿 존

재한다. 따라서 이들 간 상호 모순과 불일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데 반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행정부 내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법의 산재 및 불일치 등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인권기본법(가칭)’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초안을 마련한 이후, 추미애 의원을 대표로 인권기본법 발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법 초안 심의 등 실효성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가 주관하는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등을 통해 인권기본법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방안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향후 추진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중 -6번째 세부 과제에 해당하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부분에서도 인권기본법 제정을 향후 추진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또한 홈페이지에서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히며,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3-1-7〉 인권기본법(가칭) 관련 주요 흐름

구분	내용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법 초안 마련
2013년 9월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4년 9월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개최
2014년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 발의
2019년 7월	정갑윤 의원 주최 학술포럼: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주: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엄수아(2014. 9. 17.). 김신의(2019. 7. 3.) 등.

마. 차별금지법(가칭) 관련 논의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장애, 연령, 성별 등과 같은 개별적 차별 사유와 특정 범주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이다. 이러한 개별 사유에 근거한 차별금지법하에서는 관련 법 간 체계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준일, 2017), 차별의 중첩성과 복합성을 다룰 수 없다는 점(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 홍관표, 2013) 등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업무와 권한, 특히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제하는 법률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이준일, 2017).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재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본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이준일, 2017).

위에 기술한 개별 사유 중심의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 등에 주목하여, 통합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법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연대모임에는 2019년 10월 기준 12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개, n.d.), 유엔 등 국제사회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2007년 유엔인종차별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권고안(CERD/C/KOR/14)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 p. 18)라고 밝힌 바 있으며 2017년에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그 권고안에서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의 지연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 p. 19)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 2005년 10월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이 결과 2006년 7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된 바 있다(홍관표, 2013).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 4개의 장(1장 총칙,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별시정업무, 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4장 차별의 구제), 43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 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으로,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 20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또한 교육기관, 주거시설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 발생 시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이후 제17대 국회의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2008), 제18대 국회의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제19대 국회의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홍관표, 2013; 이보라, 조문희, 탁지영, 허진무, 2020. 1. 28.).

바. 혐오표현금지법(가칭) 관련 논의

혐오 표현(hate speech)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는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산되었다(박미숙 외, 2017). 이전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을 중요시했다면, 2013년 이후에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박미숙 외, 2017). 논의의 이면에는 이러한 혐오의 감정이 단순히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실제적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고, 실제 차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박미숙 외, 2017).

특정 개인을 향한 혐오 표현은 현행법하에서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규제가 가능하다(이승현, 2019). 하지만 혐오 표현의 문제는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소수자 집단 일반, 그 집단의 정체성을 향한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행법의 규제 대상과는 다른 것이다(박미숙 외, 2017).

위에서 논의한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등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다수 행해졌다. 2018년 2월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는 “혐오 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임시 조치 권한 등에 대해 발의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다(혐오표현규제법안, 2018; 이승현, 2019).

제2절 국외 정책

서구에서 소수자 논의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박정원, 2009).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는데, 핵심은 소수자가 해당 국적을 소지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Capotorti(1979; 박정원, 2009, p. 74 재인용)는 소수자를 일컬어 “거주국 내의 다수자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며, 취약한 지위 상태에 있고, 거주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만 다수자들과 다른 인종, 종교 또는 언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 전통, 종교 및 언어를 유지하려는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소수자에 대해 “같은 언어 또는 종교 등을 공유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27

조의 보호 대상인 소수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지는 않는다. 협약 당사국은 제27조의 권리를 해당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the Human Rights Committee, 1994)라고 풀이했다.

서구에서는 특히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자신들만의 문화, 종교, 언어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선주민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주민들의 국적 문제가 오랜 쟁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구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와 아울러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사회통합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는 소수자 정책이 잠재적인 안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인접한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인종, 언어, 혹은 종교적인 정체성이 다른 다수와 소수 집단이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소수자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안보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졌다(박정원, 2013). 더욱이 유럽에는 흔히 짐시라 일컬어지는 로마니(Romani)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 역시 소수자 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장세룡, 2016; The Council of Europe, 2016).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서구 국가 사이에서 정책적인 합의는 다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구 국가에서 관찰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도 함께 고려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소수자 보호 정책의 경향을 간단히 짚어 보고자 한다.

1.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

유럽연합 차원의 소수자 보호를 위한 핵심 문건은 ‘유럽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이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각료회의를 통해서 유럽 사회 내부의 소수자 보호라는 인권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1994년 협약을 채택했고, 1998년에 발효했다(박정원, 2013). 이 협약은 소수자 보호의 취지로 마련된, 국제적으로 다자간 법적 효력이 있는 첫 번째 협약이며,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자조약이다(박정원, 2013; The Council of Europe, 2016). 참고로,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과는 별도의 국제기구이며 유럽연합 28개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의 47개 국가가 회원국이다(강수구, 2015). 협약의 4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 동 협약의 당사국은 소수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함을 서약한다. 소수자에게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2) 동 협약의 당사국은 필요시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 모든 영역에서, 소수자가 다수자에 대해 완전하고 실효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동 협약 당사국은 소수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박정원, 2009).

협약은 법적으로 당사국들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보호에 있어 매우 큰 의의가 있다(박정원, 2013). 특히 협약의 권고위원회

(Advisory Committee)는 협약 당사국의 소수자 보호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 보호 규범의 해석 관행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박정원, 2013).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일단 협약을 비준하면 1년 안에 협약의 내용에 따른 법적 혹은 기타 제도적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The Council of Europe, 2016). 그 이후에는 각료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고위원회는 각료회의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현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권고위원회가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만나는데, 그 결과로 항상 의견서(Opinion)가 채택된다. 해당 국가는 의견서 채택 4개월 안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의견서와 소명서는 함께 공개된다. 유럽평의회 의 각료회의는 두 가지 서류에 근거해 결론 및 정책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결서(Resolution)를 채택하고, 해당 의결서에 대한 집행 절차를 밝게 된다. 여기서 권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협약의 내용이 유럽평의회 회원국 모두에게 법적 및 제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권고위원회는 모두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료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이러한데, 2017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대상으로 권고위원회가 네 번째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The Council of Europe, 2017), 해당 국가의 주류인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Others)’이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배제돼 있고, 정치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권고 내용을 보면, “소수자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 및 자신의 인종이 해당 지역의 주류 인종과 다른 주민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및 법률 조항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개정할 것”과 “인종적 혐오

및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 혹은 공인의 발언들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서로 다른 인종적 및 종교적 공동체 사이의 대화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7).

물론, 프레임워크협약의 한계도 있다. 유럽평의회 39개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벨기에,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및 터키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6). 또한 협약의 다소 느슨한 기준이 해당 국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도 남긴다. 이를테면, 협약에서는 소수자의 개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유럽평의회는 소수자에 대해 “유럽평의회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소수자의 개념을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6). 유럽평의회 스스로가 협약의 이름 앞에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법 제도를 적용하는 포괄적인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The Council of Europe,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는 프레임워크협약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넘어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집행의 내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협약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인 보호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실효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의무를 비준 국가에 부과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당사국의 입법부 구성과 관련해서 권고위원회는 소수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심지어 도발적이기까지 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테면,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당 설립 기준 완화, 국회 의석 가운데 소수자 대표 지분의 제도적 보장, 의회 내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회의 설치, 소수자 권리에 관한 법안 상정 시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당의 거부권 허용, 행정부 차원에서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 설치, 소수자가 직접 참여하는 행정부 내의 협의기구 운영 등이다 (Council of Europe, 2008; 박정원, 2013, p. 167 재인용). 권고위원회가 소수자 문제에 관해 제시하는 권고들은 소수자 보호의 경성법(hard law)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박정원, 2013).

유럽평의회와 별도로, 유럽연합 역시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장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은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에 다음과 같은 문항을 첨가했다.²³⁾ “성, 인종이나 민족, 종교나 신념, 장애, 나이 혹은 성적인 지향에 근거해서 차별과 맞서 싸우기 위해 유럽연합의 각료이사회는 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대응을 할 것.” 이에 근거해 유럽연합은 관련 두 가지 지침을 제정했는데, 그 두 가지는 2000년의 인종평등지침(Council Directive 2000/43/EC, Racial Equality Directive) 및 고용 및 직업상의 평등한 처우를 위한 일반 지침(이하 78조 지침. Council Directive 2000/78/EC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이었다.

먼저 인종평등지침은 6조에서 “유럽연합은 인류를 나누어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론도 거부한다.”라면서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인종적인 배경’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런 이론들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23) 다수의 문서에서 해당 문항이 암스테르담조약의 13조에 첨가됐다고 적시돼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5, 심재진, 2004 등). 이를테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연합의 차별 보고서(Discrimination in the EU in 2015)에서도 해당 문항이 제13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조약 원문을 보면, 해당 내용은 6a조로 제시됐다(European Union, 1997). 우리 보고서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의 번호는 붙이지 않고 내용만 제시했다.

인종평등지침의 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목적 아래, 인종적 혹은 민족적인 배경에 근거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은, 지침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 유럽공동체 안에서 금지된다.”(EUR-Lex, 2019a) 13조는 고용 및 직업 문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다른 국가의 국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인종차별지침이 인종 및 민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라면, 78조 지침은 기타 변수들, 이를테면 종교나 신념 등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의 1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목적 아래, 종교나 신념, 장애, 나이, 혹은 성적인 지향에 근거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은, 지침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 유럽공동체 안에서 금지된다.”(EUR-Lex, 2019b)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유럽평의회는 프레임워크협약이 지닌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를 위한 접근은 법적인 ‘차별금지’ 혹은 ‘권리보장’의 수준을 넘어 다수와 소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데는 일정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수자와 다수자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나은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소수자를 위한 문화 혹은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이 교육 현장에서 소수자 그룹을 배려하는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유럽연합의 교육 현장에서의 소수자 정책

유럽연합 역시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이나 차별의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사업장에서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

된다(Bhandal & Hopkins, 2007).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역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Bhandal & Hopkins, 2007). 여기서 직접적인 방식이란 인종차별적 폭력, 언어적 폭력 혹은 괴롭힘 등으로 드러난다. 간접적인 차별은 학교 현장에서 다소 무의식적으로 불평등을 반복·생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1999년에 발간된 스티븐 로런스(Stephen Lawrence)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차별을 일컬어 ‘제도적인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라 일컬었다(Macpherson, 1999). 스티븐 로런스 보고서는 1993년 영국 남동부 플럼스테드 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8세의 스티븐 로런스가 백인 청년들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당시 사건은 전형적인 인종주의 범죄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내무부 장관 잭 스트로의 지시에 따라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오래된 이주의 역사와 함께, 소수 인종 등 소수자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동시에 이와 같은 혐오범죄들도 끊이지 않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된 스티븐 로런스 보고서에서는 제도적인 인종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학생들의 인종, 문화, 민족적인 배경을 이유로 적절하고 직업적인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다. 의도하지 않은 편견이나 무지, 물지각함이나 인종적인 고정관념은 소수인종 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학교의 과정이나 태도, 행동 등에서 드러나고 관찰되는 차별에 까지 이른다.”(Macpherson, 1999, p. 49)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 및 차별금지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협약 및 정책 권고를 내놓았다. 몇 가지 예가 지난 1952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8년의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2006년의 일반 정책 권고 10번 - 학교 안과 학교 교육을 통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전쟁에 관하여(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0 - On combating racism and radical discrimination in and through school education) 등이다. 여기서 ECRI는 유럽연합의 ‘인종주의와 비관용에 맞서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를 가리킨다. ECRI가 내놓은 정책 권고 안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ECRI, 2007).

“정책 결정자, 교사 및 가족들은 평등과 비차별을 위해서 협업해야 한다.

- 정책 결정자들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 모든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의 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p. 1)

ECRI(2007)는 이와 같은 총론 아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다.

“1. 학교는 인종주의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주의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학교의 운영 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 인권교육이 보육시설부터 상위 교육기관까지 실시되도록 함. 관련 교재는 인종주의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 인터넷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도록 동기(incentive)를 제공함.
- 학교의 학생 및 직원을 위해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는 행동강령을 학교들이 반드시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함.
- 인종주의적인 행위들을 점검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구함.

2. 아이들은 그 배경을 막론하고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 제도 안에 충분히 통합되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소수자 출신 아이들에 관한 통계를 점검해야 함. 이를테면, 출석률, 퇴학률 및 성적.
- 소수자 아이들이 분리된 학급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 소수자 학생들의 분리 문제를 해결함.
- 소수자 그룹에서 교사를 충원하도록 장려함.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평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함.

3.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내용에는 인권과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 교사들은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함.

4. 학교들이 평등과 비차별을 양양하도록 정부는 적절한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평등과 비차별 상황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pp. 1-2)

ECRI의 정책 권고 내용은 길지는 않다. 그러나 결국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의 문제를 정부와 시민사회,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협업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정책 개발 및 집행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핵심적인 의제로 교육 현장의 차별 시정 문제를 끊임없이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2001년 유럽연합의 교육부 장관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교육 정책을 통일성 있게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교육과 훈련 2010(Education and Training 2010)’ 정책 가이드라인이었다.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 및 훈련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소수자 그룹에 대한 비차별 및 평등권 보장이었다(Bhandal & Hopkins, 2007).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럽연합은 교육 현장에서의 비차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해 실무자 그룹을 구성했는데, 그 이름은 ‘적극적 시민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실무그룹’이었다. 실무

그룹은 다민족 유럽 사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족 문제, 분쟁 및 통합에 관한 의제를 다뤘다(Bhandal & Hopkins, 2007). 그룹이 교육 현장에서 평등 및 비차별 문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내놓은 권고 사항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배경 혹은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 출신의 교직원 고용,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다른 언어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훈련, 교육·훈련·노동의 기회에 관한 편견 없는 교육 정보 제공, 다문화 관련 교육 교재 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교재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 그룹 출신 인사들의 참여 보장 등이다(Bhandal & Hopkins, 2007).

유럽연합은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의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표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26개 회원국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적 지표에 관한 실무자 그룹(Working Committee on Quality Indicators)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미 마련된 ‘교육과 훈련 2010’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주요 지표 범주 가운데 하나로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평등 수준 개선’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젠더 불평등, 소수민족 그룹의 통합, 장애인 통합, 지역 간 격차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소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교사 대상 교육이 있다. 유럽연합은 ‘교육과 훈련 2010’ 기조에 맞추어 ‘교사의 역량 및 자격에 관한 유럽 공통의 원칙(Common European principles for teacher competences and qualifications)’을 제시했다. 교사의 일반적인 자격 및 역량에 관한 원칙 가운데 역시 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권고안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Bhandal & Hopkins, 2007).

- 교사들은 유럽 사회 안에서의 이동과 협업을 권장하고, 다문화간 존중과 이해를 장려해야 한다.
- 교사들은 여기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화의 다원성에 대한 존중 및 인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식 및 기술을 가져야 한다.
-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낳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지식사회에서 민족적인 측면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교사들은 지역사회, 교육 기관의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들과 교사 교육기관 및 다른 대의그룹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선언이나 협약, 정책 권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유럽연합 단위에서 고용 및 교육 분야의 젠더 평등은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인종적인 불평등 문제 해소 차원의 성과는 ‘한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Bhandal & Hopkins, 2007, p. 16).

3. 유럽연합의 소수자 관련 통계 구축 정책

유럽연합에서는 소수자 관련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통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유럽연합의 2015년 통계 연구였다. 핀란드 노동부의 주도하에 당시 ‘적절한 데이터를 통한 평등 실현(Making Equality a Reality with Adequate Data) 그룹’이 구성됐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유럽 내부의 다양한 지역에서 소수자 그룹의 상황을 점검하고, 둘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한 법제도의 집행 수준을 점검하자는 것이었다(Bhandal & Hopkins, 2007, p. 16). 당시의 노력은 평등 데이터에 관한 두 권의 책 ‘평등 데이터에 관한 유럽연합의 안내서(European Handbook on Equality Data)’(European Commission, 2007; 2016)였다. 안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은 아니고, 개별 국가 단위나 유럽연합 단위에서 실시하는 설문이나 센서스, 행정 자료에서 관련 조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항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별 설문이 평등이나 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모범 사례 및 그에 관한 정책 권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안내서는 영국의 예를 모범 사례로 들면서, 영국 내무부가 사법 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표로 1992년 이래 관련 통계를 발간하는 내용을 소개했다(European Commission, 2016). 영국은 1991년 형사법 95조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 용의자, 범법자 가운데 흑인이나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 그룹의 비율을 공개한다. 이 통계는 법원,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통합된 뒤 공개되는 과정을 거친다(European Commission, 2016, p. 73). 2016년 출간된 안내서는 2007년 안내서에 담긴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 평가한 뒤, 일곱 가지의 정책 권고 사항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 101).

- 유럽연합의 소속 국가들은 현재 유럽연합 혹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평등 및 비차별 의제에 관한 현황을 분석 및 보고할 것.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복 수집으로 드는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
- 다양한 데이터들 사이의 비교 및 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

별 국가 및 유럽연합 단위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의 용어 정의 및 분류, 범주상 차이를 찾아내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 내부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 모범 사례를 참고하면서 데이터의 비교 및 병립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소수자 그룹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더욱 구체적인 노력은 2015년 및 2019년에 수행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차별을 주제로 한 포괄적인 설문에서 나타난다(European Commission, 2015, 2019a). 이를테면, 2015년 설문의 경우, 그해 5~6월 유럽 각국의 2만 77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제시된 396쪽짜리 보고서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European Commission, 2015, p. 7).

- 응답자들이 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 사회의 다양성 수준.
- 차별에 대한 인식. 거주 국가의 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다양한 소수자 그룹들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미디어에서 다양성을 드러내는 정도.
- 성적 소수자(LGBT)들에 집중함. 성적인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 차별의 경험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 고용에서 평등한 기회에 대한 의견.
- 차별에 맞서기 위한 정책 및 대응. 민감한 개인 정보의 제공 의지 및 학교에 다양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태도.

설문의 결과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 가운데 12%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에 속했다고 답했고, 5%는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4%는 민족적인 이유로, 3%는 장애로, 2%는 성적인 지향 때문에 소수자에 속한다고 답했다(European Commission, 2015). 또 설문 응답자들의 다수는 소수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동료로 함께 일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는데, 그 응답 비율은 장애인 87%, 집시 63%,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 67%, 무슬림 71% 등이었다. 응답자가 살고 있는 정부의 반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씩 뒤섞인 응답이 나왔는데, 27%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했고, 36%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하는 등 절반 이상이 우호적이었다. 다만, 26%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2%가 소수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7%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European Commission, 2015).

지금까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를 일람했다. 앞서 밝힌 대로 유럽의 소수자 정책은 유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사회·경제·역사·문화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결과다. 따라서 한국의 소수자 정책을 숙고할 때, 유럽 사회와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과 한국과의 일부 유사성 및 역사적 경험의 시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제1절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제3절 동성애자

제4절 소결

4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국내·외 << 자료 분석

기존 국내·외 2차 자료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자료뿐 아니라 국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내 자료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국외 자료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 자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갈등실태조사’, ‘공정성실태조사’로 최초 실시되었다. 2012년에는 이를 일부 통합하여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이를 모두 통합하여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명명하에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를 추출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1차 조사구를 추출하고, 계통추출법을 통해 조사구 내 표본가구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상주 가구원 8000명을 조사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각 사회 영역별로 파악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자 집단과 관련하여,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동성애자, 전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

인, 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포용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나의 이웃,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는 보가더스(Bogardus, 1925; Wark & Galliher, 2007 재인용)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회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절친한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순으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방식과 보가더스의 원칙도 계산 방식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는 국제 비교 조사로, 문화, 가족, 종교, 교육, 보건 등 사회 주요 영역, 타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1981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6차 조사(2010~2014)가 완료되었으며, 7차 조사(2017~2020)가 진행 중이다.²⁴⁾ 최신 자료인 6차 조사는 약 60개국에서 8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조사이다. 표본 추출은 완전확률표본(full probability sample)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인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사회 주요 영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사 내용은 조사 차수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를 이민자·노동자, 다른 종족 집단, 약물 중독자, 종교가 다른 사람, 주취자(heavy drinkers),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24) 1차 조사(1981~1984), 2차 조사(1990~1994), 3차 조사(1995~1998), 4차 조사(1999~2004), 5차 조사(2005~2009), 6차 조사(2010~2014)

아래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 및 세계가치관조사(1~6차)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중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제1절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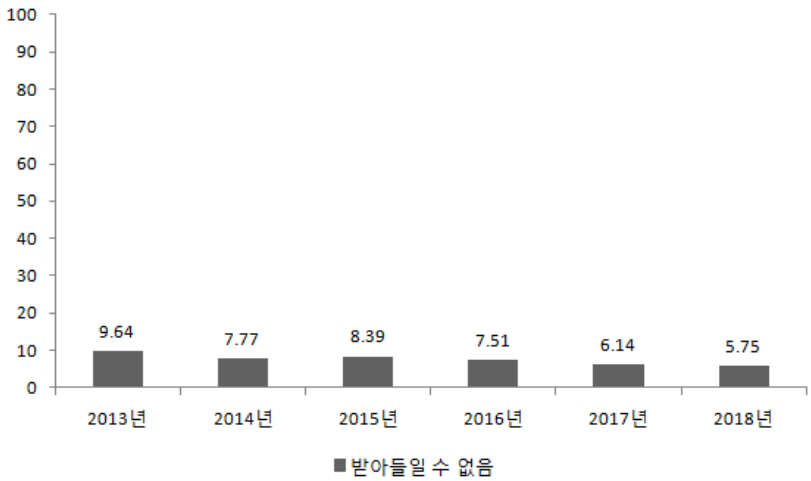
1.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이에 대한 한국인의 포용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이들을 이웃에서부터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위에 기술된 어떠한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은 2013년 9.64%에서 2018년 5.7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고, 직장 동료(29.32%), 절친한 친구(13.56%), 배우자(2.68%) 순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2015년까지 변화가 없다가, 2016년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엿보인다. 2016년부터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보다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41.58%)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28.77%)보다 크게 앞섰다. 즉 2017년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해가 갈수록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

울은 줄고, 나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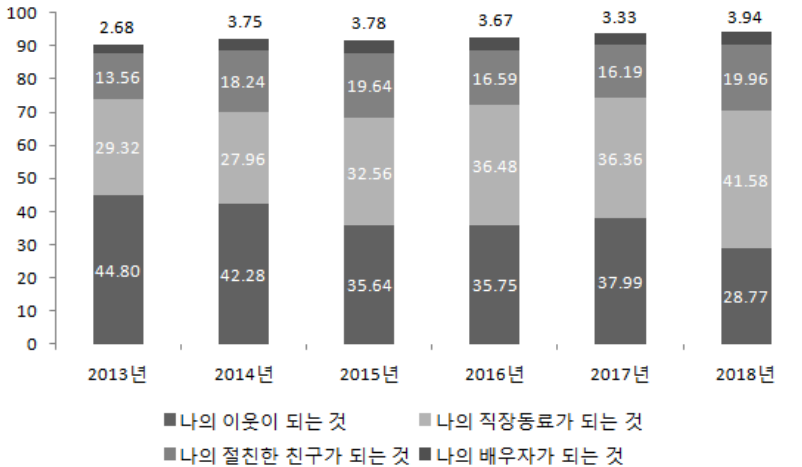
[그림 4-1-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그림 4-1-2]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보가더스(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 원척도는 사회적 거리감 각 문항이 위계적인 순서를 갖는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로, 상위 항목에 찬성하면 그 하위 항목에 자동적으로 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Parrillo & Donoghue, 2005). 원척도 계산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활용하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4점,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3점,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2점,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1점으로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적음/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4-1-1>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보가더스 척도값이다. 2018년에는 3.01로 2013년의 3.29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추세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까지 소폭 상승, 2018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 4-1-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2013	4,518	3.29	0.83
2014	6,917	3.18	0.89
2015	7,054	3.09	0.87
2016	7,399	3.13	0.84
2017	7,509	3.16	0.83
2018	7,540	3.01	0.8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2. 세계가치관조사(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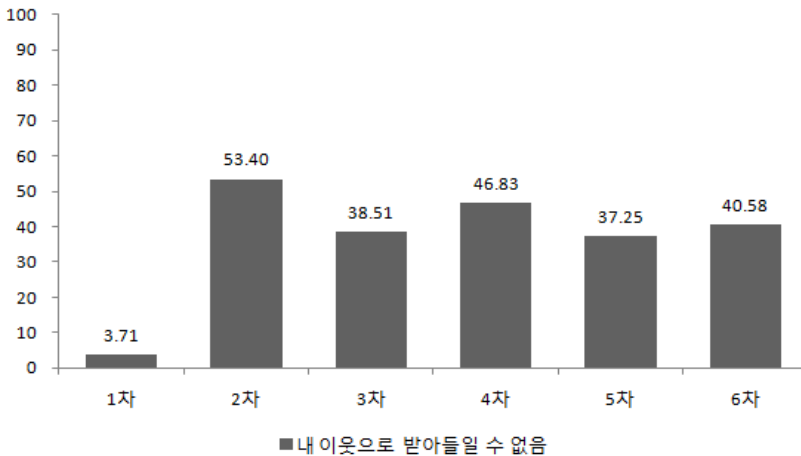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달리 세계가치관조사는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만 간단히 묻고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조사(1981~1984)에서 3.71%의 응답자만이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매우 낮은 비율로, 2차 조사(1990~1994)에서는 이 비율이 53.40%로 급증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는 40%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가 다른 해에 비해 낮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혹은 분석의 오류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뿐 아니라 1차 자료에서 조사된 모든 국가(10개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이 연구의 연구진들이 교차 검증한 결과 데이터 분석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해석은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이민 국가를 제외하고 대규모적인 국제 인구이동은 1980년대부터 급증하였으며(OECD, 2001), 이러한 인구 유입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행해진 1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차 조사(1990~1994)에서 전 차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3.40%의 응답자가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약간의 증감을 보이다 6차(2010~2014)에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0.58%의 사람들이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조사 국가 평균 및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1차와 4차를 제외한 차수들에서 약 20~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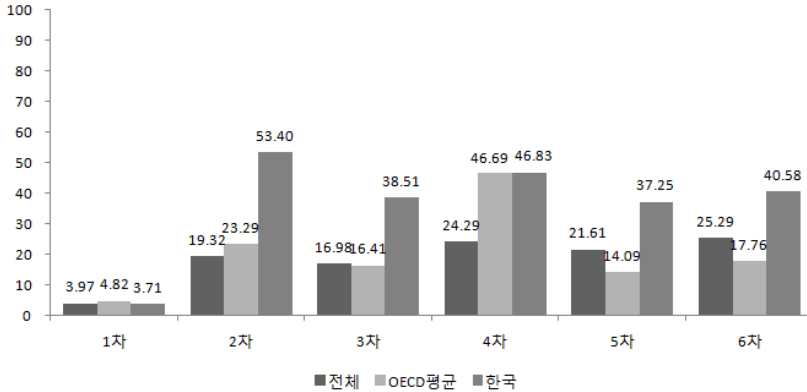
[그림 4-1-3]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한국

(단위: %)



자료: Inglehart et a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원자료(1~6차).

[그림 4-1-4]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1~6차 국가 비교
(단위: %)



자료: Inglehart et a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원자료(1~6차).

제2절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국가 비교 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조사인 사회통합실태조사만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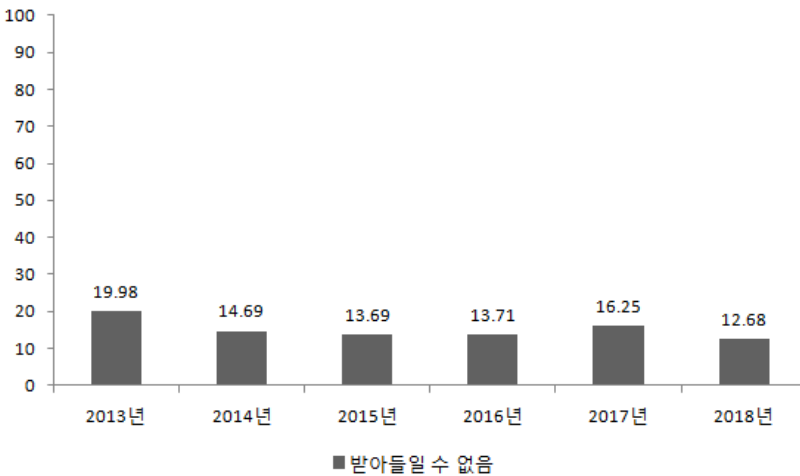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이나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2013년 19.98%에서 2016년 13.71%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에 16.25%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다시 12.68%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보다 약 2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한국인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 마

찬가지로, 2013년에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46.24%로 가장 높았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36.27%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013년 19.8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31.71%로 이웃(36.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약 7%포인트(43.67%→36.27%) 감소한 것과 달리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약 5%포인트(10.54% → 15.9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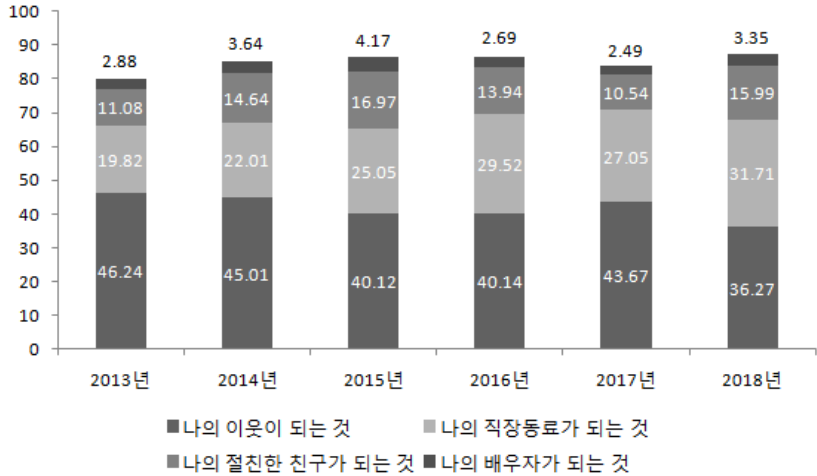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그림 4-2-2] 받아들이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이 수 있음(북한이탈주민)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2013년(3.37)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에는 3.16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4-2-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북한이탈주민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2013년	4,001	3.37	0.85
2014년	6,398	3.27	0.89
2015년	6,646	3.17	0.91
2016년	6,903	3.24	0.83
2017년	6,700	3.34	0.81
2018년	6,986	3.16	0.85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제3절 동성애자

1.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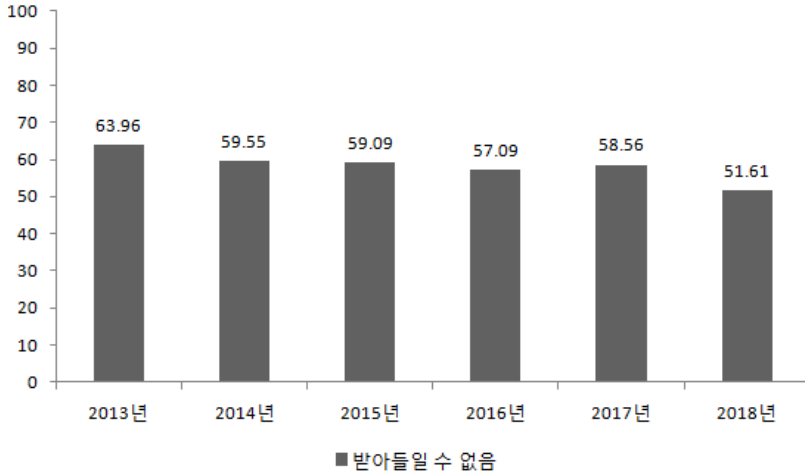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주류사회의 문화적 규범(한국 사회의 경우 이성애 성향)과는 다른 성적 정체성 및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적 소수자가 포함된다. 한국의 사회통합실태조사뿐 아니라 세계가치관조사 등 많은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대신 이 집단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성애자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포용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8년 자료를 보면 50%가 넘는 응답자(51.61%)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년의 63.96%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큰 거리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동성애자의 경우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나 ‘나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밀한 정도에 따라 이들 집단을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분하면, 절친한 친구 및 배우자는 상당히 친밀한 내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는 절친한 친구 및 배우자에 비해 친밀한 관계가 아닌 외집단에 속한다. 즉 아직 동성애자를 내집단(배우자나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적어도 외집단 관계(직장 동료나 이웃)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계의 포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동성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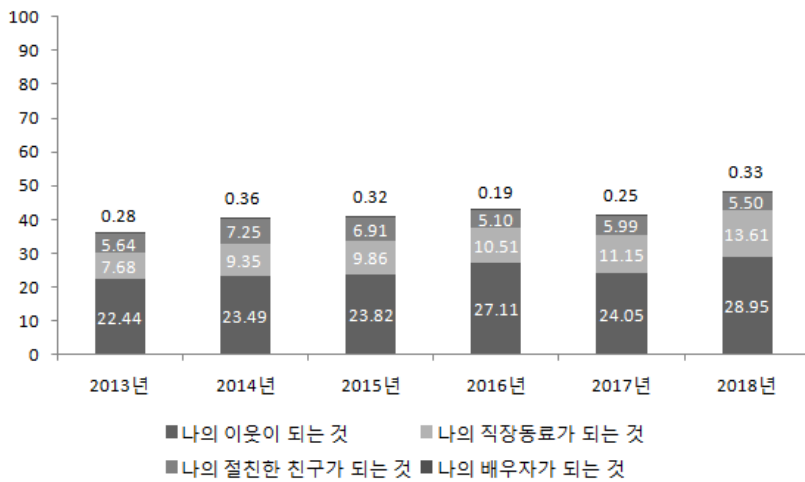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그림 4-3-2]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동성애자)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증감 추세를 보이지만 2018년 3.47로 2013년의 3.4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1〉 보가더스 척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_동성애자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2013년	1,802	3.45	0.78
2014년	3,034	3.38	0.81
2015년	3,150	3.40	0.79
2016년	3,433	3.50	0.72
2017년	3,315	3.42	0.75
2018년	3,871	3.47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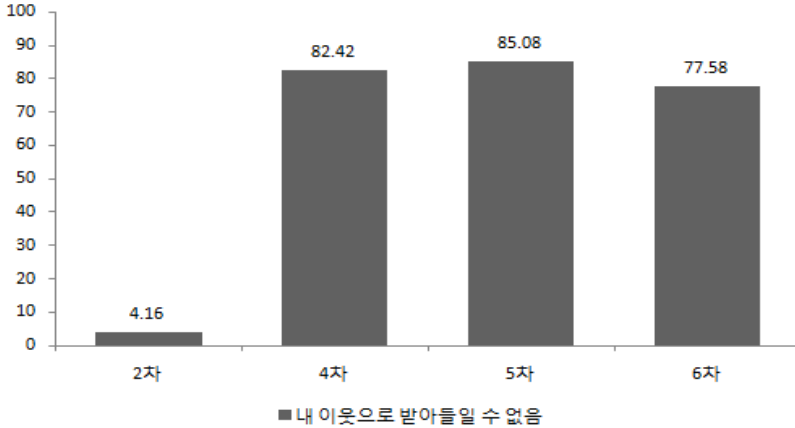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2. 세계가치관조사(1~6차)

동성애자에 관한 조사는 1차(1981~1984)와 3차(1995~1998)에서는 조사되지 않아 2차와 4차, 6차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1990~1994)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4.16%로 상당히 낮지만, 이는 데이터의 오류라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3]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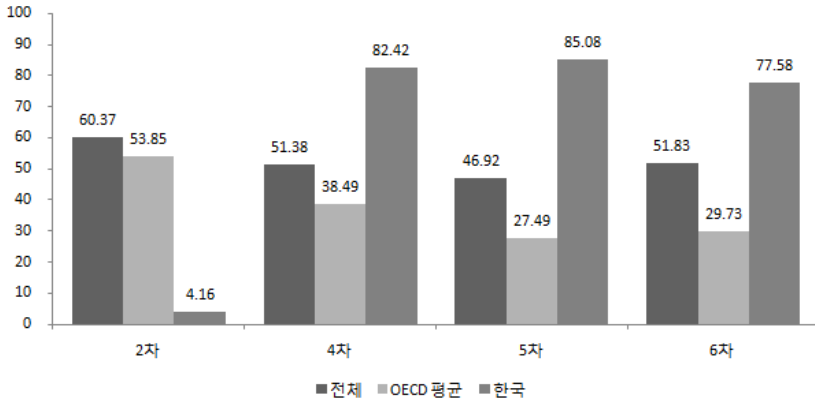


자료: Inglehart et a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원자료(2차, 4~6차).

OECD 국가들은 전체 조사 국가보다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데 비해,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뿐 아니라 전체 조사 국가에 비해서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하여 4차는 약 2배, 5차는 약 3배, 6차에서는 약 2.5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4] 동성애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_국가 비교

(단위: %)



자료: Inglehart et al.,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원자료(2차, 4~6차).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국내·외 대표적인 2차 자료인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 세계가치관조사(1~6차)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소수자 집단인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특히 국제 비교가 가능한 세계가치관 조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먼저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들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하여 세 집단 모두에 대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속적 감소 추세는 동일하지만 각 집단에 대한 수용성

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순으로서, 세 집단 중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통해 계산한 결과 또한 이와 동일함을 보여 준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적었고(3.01), 이어 북한이탈주민(3.16), 동성애자(3.47) 순이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동성애자 뿐 아니라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 전과자에 대한 포용성 또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소수자 집단과 이들 집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비해서는 본 연구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과자에 비해서는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4-4-1〉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본 연구 소수자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9.64	7.77	8.39	7.51	6.14	5.75
	북한이탈주민	19.98	14.69	13.69	13.71	16.25	12.68
	동성애자	63.96	59.55	59.09	57.09	58.56	51.61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타집단	장애인	2.32	2.04	2.87	1.50	1.84	1.31
	결손 가정의 자녀	2.10	1.79	2.31	1.29	1.39	0.82
	전과자	68.48	67.91	67.69	69.15	69.95	63.4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3~2018).

아래 〈표 4-4-2〉는 세 집단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에 대해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 같이 먼 집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절친한 친구나 배우

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집단의 특성상 한국인과 직장 동료로서 접하는 경향이 다른 경로로 만나는 것보다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4-2〉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2018년)

구분	받아들일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직장 동료 > 이웃 > 절친한 친구 >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이웃 > 직장 동료 > 절친한 친구 > 배우자
동성애자	이웃 > 직장 동료 > 절친한 친구 > 배우자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2018).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의 경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만으로 이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이주민 밀집지역의 슬럼화 혹은 범죄 증가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주민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면서 이들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효민, 김석호, 이상립, 2016). 또한 이주민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도 무시하기 어렵다(김지윤, 강충구, 2014). 이러한 지역 슬럼화와 범죄에 대한 인식은 이들을 우리 동네에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와 비교가 가능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 동성애자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뿐 아니라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포용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의 경우 위에서 이야기한 이주민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범죄 인식, 경제적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 특히 전통적 유교 사상, 위계적인 전통적 가족 질서 체계, 이들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낮은 포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Naaranoja, 2016).

제 5 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 한국인의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집단인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의 차별 경험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차별 경험은 주류 사회의 태도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서 다수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윤인진, 송영호, 2018). 이 밖에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접촉 경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인식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이들이 한국인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 정치적 성향, 직업군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과의 직간접접촉 관련 변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 국민들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지 전문은 부록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 실려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²⁵⁾는 기존 여러 조사에서 활용되었던 문항을 본 연구 상황에 맞춰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Pettigrew와 Meertens(1995)의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BSPS: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scales), Deal(2006)의 장애인에 대한 암묵적·명시적 편견 척도(Subtle and Blatant Prejudice subscales), Pérez-Testor 외(2010)의 동성애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Scale of subtle and overt prejudice towards homosexuals)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영어 척도는 연구자가 일차로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영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 번역인이 교차 번역(한국어→영어)하여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원척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의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2 <부표 1~3>에 나와 있다.

명시적 편견 척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한다’와 같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문항이며, 암묵적 편견 척도는 ‘이주노동자들은 보통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을 원하지 않는 곳에 어울리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암묵적 편견 척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온정적이거나, 우월감에 기초한 편견을 측정한다. 이러한 암묵적 편견은 현대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흔히 겉으로 보기에는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

25)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는 데 있어 내재되어 있는 생각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점에 근거한 암묵적 연합 검사(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Schwartz, 1998)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컴퓨터 환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의 경우에도 암묵적 편견 측정에 다수 쓰이고 있으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합당한’ 이유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접촉 경험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으로 나누어, 직접접촉에서는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일터에서, 우리 동네에서 만난 경험을 묻고, 간접접촉에서는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게임 및 웹툰, 가족·친구·지인의 말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을 물었다. 직간접접촉 경험 모두 접촉의 양(빈도)과 질(경험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인상)을 측정하였다.

위협 인식은 신뢰(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가족,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처음 만난 사람 등 대인 신뢰)와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정의는 Torres-Harding, Siers, & Olson(2012)의 사회정의 척도(SJS: Social Justice Scale)와 보편적 인권 존중 및 소수자 인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5-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구분	내용
조사 문항	인구사회학적 변인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 정치적 성향, 직업군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 - Pettigrew와 Meertens(1995)의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scales, BSPS) - Deal(2006)의 장애인에 대한 암묵적·명시적 편견 척도(Subtle and Blatant Prejudice subscales) - Pérez-Testor 외(2010)의 동성애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척도(Scale of subtle and overt prejudice towards homosexuals)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의 직간접접촉 관련 변인 - 직접접촉: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일터에서, 우리 동네에서 만난 경험 - 간접접촉: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게임 및 웹툰, 가족·친구·지인의 말 - 직간접접촉의 양(빈도)과 질(경험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인상)
	위협 인식 변인 신뢰(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대인 신뢰), 지역사회 안전 인식,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정의 변인 Torres-Harding et al.(2012)의 사회정의 척도(Social Justice Scale, SJS), 보편적 인권 존중 및 소수자 인권 보호 중요성

3. 조사 설계

조사 모집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국인이다. 2019년 10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지역, 성, 연령, 직업 비율에 맞춰 비례 할당하였다. 표본 추출은 한국리서치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 응답 패널인 ‘마스터 샘플’²⁶⁾을 활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모바일 조사인 CAWI/CAMI(Computer Aided Web/Mobile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다. 전체 표본은 1000명이다.

〈표 5-1-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9년 10월 기준)
표본 크기	1000명
표본 배분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비례 할당
조사 방법	CAWI/CAMI(Computer Aided Web/Mobile Interview): 컴퓨터를 이용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기간	2019년 10월 21일~10월 27일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26) 마스터 샘플은 지역·성별·연령·학력·혼인 상태·소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구성된 패널이다. 2019년 9월 기준 약 40만 명의 자체 조사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1-3〉 참조).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9.50%, 여성이 50.50%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 17.10%, 만 30~39세 16.30%, 만 40~49세 19.60%, 만 50~59세 20.10%, 만 60세 이상 26.90%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는 수도권이 50.20%, 비수도권이 49.8%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 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59.90%)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고등학교 졸업이 30.80%를 차지했다. 혼인 상태는 기혼(사실혼/동거 포함)이 66.5%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26.50%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실업자 및 주부, 학생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38.60%, 블루칼라(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35.20%, 화이트칼라(관리자·전문가·사무 종사자)가 26.20%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500만 원이 41.40%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 이상은 가장 적은 3.30%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9.70%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19.90%)가 그 뒤를 이었다. 정치적 이념 성향은 중도(41.30%)가 가장 많았고, 진보적(다소 진보, 매우 진보)이라는 응답이 35.50%로 보수적(다소 보수, 매우 보수)이라는 응답(23.20%)보다 많았다.

〈표 5-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단위: 빈도, %)

구분	빈도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5	49.50
여성	505	50.50
연령		
만 19~29세	171	17.10
만 30~39세	163	16.30
만 40~49세	196	19.60
만 50~59세	201	20.10
만 60세 이상	269	26.90
지역		
수도권	502	50.20
비수도권	498	49.8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8	1.80
고등학교 졸업	308	30.80
전문대/대학교 졸업	599	59.90
대학원 졸업 이상	75	7.50
혼인 상태		
미혼	265	26.50
기혼	665	66.50
사별	21	2.10
이혼	45	4.50
별거	4	0.40
직업		
관리자/전문가/사무직	262	26.20
실업자/비경활인구	386	38.60
그 외	352	35.2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3	3.30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62	26.20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14	41.4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79	17.90
700만 원 이상	112	11.20
종교		
가톨릭	119	11.90
개신교	199	19.90
불교	139	13.90
기타	46	4.60
종교 없음	497	49.70
정치 성향		
보수적	232	23.20
중도	413	41.30
진보적	355	35.5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제2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인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인식을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로 정의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문항별 응답 분포는 부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각 집단별로 평균값(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편견을 의미함)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 5-2-1>을 참조하여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에 대한 편견 정도를 살펴보면, 암묵적 편견이 3.17(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강함)로 명시적 편견(3.04)보다 높았다($t=-8.55$, $p<.001$). 각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해서도 암묵적 편견이 명시적 편견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명시적 편견(3.23)이 암묵적 편견(3.14)보다 높았다($t=3.70$, $p<.001$).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간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집단 간 비교해 보면, 명시적 편견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3.23)이 가장 높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 편견(2.90)이 가장 낮았다. 암묵적 편견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3.29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3.10으로 가장 낮았다. 즉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원배치분석(One-way Anova)과 Bonferroni 사후검증(Post-hoc test)을 통해 집단 간 편견을 비교한 결

과 집단 간 차이는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점)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집단 간 비교
명시적 편견	3.04(.52)	2.99(.66)	2.90(.52)	3.23(.89)	c>a>b
암묵적 편견	3.17(.32)	3.29(.48)	3.09(.46)	3.14(.50)	a>c>b
t statistic	-8.55***	-16.49***	-7.65***	3.70***	

주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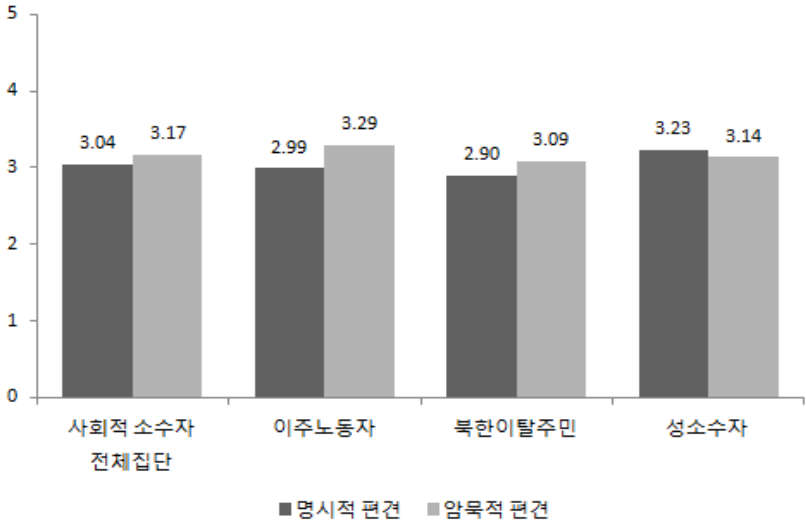
주2: 평균(표준편차)

주3: * p<.05, ** p<.01, ***p<.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편견 인식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비수도권), 학력, 직업 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편견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5-2-2〉 참조). 주요 변인 위주로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편견 인식 차이를 보면, 이주노동자와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명시적 편견은 여성이 높지만, 암묵적 편견은 남성이 높았다. 성소수자는 두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응답자 연령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 19~29세가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보였다.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만 30~39세가 가장 높은 수준의 명시적 편견을, 만 40~49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암묵적 편견을 보였다. 성소수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세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명시적 편견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암묵적 편견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관찰되었다. 즉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암묵적 편견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세 집단 모두에서 명시적·암묵적 편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낮은 집단이 명시적·암묵적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종교에 따라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는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가장 낮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개신교이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적,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세 집단 모두에서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낮았다.

〈표 5-2-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점)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전체	3.04(.52)	3.17(.32)	2.99(.66)	3.29(.48)	2.90(.52)	3.10(.46)	3.23(.89)	3.14(.50)
성별								
남성	3.03(.51)	3.20(.32)	2.96(.71)	3.30(.50)	2.80(.49)	3.12(.44)	3.34(.84)	3.17(.50)
여성	3.05(.53)	3.15(.31)	3.01(.61)	3.27(.46)	3.00(.54)	3.06(.48)	3.13(.92)	3.10(.49)
t statistic	-.46	2.61*	-1.31	.89	-6.19***	2.05*	3.78***	2.22*
연령								
만 19~29세	2.79(.55)	3.05(.36)	2.85(.70)	3.13(.54)	2.88(.55)	3.09(.49)	2.65(.93)	2.93(.52)
만 30~39세	3.06(.53)	3.16(.28)	3.13(.58)	3.33(.49)	2.97(.57)	3.01(.42)	3.06(.85)	3.13(.43)
만 40~49세	3.08(.52)	3.22(.32)	3.03(.69)	3.35(.48)	2.91(.53)	3.11(.45)	3.30(.84)	3.21(.55)
만 50~59세	3.06(.48)	3.19(.30)	2.97(.67)	3.30(.42)	2.85(.48)	3.12(.44)	3.35(.81)	3.14(.49)
만 60세 이상	3.14(.46)	3.21(.31)	2.95(.64)	3.30(.45)	2.89(.50)	3.12(.49)	3.57(.75)	3.23(.45)
F statistic	13.05***	9.41***	4.26***	6.23***	1.29	1.75	35.44***	11.36***
지역								
수도권	3.04(.53)	3.15(.31)	2.97(.66)	3.28(.47)	2.91(.53)	3.06(.47)	3.23(.91)	3.11(.48)
비수도권	3.04(.51)	3.20(.32)	3.00(.67)	3.30(.48)	2.89(.51)	3.13(.45)	3.24(.86)	3.17(.51)
t statistic	.12	2.39*	.56	.75	-.49	2.31*	.09	1.70

주: * p<.05, ** p<.01, *** p<.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23(.37)	3.05(.34)	3.18(.56)	2.87(.40)	3.09(.40)	3.63(.74)	3.02(.59)
	고등학교 졸업	3.03(.53)	3.17(.34)	3.03(.70)	2.87(.53)	3.11(.46)	3.19(.89)	3.10(.51)
	대학교 졸업	3.05(.52)	3.18(.31)	2.98(.64)	2.91(.53)	3.09(.47)	3.25(.88)	3.16(.50)
	대학원 졸업 이상	2.95(.49)	3.19(.29)	2.80(.62)	2.86(.48)	3.10(.47)	3.19(.94)	3.14(.41)
	F statistic	1.62	1.02	2.84*	.60	.11	1.64	1.60
혼인 상태	미혼	2.85(.55)	3.10(.34)	2.90(.68)	2.85(.55)	3.10(.47)	2.79(.94)	2.99(.50)
	기혼	3.11(.49)	3.20(.30)	3.01(.64)	2.92(.51)	3.09(.45)	3.39(.81)	3.19(.49)
	사별	3.17(.43)	3.26(.42)	3.10(.88)	2.90(.58)	3.21(.65)	3.51(.65)	3.17(.59)
	이혼	3.09(.52)	3.18(.33)	3.04(.72)	2.88(.52)	3.04(.56)	3.35(.93)	3.14(.50)
	별거	3.14(.09)	3.32(.18)	3.12(.25)	2.85(.27)	3.30(.35)	3.45(.57)	3.47(.41)
	F statistic	12.91***	5.74***	1.60	.84	.70	24.54***	8.24***
직업	관리자/전문가/사무직	3.03(.55)	3.19(.31)	2.95(.63)	2.91(.54)	3.10(.44)	3.24(.92)	3.17(.50)
	실업자/비경활인구	3.03(.53)	3.14(.32)	2.99(.66)	2.94(.54)	3.08(.46)	3.17(.94)	3.09(.48)
	그 외	3.05(.48)	3.20(.32)	3.01(.68)	2.84(.49)	3.09(.48)	3.29(.79)	3.17(.52)
	F statistic	.08	3.85*	.59	3.04*	.12	1.75	3.02*

주: * p<.05, ** p<.01, *** p<.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가계소득								
100만 원 미만	2.76(.54)	3.03(.43)	2.73(.64)	3.03(.67)	2.68(.62)	3.07(.57)	2.86(1.04)	3.00(.56)
100만 원 이상	3.03(.53)	3.13(.31)	3.01(.69)	3.28(.48)	2.89(.57)	3.05(.47)	3.20(.90)	3.05(.54)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3.08(.48)	3.21(.31)	3.03(.64)	3.31(.44)	2.92(.47)	3.13(.45)	3.30(.84)	3.19(.49)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3.04(.57)	3.18(.33)	2.96(.66)	3.32(.49)	2.90(.54)	3.06(.50)	3.25(.94)	3.16(.48)
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2.97(.54)	3.17(.26)	2.86(.67)	3.24(.49)	2.89(.52)	3.10(.39)	3.16(.87)	3.18(.40)
F statistic	3.80***	4.72***	2.97**	3.27*	1.71	1.52	2.30	4.16***
종교								
가톨릭	2.97(.49)	3.17(.30)	2.86(.63)	3.29(.41)	2.84(.55)	3.10(.50)	3.22(.78)	3.12(.51)
개신교	3.17(.50)	3.22(.29)	2.99(.63)	3.29(.47)	2.88(.55)	3.13(.46)	3.64(.91)	3.24(.47)
불교	3.07(.51)	3.18(.32)	3.05(.67)	3.26(.48)	2.92(.50)	3.15(.46)	3.23(.77)	3.12(.48)
기타	3.06(.50)	3.18(.27)	3.00(.70)	3.37(.45)	2.93(.58)	2.99(.54)	3.27(.71)	3.18(.52)
종교 없음	2.99(.53)	3.15(.33)	2.99(.67)	3.28(.50)	2.91(.51)	3.07(.45)	3.07(.90)	3.11(.51)
F statistic	4.80***	1.64	1.38	.46	.59	1.79	15.57***	2.77*
정치 성향								
보수적	3.29(.57)	3.29(.37)	3.07(.69)	3.36(.50)	2.95(.55)	3.11(.47)	3.58(.81)	3.23(.53)
중도	3.07(.48)	3.15(.32)	3.05(.63)	3.27(.46)	2.97(.49)	3.08(.47)	3.18(.82)	3.11(.46)
진보적	2.90(.53)	3.16(.29)	2.86(.67)	3.26(.48)	2.78(.51)	3.10(.45)	3.07(.95)	3.12(.51)
F statistic	25.65***	5.36***	10.85***	3.49*	14.44***	0.26	25.97***	5.23***

주: * p<.05, ** p<.01, *** p<.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3. 접촉 경험에 따른 편견 인식

접촉 경험에 따른 편견 인식은 크게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접촉과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접촉의 양(quantity)뿐 아니라 접촉의 질(quality) 또한 조사하여, 어떠한 접촉 환경이 편견에 영향을 주는지 다차원적으로 검증하였다.

가. 직접접촉

직접접촉은 다양한 관계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과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친구, 일터, 우리 동네와 같이 거리감이 있는 관계까지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표 5-2-3〉 참조).

〈표 5-2-3〉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족으로서	5.30	94.70	1.00	99.00	0.60	99.40
친구로서	8.30	91.70	2.90	97.10	7.60	92.40
일터에서	32.20	67.80	10.20	89.80	4.40	95.60
우리 동네에서	56.40	43.60	14.60	85.40	6.40	93.6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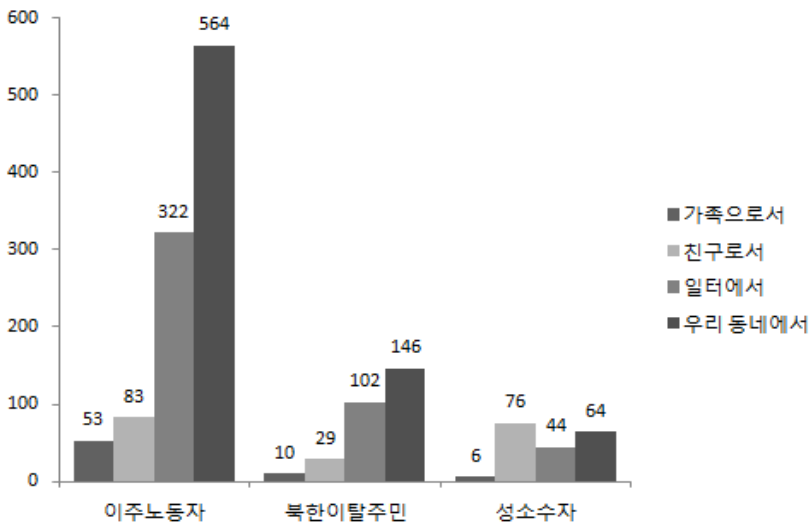
먼저 접촉 여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촉 경험 이 가장 많고, 이어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순이었다.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으로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적고, ‘우리 동네에서’ 만났다는 경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우리 동네에서’ 만났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40%

(N=564)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우리 동네에서’ 만났다는 비율이 14.60%(N=146)로 여타의 다른 경로로 만났다는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접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낮다. 친구로서 만났다는 경험이 가장 높은데, 이 또한 7.60%(N=76)에 불과하다. 이는 성소수자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외모 등 겉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친구 등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2]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경험 여부

(단위: 명)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직접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한해 사회적 소수자를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접촉 빈도를 살펴보았다(〈표 5-2-4〉 참조).

〈표 5-2-4〉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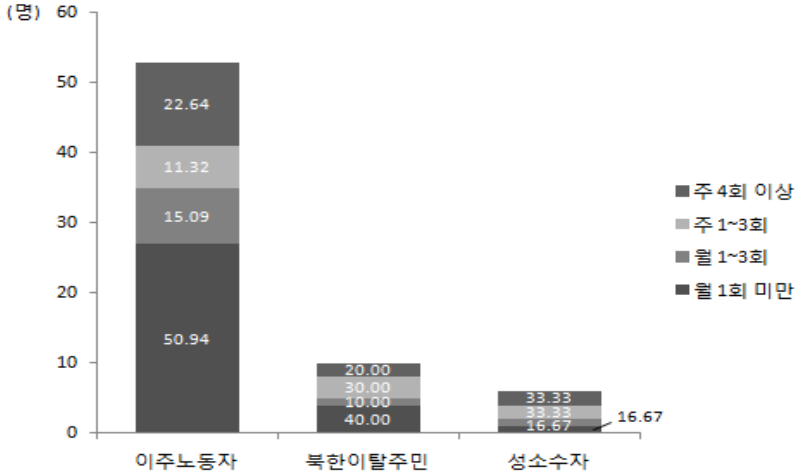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가족으로서	주 4회 이상	23.19	22.64	20.00	33.33
	주 1~3회	15.94	11.32	30.00	33.33
	월 1~3회	14.49	15.09	10.00	16.67
	월 1회 미만	46.38	50.94	40.00	16.67
친구로서	주 4회 이상	12.77	14.46	17.24	9.21
	주 1~3회	10.64	12.05	13.79	7.89
	월 1~3회	28.72	27.71	31.03	28.95
	월 1회 미만	47.87	45.78	37.93	53.95
일터에서	주 4회 이상	25.64	29.19	21.57	9.09
	주 1~3회	17.95	19.25	17.65	9.09
	월 1~3회	26.28	25.78	24.51	34.09
	월 1회 미만	30.13	25.78	36.27	47.73
우리 동네에서	주 4회 이상	10.47	11.88	6.85	6.25
	주 1~3회	21.83	25.53	10.27	15.63
	월 1~3회	32.43	33.51	28.77	31.25
	월 1회 미만	35.27	29.08	54.11	46.88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가족으로서’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세 집단 중 이주노동자를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N=53),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으로 만났다고 응답한 경우(N=10)와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만났다고 응답한 경우(N=6)는 매우 적었다.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 월 1회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 주 1회 이상 본다는 응답(33.33%)과 주 4회 이상 본다는 응답(33.33%)이 높았다.

[그림 5-2-3]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가족으로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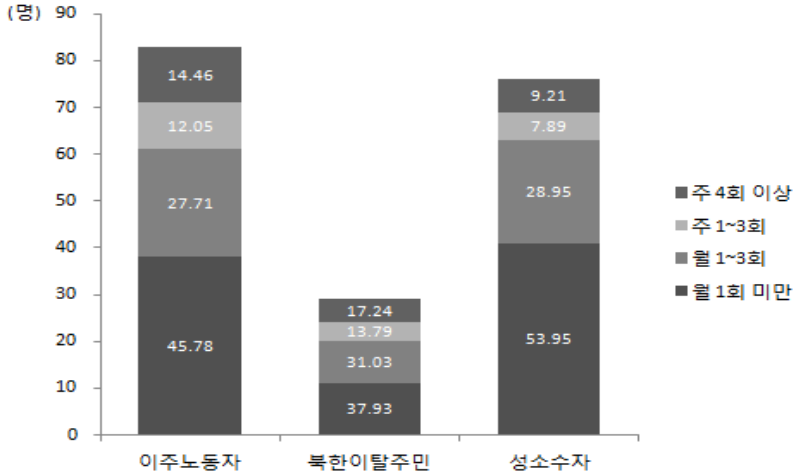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친구로서’ 만난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가장 적었다(N=29). 친구로서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를 만난 경우, 세 집단 모두에서 월 1회 미만 만났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터에서’ 만난 경험은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N=322). 이어 북한이탈주민(N=102), 성소수자(N=44) 순이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주 4회 이상 만났다는 응답이 29.19%로 가장 많았고,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의 경우 월 1회 미만 만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5-2-4]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친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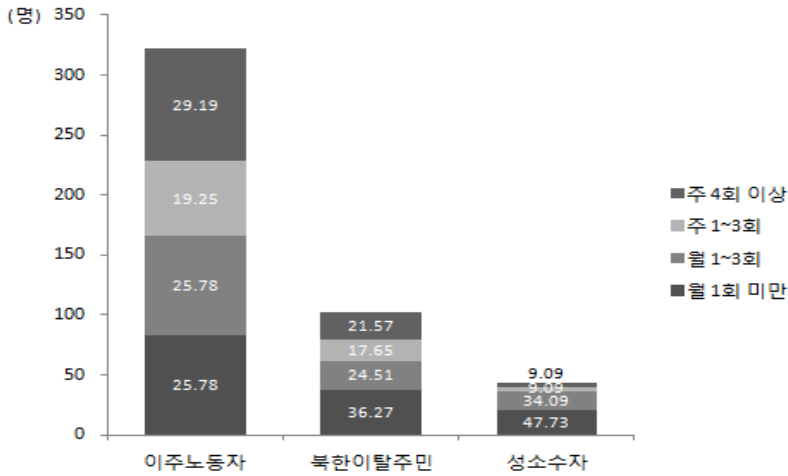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5]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일터에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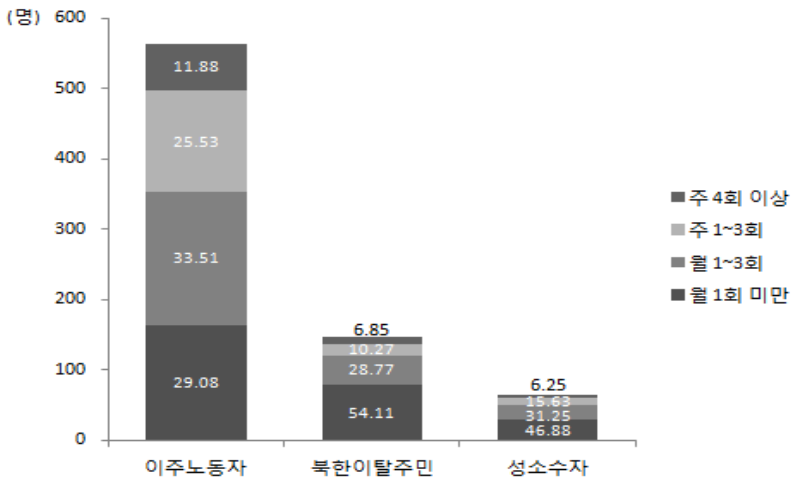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동네에서’ 이들을 만난 경우에는, 세 집단 중 이주노동자를 만난 경향이 가장 많았고(N=564), 북한이탈주민(N=146), 성소수자(N=64) 순으로 낮아진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월 1~3회 만났다는 응답이 33.51%로 가장 많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만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주노동자의 경우 개인적 관계가 아닌 동네에서 만날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피부색, 외모 등으로 식별하기 쉽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2-6]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빈도(우리 동네에서)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위에서 접촉 경험 여부와 빈도, 즉 접촉의 양(quantity)을 보았다면, 아래 <표 5-2-5>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접촉 시 느꼈던 인상, 즉 접촉의 질(quality)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촉 인상은 ‘부정적’, ‘보통’, ‘긍정적’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이주노동자 집단과 접촉했을 경우, 가족이나

친구, 일터에서 만난 관계일 경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지만, ‘우리 동네에서’ 만난 경우에는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친구로서’ 만난 경우에만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만난 경우에만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관계에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표 5-2-5〉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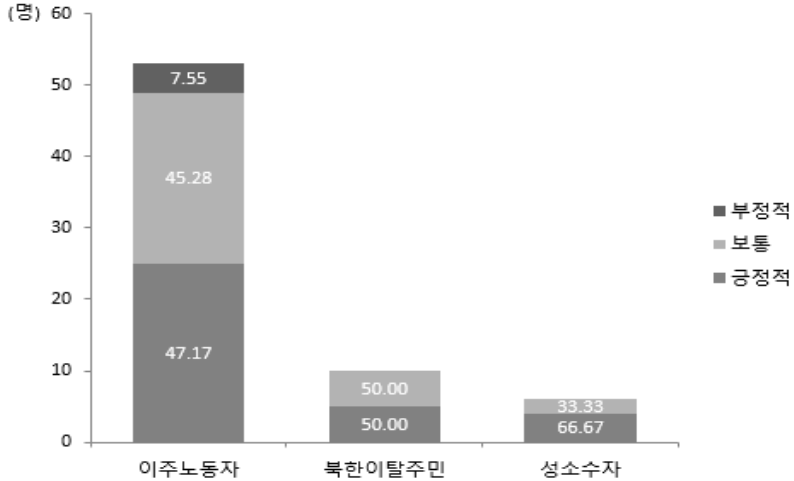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가족으로서	부정적	5.80	7.55	-	-
	보통	44.93	45.28	50.00	33.33
	긍정적	49.28	47.17	50.00	66.67
친구로서	부정적	4.26	-	6.90	7.89
	보통	42.02	46.99	41.38	36.84
	긍정적	53.72	53.01	51.72	55.26
일터에서	부정적	10.47	7.45	12.75	27.27
	보통	43.59	43.79	45.10	38.64
	긍정적	45.94	48.76	42.16	34.09
우리 동네에서	부정적	14.08	12.94	10.96	31.25
	보통	56.72	58.87	54.79	42.19
	긍정적	29.20	28.19	34.25	26.56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7]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가족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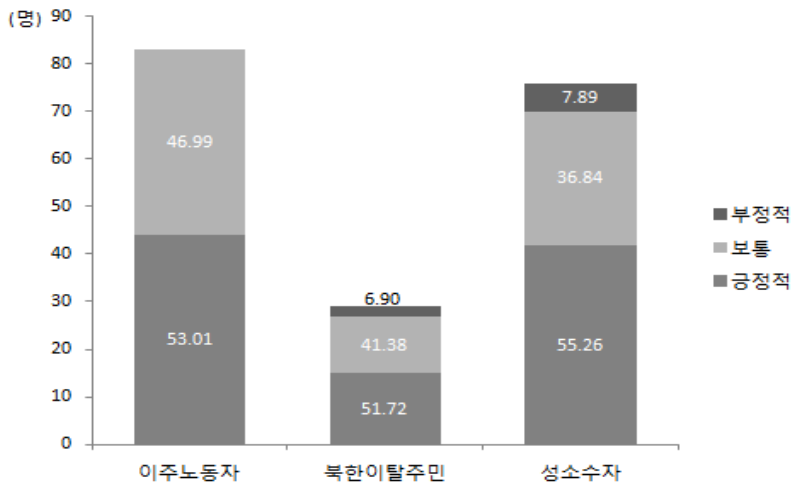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8]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친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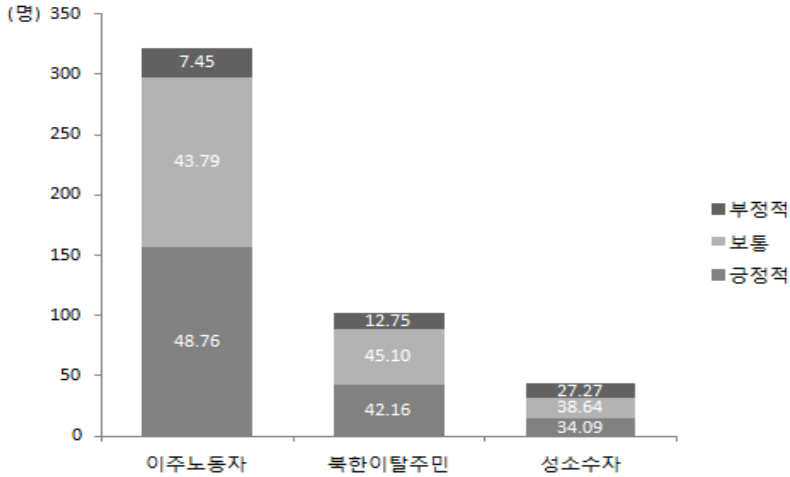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9]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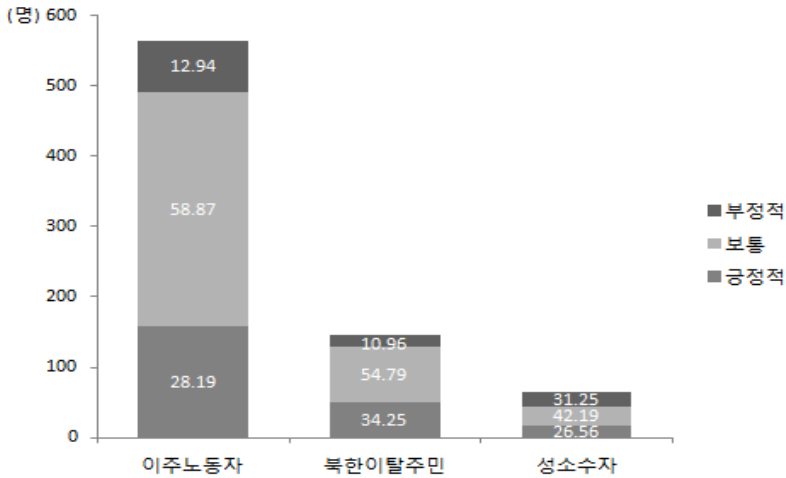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0] 사회적 소수자와의 직접접촉 인상(우리 동네에서)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나. 직접접촉에 따른 편견 인식

위에서 살펴본 직접접촉 여부, 빈도, 인상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표 5-2-6〉, 〈표 5-2-7〉, 〈표 5-2-8〉 참조).

이주노동자의 경우 접촉 경험 여부에 따라 편견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주노동자를 ‘일터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3.34)이 만난 경험이 없는 경우(3.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t=-2.61$, $p<.01$).

〈표 5-2-6〉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가족으로서	3.00(.63)	2.98(.02)	-.17	3.22(.45)	3.29(.02)	1.06
친구로서	2.97(.08)	2.99(.02)	.19	3.28(.06)	3.29(.02)	.10
일터에서	3.02(.04)	2.97(.03)	-.98	3.34(.03)	3.26(.02)	-2.61**
우리 동네에서	3.00(.03)	2.97(.03)	-.57	3.30(.02)	3.27(.02)	-.79

주1) * $p<.05$, ** $p<.01$, *** $p<.001$.

주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접촉 경험 여부에 따른 편견 차이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친구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 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2.57$, $p<.05$).

〈표 5-2-7〉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북한이탈주민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가족으로서	3.12(.47)	2.89(.02)	-1.34	3.2(.82)	3.09(.01)	-.73
친구로서	2.76(.11)	2.90(.02)	1.39	3.31(.12)	3.09(.01)	-2.57*
일터에서	2.86(.05)	2.90(.02)	.83	3.15(.05)	3.09(.02)	-1.38
우리 동네에서	2.91(.04)	2.89(.02)	-.45	3.13(.04)	3.09(.02)	-.97

주1) * p<.05, ** p<.01, ***p<.001.
주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성소수자의 경우 직접접촉에 따른 명시적 편견의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 집단이다(〈표 5-2-8〉 참조).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우리 동네에서’ 만난 경험이 있을 경우 만난 경험이 없을 때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명시적 편견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 경험은 암묵적 편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표 5-2-8〉 직접접촉 여부에 따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가족으로서	2.27(.48)	3.24(.03)	2.69***	3.29(.36)	3.14(.02)	-.79
친구로서	2.42(.11)	3.30(.03)	8.58***	3.09(.12)	3.14(.02)	.58
일터에서	3.16(.13)	3.24(.03)	.57	3.20(.05)	3.13(.02)	-1.29
우리 동네에서	2.89(.13)	3.26(.03)	3.21**	3.17(.04)	3.13(.02)	-.82

주1) * p<.05, ** p<.01, ***p<.001.
주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아래 <표 5-2-9>는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편견을 보여 준다. 직접접촉 빈도는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조사하였다. 대체로 직접접촉 빈도가 편견에 주는 영향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 세 집단 중 이주노동자 집단과의 직접접촉 빈도만 편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은 그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첫째, 이주노동자를 일터에서 만난 경우, 만난 빈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F=5.85$, $p<.001$). 즉 이주노동자를 일터에서 자주 볼 경우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높았고, 접촉 빈도가 낮은 경우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Bonferroni 사후 검정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4회 이상 만난 경우(3.21)와 주 1~3회 만난 경우(2.84)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1$). 또한 주 4회 이상 만난 경우(3.21)와 월 1회 미만으로 적게 만난 경우(2.87)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1$).

이주노동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경우 동네에서 만난 빈도가 영향을 끼쳤다($F=3.17$, $p<.05$). 역설적으로, 만난 횟수가 주 4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이들 집단에 대한 암묵적 편견(3.44)이 가장 높았고, 월 1회 미만으로 가장 적은 경우 암묵적 편견(3.24)이 가장 낮았다.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빈도에 따른 차이는 집단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5$).

〈표 5-2-9〉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가족으로서	주 4회 이상	3.15(.91)	3.33(.44)	2.54(.41)	3.60(0)	2.60(2.26)	4.06(1.33)
	주 1~3회	3.06(.50)	3.00(.44)	3.36(.21)	2.93(.58)	2.30(.99)	3.00(0)
	월 1~3회	2.81(.30)	3.03(.35)	2.92(0)	3.00(0)	2.20(0)	2.38(0)
	월 1회 미만	2.98(.59)	3.27(.48)	3.27(.52)	3.25(1.26)	1.60(0)	3.25(0)
	F statistic	.49	1.36	1.85	.22	.07	.83
친구로서	주 4회 이상	3.10(.95)	3.22(.60)	2.37(.59)	3.28(.23)	1.54(1.18)	2.77(1.07)
	주 1~3회	3.27(.75)	3.44(.64)	2.65(.49)	3.60(.49)	2.50(1.39)	2.94(.39)
	월 1~3회	2.93(.75)	3.25(.63)	2.93(.51)	3.42(.39)	2.32(1.05)	2.96(.53)
	월 1회 미만	2.88(.54)	3.28(.47)	2.86(.63)	3.13(.90)	2.62(.79)	3.04(.45)
	F statistic	.98	.34	1.19	.67	2.62	.53
일터에서	주 4회 이상	3.21(.72)	3.40(.60)	2.86(.55)	3.36(.49)	3.55(1.17)	3.41(1.08)
	주 1~3회	2.84(.58)	3.25(.42)	2.69(.44)	3.14(.44)	2.55(1.05)	3.09(.72)
	월 1~3회	3.07(.64)	3.35(.44)	2.86(.62)	3.00(.44)	3.04(.87)	3.31(.40)
	월 1회 미만	2.87(.62)	3.34(.46)	2.93(.41)	3.14(.57)	3.29(.74)	3.01(.36)
	F statistic	5.85***	1.17	.88	2.10	1.22	1.42
우리 동네에서	주 4회 이상	3.11(.72)	3.44(.54)	3.00(.65)	3.18(.51)	2.45(1.59)	3.25(1.21)
	주 1~3회	2.94(.73)	3.27(.49)	2.78(.53)	3.09(.54)	2.60(.97)	2.80(.68)
	월 1~3회	3.04(.64)	3.32(.47)	2.98(.51)	3.03(.42)	3.00(1.06)	3.27(.61)
	월 1회 미만	2.95(.59)	3.24(.45)	2.89(.52)	3.18(.49)	2.97(.94)	3.10(.41)
	F statistic	1.63	3.17*	.68	.98	.65	1.50

주1) * p<.05, ** p<.01, *** p<.001.

주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다음으로 직접접촉에서 받은 인상을 ‘부정적’, ‘보통’, ‘긍정적’으로 나누고, 이러한 접촉 인상과 편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표 5-2-10〉참조).

먼저 명시적 편견을 살펴보면, 접촉이론에서 가정한 대로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세 집단 모두에서 접촉 인상이 ‘부정적’일 경우 명시적 편견이 가장 높고 ‘긍정적’일 경우 명시적 편견이 가장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암묵적 편견 또한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인상이 긍정적인 경우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다. 성소수자와의 접촉 인상은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일터에서의 접촉 인상이 ‘긍정적’인 경우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더 높았다.

〈표 5-2-10〉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가족으로서	부정적	3.25(.40)	3.35(.85)	-	-	-
	보통	3.04(.56)	3.13(.39)	3.27(.43)	2.30(.99)	3.13(.18)
	긍정적	2.92(.72)	3.29(.44)	2.97(.52)	2.25(1.39)	3.38(1.13)
	F statistic	.56	.97	1.00	.00	.09
친구로서	부정적	-	-	3.21(.65)	2.40(.57)	3.08(.29)
	보통	3.11(.68)	3.28(.60)	2.99(.46)	3.30(.43)	3.13(.47)
	긍정적	2.85(.69)	3.29(.51)	2.53(.59)	3.44(.70)	2.87(.60)
	F statistic	3.04	.01	3.14	2.71	2.18
일터에서	부정적	3.73(.73)	3.76(.69)	3.25(.46)	3.02(.69)	3.83(.69)
	보통	3.12(.54)	3.36(.49)	2.98(.36)	3.03(.41)	3.14(.68)
	긍정적	2.81(.66)	3.26(.43)	2.60(.53)	3.33(.51)	2.64(.82)
	F statistic	26.81***	11.51***	13.59***	4.60*	8.86***
우리 동네에서	부정적	3.47(.80)	3.53(.64)	3.35(.64)	3.05(.57)	3.69(.81)
	보통	3.04(.56)	3.30(.43)	3.00(.41)	3.08(.41)	2.81(.66)
	긍정적	2.68(.64)	3.18(.46)	2.64(.52)	3.23(.54)	2.08(1.04)
	F statistic	42.51***	13.60***	16.16***	1.86	17.86***

주1) * p<.05, ** p<.01, *** p<.001.

주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다. 간접접촉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게임 및 웹툰, 가족이나 친구 및 지인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접촉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모든 집단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접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게임 및 웹툰을 통해 경험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표 5-2-11〉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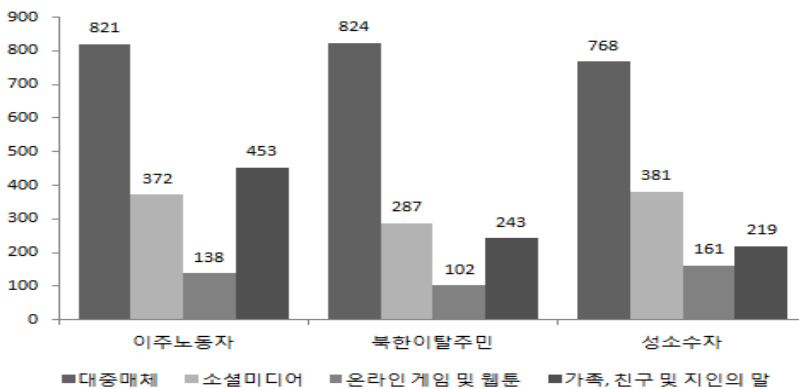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중매체	82.10	17.90	82.40	17.60	76.80	23.20
소셜미디어	37.20	62.80	28.70	71.30	38.10	61.90
온라인 게임 및 웹툰	13.80	86.20	10.20	89.80	16.10	83.90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	45.30	54.70	24.30	75.70	21.90	78.1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1〕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경험 여부

(단위: 명)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간접접촉 내용의 경우, 내용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았다(보통)는 응답이 대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소셜미디어나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이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5-2-12〉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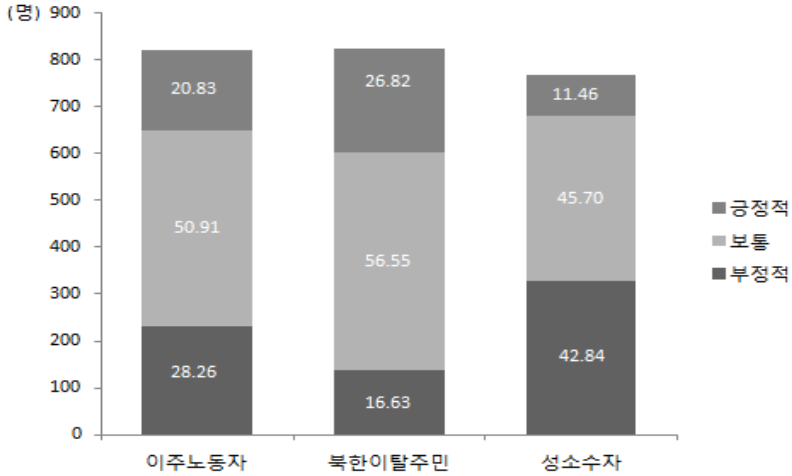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대중매체	부정적	28.26	16.63	42.84
	보통	50.91	56.55	45.70
	긍정적	20.83	26.82	11.46
소셜미디어	부정적	39.78	24.39	45.41
	보통	42.47	55.75	37.27
	긍정적	17.74	19.86	17.32
온라인 게임 및 웹툰	부정적	34.78	24.51	32.30
	보통	47.83	58.82	40.99
	긍정적	17.39	16.67	26.71
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부정적	27.37	19.30	47.49
	보통	41.28	47.34	37.44
	긍정적	31.35	33.33	15.07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2]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대중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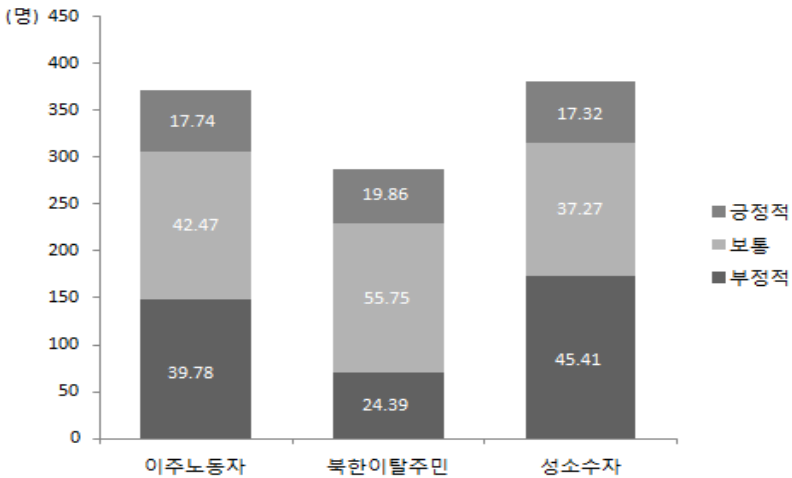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3]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소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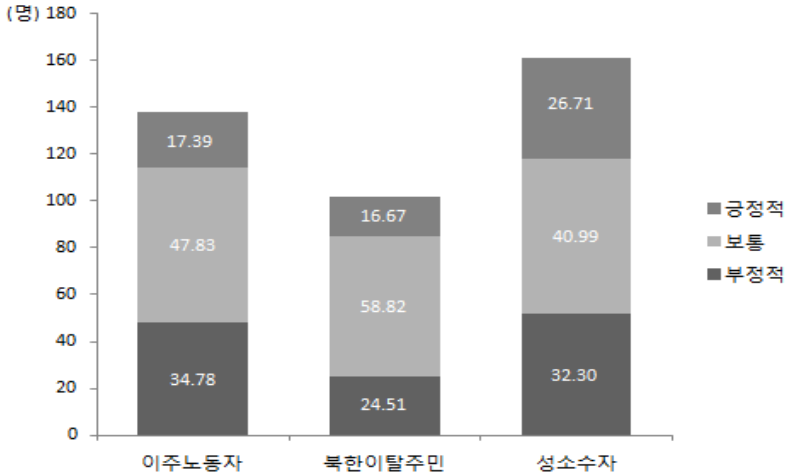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4]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온라인 게임 및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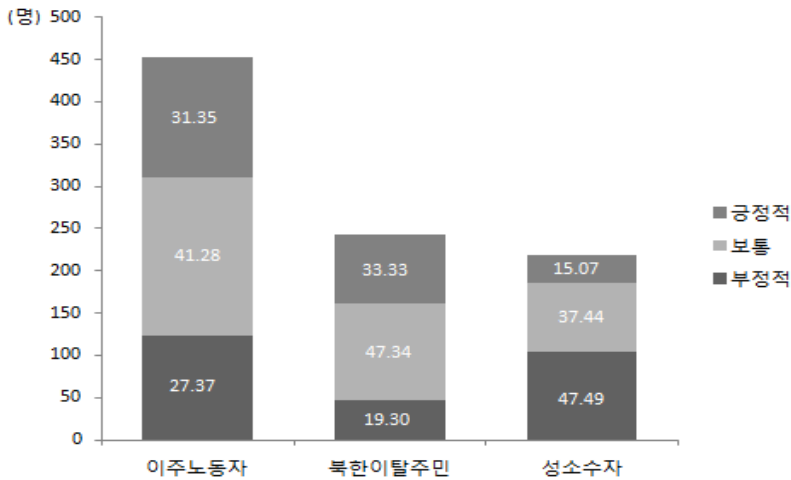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2-15] 사회적 소수자와의 간접접촉 내용(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단위: 명, %)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라. 간접접촉에 따른 편견 인식

간접접촉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2-13〉 참조).

이주노동자의 경우 온라인 게임 및 웹툰을 통한 접촉 여부에 따른 명시적 편견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온라인 게임 및 웹툰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접한 경우,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높았다($t=-2.37$, $p<.05$). 위의 〈표 5-2-12〉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라인 게임 및 웹툰의 내용이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이 ‘긍정적’이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는데, 이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5-2-13〉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대중매체	2.98(.02)	3.02(.05)	.68	3.30(.02)	3.23(.04)	-1.72
소셜미디어	2.99(.04)	2.98(.02)	-.10	3.30(.03)	3.28(.02)	-.41
온라인 게임 및 웹툰	3.11(.06)	2.97(.02)	-2.37*	3.31(.04)	3.28(.02)	-.50
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3.01(.03)	2.97(.03)	-.89	3.31(.04)	3.28(.02)	-.50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간접접촉과 명시적 편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암묵적 편견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다. 대중매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더 높았다.

〈표 5-2-14〉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북한이탈주민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대중매체	2.89(.02)	2.95(.04)	1.38	3.12(.02)	2.98(.04)	-3.60***
소셜미디어	2.88(.03)	2.90(.02)	.55	3.15(.03)	3.07(.02)	-2.38*
온라인 게임 및 웹툰	2.87(.06)	2.90(.02)	.55	3.14(.05)	3.09(.02)	-1.11
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2.90(.02)	2.89(.03)	.16	3.13(.03)	3.08(.02)	-1.2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성소수자는 간접접촉 여부가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집단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이나 웹툰, 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을 통해 성소수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았다.

〈표 5-2-15〉 간접접촉 여부에 따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있다	없다	t statistic	있다	없다	t statistic
대중매체	3.23(.03)	3.26(.06)	.48	3.17(.02)	3.02(.04)	-4.08***
소셜미디어	3.07(.05)	3.34(.03)	4.68***	3.14(.03)	3.14(.02)	.09
온라인 게임 및 웹툰	2.89(.08)	3.30(.03)	5.45***	3.07(.05)	3.15(.02)	1.95
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2.98(.07)	3.30(.03)	4.88***	3.10(.04)	3.15(.02)	1.1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아래 <표 5-2-16>은 간접접촉의 내용과 이에 따른 편견을 보여준다. 간접접촉의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인상은 이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먼저 접촉이론의 가정대로 내용이 '긍정적' 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부정적',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모든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현저히 낮았다.

암묵적 편견을 살펴보아도,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서 간접접촉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간접접촉의 내용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묵적 편견 수준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5-2-16〉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대중매체	부정적	3.15(.73)	3.39(.53)	3.16(.64)	2.96(.46)	3.53(.92)
	보통	2.96(.58)	3.27(.44)	2.92(.44)	3.09(.41)	3.08(.71)
	긍정적	2.79(.62)	3.25(.42)	2.64(.53)	3.27(.50)	2.68(1.08)
	F statistic	15.29***	6.70***	47.83***	23.10***	43.64***
소셜미디어	부정적	3.16(.78)	3.39(.54)	3.16(.63)	3.03(.049)	3.50(.96)
	보통	2.98(.63)	3.25(.45)	2.90(.44)	3.11(.48)	2.80(.78)
	긍정적	2.64(.69)	3.18(.52)	2.50(.62)	3.41(.52)	2.51(1.10)
	F statistic	12.53***	5.22**	24.42***	10.85***	36.34***
온라인 게임 및 웹툰	부정적	3.34(.83)	3.52(.59)	3.00(.79)	3.05(.49)	3.34(1.07)
	보통	3.02(.57)	3.19(.43)	2.90(.52)	3.09(.48)	2.86(.78)
	긍정적	2.88(.83)	3.20(.50)	2.56(.58)	3.47(.66)	2.39(.92)
	F statistic	4.27*	6.42**	2.86	4.22*	12.62***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	부정적	3.34(.68)	3.55(.53)	3.14(.55)	3.03(.48)	3.40(1.05)
	보통	2.98(.53)	3.31(.42)	2.94(.44)	3.11(.45)	2.73(.77)
	긍정적	2.75(.65)	3.24(.42)	2.67(.48)	3.20(.49)	2.28(.91)
	F statistic	30.49***	17.34***	15.59***	1.95	22.75***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4. 위협 인식

가. 신뢰(Trust)

이 연구에서는 신뢰(trust)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와 대인 신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인 신뢰에는 가족(친척 포함),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 이웃,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거리 관계에 있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이에 따른 편견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0점(전혀 믿을 수 없다)에서부터 10점(매우 믿을 수 있다)까지 측정하였고, 높은 점수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아래 <표 5-2-17>을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 편견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 편견 태도가 낮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에 반해, 암묵적 편견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 또한 높았다($r=.13, p<.001$).

〈표 5-2-1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단위: 상관계수)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2***	-.05	-.20***	.13***	-.04	.03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다음으로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친척 포함)과 같은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 이웃,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부터 먼 집단까지 이들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친척 포함)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 이웃을 ‘내집단(in-group)’으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외집단(out-group)’으로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낮은 그룹(낮은 신뢰). 둘째,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그룹(결속적 신뢰). 셋째,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그룹(교량적 신뢰). 넷째,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높은 그룹(높은 신뢰). 교량적 신뢰는 13.70%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은 그룹이 52.10%로 가장 높았다(〈표 5-2-18〉 참조).

〈표 5-2-18〉 대인 신뢰

(단위: %)

구분	%
낮은 신뢰	17.50
결속적(bonding) 신뢰	16.70
교량적(bridging) 신뢰	13.70
높은 신뢰	52.10
합계	100.00

주) 낮은 신뢰: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은 그룹

 결속적 신뢰: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룹

 교량적 신뢰: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나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룹

높은 신뢰: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은 그룹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대인 신뢰도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살펴해보았다. 모든 집단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가장 높고,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이에 반해 암묵적 편견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가장 높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가장 낮았다(〈표 5-2-19〉 참조).

각각의 소수집단 내에서 신뢰 수준에 따른 편견을 비교해 보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의 경우, 이러한 신뢰도 효과가 없었다.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높은 신뢰’를 가진 집단에서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가장 낮았다. 암묵적 편견의 경우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들(교량적, 높은 신뢰)이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들(결속적, 낮은 신뢰)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5-2-19〉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낮은 신뢰	3.06(.77)	3.35(.57)	3.03(.56)	3.00(.48)	3.15(1.03)	3.11(.51)
결속적(bonding) 신뢰	3.08(.66)	3.34(.48)	3.04(.59)	3.00(.48)	3.22(.95)	3.07(.49)
교량적(bridging) 신뢰	3.05(.61)	3.23(.45)	2.90(.39)	3.05(.44)	3.19(.84)	3.10(.55)
높은 신뢰	2.91(.63)	3.27(.45)	2.80(.50)	3.16(.45)	3.28(.83)	3.18(.48)
F statistic	4.69**	2.75*	13.95***	9.19***	1.00	2.61

주: 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강함.

2) * $p < .05$, ** $p < .01$, *** $p < .001$.

3) 낮은 신뢰: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은 그룹

결속적 신뢰: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룹

교량적 신뢰: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나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룹

높은 신뢰: 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모두 높은 그룹

4)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나. 지역사회 안전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인식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변수는 관련 연구에서 내국인이 느끼는 ‘주관적 위협감’의 주요 변수로, 이러한 위협감이 클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비우호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럿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동네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비해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높았다. 하지만 ‘동네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20〉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동네가 안전하다	2.93(.02)	3.28(.02)	2.87(.02)	3.12(.02)	3.25(.03)	3.16(.02)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	3.15(.04)	3.32(.03)	2.99(.03)	3.02(.03)	3.20(.06)	3.09(.03)
t statistic	-4.67***	-1.08	-3.36***	2.91**	.85	2.0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명시적 편견이 낮았고, 한국의 경제 상황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모두에 대해 명시적 편견이 높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의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이 가장 낮았다.

암묵적 편견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는 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암묵적 편견을 보였다.

〈표 5-2-21〉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단위: 점)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경제에 불만족	3.02(.63)	3.29(.48)	2.95(.53)	3.08(.46)	3.29(.91)	3.14(.50)
보통	2.99(.66)	3.29(.47)	2.89(.46)	3.07(.43)	3.14(.82)	3.14(.47)
경제에 만족	2.83(.76)	3.26(.48)	2.71(.56)	3.19(.52)	3.16(.88)	3.14(.53)
F statistic	5.35**	.33	13.43***	3.82*	3.17*	.00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5. 사회정의 관점

보편적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각각 물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5.97(7점 척도)로 높은 편이었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또한 평균 5.17로 높은 편이었다.

〈표 5-2-22〉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단위: 점)

구분	평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5.97(1.32)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5.17(1.47)

주: 1)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

2)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이러한 인권 존중 의식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표 5-2-23〉 참조). 보편적 인권 존중 의식, 소수자 집단 인권 존중 의식 모두 명시적 편견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보편적

인권 존중 의식, 소수자 집단 인권 존중 의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표 5-2-23〉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단위: 상관계수)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23***	-.09**	-.18	.12***	-.33	-.07*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16***	-.01	-.12***	.13***	-.12***	.03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Torres-Harding의 사회정의 척도는 첫째,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 둘째, 사회정의와 관련한 행동 통제감, 셋째, 주위 사람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주관적 평가, 넷째, 사회정의와 관련한 행동의지로 나뉜다. 다음의 〈표 5-2-24〉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행동 통제감, 주위 사람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고 행동의지가 강할수록 명시적 편견이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암묵적 편견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행동 통제감, 주위 사람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정의와 관련한 행동의지가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았다.

〈표 5-2-24〉 사회정의 척도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상관계수)

(단위: 상관계수)

구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명시적 편견	암묵적 편견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15***	.08***	-.20***	.16***	-.12***	.15***
행동 통제감	-.08**	.07*	-.17***	.20***	.05	.18***
주위 사람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주관적 평가	-.08**	.07*	-.17***	.18***	.02	.14***
사회정의 관련 행동의지	-.13***	.04	-.22***	.15***	-.03	.14***

주: 1)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지가 강함.

2) * p<.05, ** p<.01, ***p<.001.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제3절 소결

1. 명시적·암묵적 편견 수준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명시적 편견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명시적 편견이 암묵적 편견보다 높았다. 또한 세 집단을 비교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편견 및 배제 인식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표면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질수록, 그 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즉 한국 사회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조건적 편견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한국 사회는 세 집단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이 가장 낮았다. 윤인진 등(2014)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등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다 가깝다고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4장에서 분석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보다 더 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한 그룹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간접접촉 경험

직간접접촉 경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직간접접촉의 효과가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직접 혹은 간접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낮다는 점이다. 성소수자의 경우 외모 등 겉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혐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invisible) 소수자 집단이다(Math & Seshadri, 2013).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접촉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단 이들을 만났을 경우 혹은 매체 등을 통해 접했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명시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직간접접촉에 따른 명시적 편견 감소 효과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소수자 집단의 경우, 성소수자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접촉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단순한 접촉 자체로

다는 접촉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접촉 빈도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일터에서 맺은 관계일 때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터에서 자주 만난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주노동자와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고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 상하 관계 혹은 직·간접적 이해가 얽혀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한국노동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과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들을 가까운 친구로서 1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인 근로자와의 갈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비수평적이고, 이해관계에서의 접촉이 잦은 경험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편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접촉 여부나 빈도(quantity)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접촉 인상(quality)이다. 접촉이론의 주장처럼, 직·간접접촉 모두 접촉 인상 혹은 접촉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 이들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 눈에 띄게 적었다. 특히 암묵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직접접촉의 인상, 간접접촉의 내용²⁷⁾이 유일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특히 간접접촉 매체(미디어 등)에 그려지는 소수자의 이미지, 이들에 대한 보도 방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동안 소수자를 다루는 미디어의 방식이 '차별과 편견, 혐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매체에서 비춰지는 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27) 간접접촉 내용 문항은 그 매체(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및 웹툰, 지인의 말)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다.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미디어가 지닌 소수자 보도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접촉 인상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직접접촉 경험이나 간접접촉 내용이 ‘긍정적’일 경우, 이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오히려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점(좌동훈, 2017)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이주노동자나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이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온정주의적 편견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식 조사는 당시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 미디어 보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Dowler, 2003; Reeves & de Vries, 2016). 본 연구에서의 조사가 실시된 10월은 8월에 발생한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의 여파가 아직 크게 미칠 때였다. “탈북 모자 아사 … 무관심과 차별 탓”(안소영, 2019. 8. 16.)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인들의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암묵적 편견 척도는 ‘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와 같은 ‘온정적’ 편견 형태의 암묵적 편견 문항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온정적 편견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위협 인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또한 지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경우에

도 이들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배경(집단 간 위협이론, 갈등이론) 및 실증적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촉'을 넘어서서 사회적 환경이나 구조가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나 대인 신뢰도가 높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았다. 지역사회 안전, 한국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았다. 이는 이론적 배경과 반대되는 결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본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온정적 편견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사회정의감

본 연구에서 사회정의는 객관적 지표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첫째, 자신의 사회정의 수준에 대한 인식, 둘째, 자신의 사회정의와 관련한 행동 통제감, 셋째, 주위 사람들의 사회정의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넷째, 사회정의를 위해 행동할 의향이 있는지로 나뉜다. 따라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론에서 근거한 대로 사회정의감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경우,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암묵적 편견에는 작동하지 않았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정책 제언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남은 과제

제3절 나가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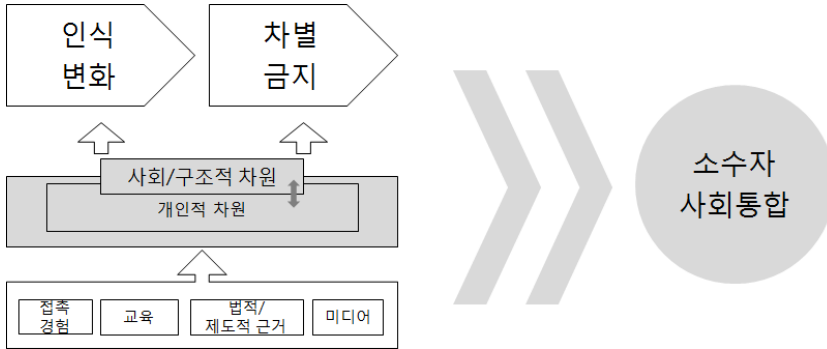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 이론적 틀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소수자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국내, 국외(유럽연합) 정책을 살펴보았다. 정책은 크게 인식 변화 영역, 법적·제도적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기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18)의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포용 정도를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 및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국제 비교 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1~6차)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내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 정책 제언

아래에서는 주요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의 틀을 정책 제언의 틀로 삼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에서 밝혔듯이 소수자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수자 사회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인식 변화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 제언에 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6-1-1] 소수자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정책 방향 틀



1. 교육을 통한 접근

교육을 통한 편견 감소 및 인식 개선은 그동안 관련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정책 방안 중 하나이다(McBride, 2015). 이처럼 교육을 통한 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알고 이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이해주 외, 2008).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이러한 가치나 신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 시기로 교육을 통해 이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편견은 아동·초기청소년기(Raabe & Beelmann, 2011), 구체적으로는 10~12세경에 정교화(김국현, 추병완, 2008)된다고 보고 이 시기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이러한 편견이 형성되면, 이는 생애 과정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Henry & Sears, 2009). 따라서 이러한 편견 교육 과정이 초기아동기(early childhood education) 아동의 발달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²⁸⁾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에 교육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편견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반편견 교육이 행해지는 상황(context), 교육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구체적인 교수법 등을 세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기 반편견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기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기로, 나와 구별되는 타자, 다양한 정체성 등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특성과 연계하여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perspective taking)’, 롤플레이팅과 같은 활동을 통해 타 집단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McBride, 2015; Di Bernardo, Vezzali, Stathi, Cadamuro, & Cortesi, 2017).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반편견 교육에서는 해당 사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에서 편견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접근(critical pedagogy)이 중요하다(Stephan & Vogt, 2004). 즉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반편견 교육 이념, 커리큘럼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반편견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나 커리큘럼 등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임정현, 2005). 특히 한국 사회의 사회적 현실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매우 부족하다(김국현, 추병완, 2008).

28) see, e.g.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의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이 외에도 일부 학교 도덕이나 사회과 교과과정에서의 교수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의 학습 이외에도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즉 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일상 및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반편견 교육, 인권 관련 교육, 혐오 및 차별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 관련 교사 교육 개발, 교사 보수교육 등을 주도하여, 향후 미래 세대가 이에 대한 감수성 및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정규 교과과정만이 아닌 교육 전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의 논의와 달리,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는 평생을 통해 학습되고 개인적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성인기에도 교육을 통한 신념 및 가치관 변화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이해주 외, 2008).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 교육은 아동기의 개입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 반편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편견 교육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나 ‘계몽’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적 인식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들이 ‘무지해서’ 혹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라고 치부할 수 없다. 집단 위협감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일자리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소수집단과 경쟁을 하는 것, 혹은 소수자의 규모 증가나 권력의 증가로 인해 내국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위협감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김복순과 이규용(2010)의 연구에서는 방문취업제로 인한 동포 외국인의 유입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들의 위협감을 단순히 실체가 없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치부할 수 없다. 성인에 대한 반편견 교육 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기 반편견 교육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혹은 공공 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편견으로 인한 혐오, 차별은 개인 간에 발생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관련 영역 종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용하는 학교, 의료기관, 주민센터, 구청, 군대 등의 필수 공공 영역에서 차별받는 경우도 종종 보고된다.²⁹⁾ 이처럼 국가에 의해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은 이러한 차별을 제재하고 모든 국민을 이러한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성격 이외에 현재 공적 영역의 공무원에 대한 보편적 인권교육 의무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17대 국회부터 최근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안(가칭)이 발의되었지만 재차 무산되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교육에서 이러한 제도적 차별에 대한 사례 교육, 관련 법령, 판례 및 이에 대한 해설집 제공 등을 통해 종사자의 Do/Don't를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논의된 유럽연합의 '교사의 역량 및 자격에 관한 유럽 공통

29)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장서연 외, 2014)의 성소수자 조사에 따르면 관공서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는 24.4%에 달하였다.

의 원칙(Common European principles for teacher competences and qualifications)' 같은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Tibbitts(2017)의 책임감 모델(Accountability Model)³⁰⁾은 이러한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ibbitts(2017)은 교육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인권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책임감 모델은 특히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 인력, 사법기관 인력, 의료 및 복지인력,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의 형태를 갖춘 모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및 직무 속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의 인권 보호 체계 속에서 이해하며,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즉 이 책임감 인권교육 모델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적 영역 종사자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적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 영역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차별, 공공 영역에 의한 구조적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모든 소수자 집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지만, 특히 본 연구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 하나인 성적 소수자에 대해 여러 함의를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뿐 아니라 많은 조사 및 연구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적 차별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을 둘러싼 첨예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바로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 의한

30)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소개된 자료임.

인권침해 및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위의 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보여 준다. 아동·청소년기의 인권감수성 및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인권 관련 교과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인권과 관련하여 일반 성인 교육은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배움터의 일반인 대상 열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 공공 영역의 의무교육은 여러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특정 영역, 특히 교육이나 보건, 복지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접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 영역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등의 공무원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표 6-1-1〉 교육을 통한 접근

구분	관련 부처 및 기관	내용
인권 관련 정규 교과과정	교육부	유아교육, 초·중·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인권 관련 일반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인 인권교육
인권 관련 공공 영역 의무교육	교육부	교사 교육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교육
	고용노동부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_외국인고용지원(외국인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시행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근로자 교육)

2. 문화적 접근

본 연구의 5장에 제시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접촉 여부 그 자체나 빈도보다 접촉에서 받은 인상이 어떠하였는지, 접촉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접촉 경험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모두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 접촉 경험은 이들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뿐 아니라 접촉이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친구 및 이웃 관계 등을 통해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일터에서 동료로서 이주노동자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켰다. 즉 아무리 개인적 선의에서 다가가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접촉의 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동네에서 자주 본 경우 이들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처럼 긍정적인 접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개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3장에서 소개된 인권영화제, 지역사회회의 인권축제, 대학 축제에서의 인권 관련 행사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생활 공간,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열리는 풀뿌리 문화행사는 ‘소수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행사이다. 또한 이러한 일상공간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은 소수자와 다수자 간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대한 지원(예산 지원 등)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Community Support, Multiculturalism, and Anti-Racism Initiatives Program(CSMARI)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지역사회 기관들의 반인종주의, 문화 다양성 관련 행사 등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 또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편견과 인종주의에 대항하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50~1000달러의 소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9).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무지개다리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집단 간(선주민과 이주민,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여성과 남성 등)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처럼 나의 생활공간인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수자/소수자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미시적 차원의 프로그램 이외에, 이러한 문화적 접근 등을 관장하는 보다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수자를 포함한 여러 집단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박광무, 2014). 기본계획 연구에서 규정한 소수자에는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소수자의 문화를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6-1-2〉 소수자/다수자 교류 및 문화 프로그램

구분	관련 부처 및 기관	내용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문화 다양성 사업 추진

3. 미디어 기반

언론은 흔히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불린다. 이 말은 언론이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및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매체(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이나 웹툰)는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편견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여,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을 논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에 합의하고, 노인, 어린이,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보도 강령을 제시하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심미선, 2013)에 따르면, 신문 매체 종사자와 방송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다는 참여자는 20%에 불과하였으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먼저 인권보도준칙은 어떠한 강제성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보도준칙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는, 이용자의 검색 패턴, 클릭

패턴에 따라 특정 영상 혹은 특정 광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편견을 학습하여,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천하여 이용자의 암묵적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Ahuja, 2019). ‘인종차별주의자 알고리즘(Racist Algorithm)’과 같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과정을 통한 인공지능(AI)의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한 암묵적 편견 학습과 이의 사람에 대한 영향 등에 최근 학계뿐 아니라 과학계, 정치계 등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Obama 행정부는 2016년 빅데이터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기술시스템에 편견이 코딩(coding)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성을 증진하고, 차별의 수호기지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이러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상의 추천 알고리즘이 암묵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이 한국 언론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오세욱, 2019). 이는 언론들이 인권 존중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다. 언론 또한 자신도 모르게 독자들의 암묵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는 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관심이나 움직임은 엿보이지 않는다. 언론 및 매체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통신부를 비롯한 과학기술 부처, 뉴스, TV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 매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매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일명 허위조작정보³¹⁾)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혐오, 차별이 재생산되

31)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정보 이용자들이 사

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disinformation), 특히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가 끼치는 심각성에 주목하여, 2018년 허위정보에 관한 액션플랜(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을 세우고, 이에 기반하여 2018년 허위정보에 대한 실천강령(Th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만들었다(European Commission, 2019b).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모질라, 마이크로 소프트 등과 같은 글로벌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이러한 실천강령을 지킬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부터 민간 팩트체크센터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 2019. 12. 13.). 이에 대한 독립성, 오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국외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등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다 큰 관심 및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6-1-3〉 미디어 관련 정책적 개입

구분	관련 부처 및 기관	내용
혐오 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미디어정책국(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민간)	방송심의 및 권익보호

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하는 모든 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12. 20.)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토론회.

구분	관련 부처 및 기관	내용
가짜 뉴스 및 온라인 매체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정보통신정책과, 디지털포용정책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과, 빅데이터진흥과, 인터넷 진흥과, 디지털인재양성팀) 소프트웨어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기반과(인재양성)) 방송진흥정책관(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4. 법·제도 개선 및 제정

영국의 17세기 정치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89)는 자유의 확장을 위해 국가 제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의 궁극적 목적은 없애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³²⁾라고 말한 바 있다(Nelson, 2017).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 및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의 차별 행동은 개인만의 인식이나 영역이 아니다(Murphy, Kroeper, & Ozier, 2018). 더욱이 개인의 차별 행동은 기관 혹은 국가적 개입에 의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Reskin, 2003).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인권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 1월 ‘혐오차별 기획단’을 위원장 직속 부서로 설립한 데 이어 2월에는 ‘혐오차별 대응 특

32) “the end of law is not to abolish or restrain, but to preserve and enlarge freedom. …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freedom.”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1689), p. 234. Nelson(2017)에서 재인용.

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³³⁾을 공포했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사회적 소수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혐오차별 관련 정책 제언,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국제 연대 강화 및 국내 협력 지지 기반의 공고화 등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인권기본법 등을 통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표 6-1-4〉 법적·제도적 정책 개입

구분	관련 부처 및 기관	내용
법적·제도적 개선 및 제정	법무부	인권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 금지법 등 관련 법안 제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선 등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정책, 제도, 법령, 관행에서의 차별, 혐오내용 감시)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때, 개별 집단별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개별 집단을 넘어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나타났듯이, 소수자 집단을 개별 정책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정책 대상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자 집단들을 일일이 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들을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적, 시혜적 관점을 갖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들의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소수자이면서 동시에 다수자일 수 있다.

3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09호.

한때 다수자였지만,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 보장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권기본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³⁴⁾ 등은 모두 이러한 보편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즉 인권, 차별 방지 등의 문제를 단순히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소수자 문제를 바라볼 때, 소수자는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된다,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남은 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소수자 당사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지금,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의 여러 현실적인 여건상 소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또 다른 축인 다수자, 즉 한국인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 한국인,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소수자 당사자의 차별 경험 및 대응 방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

34) 이러한 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 종교계의 반발 등 한국 사회는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리적 거리감이나 위협감 등도 주요 원인이지만, 이러한 법·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것 또한 이러한 갈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와 같은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없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일부 소수자 집단의 경우, 이들과의 직·간접접촉 경험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이 사회구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 및 인식을 활용하였으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다면 사회구조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들의 권리보장 측면까지 다루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보장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통합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기대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먼저, 현대 사회에서 명시적 편견은 교육의 효과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은밀한 형태 및 온정적인 형태의 암묵적 편견은 오히려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현경, 2011; Pettigrew & Meertens, 1995). 이 연구에서는 명시적 편견뿐 아니라 암묵적 편견을 분석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다차원적 구조에서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 문제를 다루는 관련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암묵적 편견의 경우 은밀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나 인종차별 등과 같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영역에서 쓰이는 암묵적 편견 척도를 본 연구 집단에 새롭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암묵적 편견을 실증적·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암묵적 형태의 편견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의 논의 및 척도는 이러한 논의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접근은 여전히 개별 집단 중심이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지원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개별 대상 접근적인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소수자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선별적으로 이들 집단 간 경증을 다룬다는 점 등에서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보편적 소수자 문제에 관한 향후 관련 법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3절 나가며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루는 일은 한 부처가 아닌 다양한 부처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또한 이는 단순히 정책 입안자, 정치·사회 엘리트만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도록,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일반 시민이다.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박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은 당사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불관용, 지지와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장서연, 2018).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 일반 시민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

는 편견적 인식을 깨닫고,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인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일이다. 이 연구가 한국인들이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명시적 편견뿐 아니라 암묵적 편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이들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차별 방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 강방글, 이영선(2013).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매개효과 검증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1-21.
- 강수구(2015). 유럽연합의 주요기구 및 유로존 탈퇴 절차. 울촌 뉴스레터. 해외 동향. <https://www.yulchon.com/mail/201507/newsletter/sub4.html>. 19.12.5 인출
- 노정연(2019.09.07.). [오래 전 ‘이날’ “더러운 놈” “냄새나” ... 인종차별 발언에 첫 모욕죄 적용].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61771>에서 인출.
- 구정화(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 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4.
- 국가인권위원회(2006).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2012).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과제. 인권교육 법제화 모색을 위한 공동 학술 발표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2014).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2019a). 혐오차별예방 ‘마주’ 캠페인 전개 -혐오차별 국민인식 개선, 대항문화 만들기-. 2019.06.04.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203>.
- 국가인권위원회(2019b). 보도자료: 제8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개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3817> 19.12.5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2019c). 보도자료: 인권위, 20일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

- sis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7603788 19.12.6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n.d.-a). 위원회설립목적.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001> 19.12.6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n.d.-b). 비전과 정책(2018-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2003> 19.12.5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ian.do> 2019.12.1 인출
-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권석균, 김기태, 김동배, 유성민, 이영면, 조봉순, 최보인(201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국현, 추병완(2008). 초등학교 도덕과 반편견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1-28.
- 김복순, 이규용(2010).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원인. 노동리뷰, 2010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수한(2015). 여성고용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9(5), 45-76.
- 김신익(2019.7.3.) 인권기본법? 신앙·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3724>에서 인출.
- 김정선(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92, 205-246.
- 김정진(2011).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교육 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교육, 15, 145-165.
- 김지윤, 강충구(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이슈브리

- 프 2014년 4월호. 아산정책연구원.
- 김현경(2011). 한국 유학생들의 ‘인종차별경험’이해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영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0(1), 13-30.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96b695617054135a3bcc322934f5492> 19.12.1 인출
- 노현웅(2019.06.24).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바 없다? 황교안의 주장은 틀렸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9087.html에서 인출.
- 류승아(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 문용린, 박병선, 안경환, 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무지개다리’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잇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352&call_from=naver_news.
- 미디어오늘(2019.12.13.). 방통위 ‘팩트체크 센터’ 예산 6억 지원 확정.
- 박가나(2016).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55(2), 71-91.
-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 박광무(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세원, 이사야(2019.6.3). 출판 대신 ‘인권’ 중시...대학축제가 달라졌어요.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1403#RedyAi>에서 인출.
- 박수균, 김성훈(2006.8.31).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통 코리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831010310270390020>에서 인출.
- 박수미, 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 5-26.

- 박임근(2019.06.25). “잡종강세” “튀기” ... 다문화가족 비하한 익산시장.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899207.html>에서 인출.
- 박정원(2009). 소수자보호의 국제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02. 74-83. 한국
법제연구원.
- 박정원(2013). 국제법상 소수자보호의 변화-유럽 소수자보호 골격조약을 중심
으로. 법학논총, 37(4), 591-623.
- 박효민, 김석호, 이상립(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
정당학회보, 15(2), 105-138.
- 법무부(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법무부(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서울 인권영화제. <http://hrffseoul.org/ko/about>
- 서혜미, 선담은(2018.8.14.). 탈북 모자의 죽음,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709.html
- 세계인권도시포럼. <http://whrcf.org/>
- 신경희, 최지원(2015). 서울시 소수자 지형. 서울연구원.
- 신창호(2001.12.10.). 외국인 실태... 짓밟힌 ‘인권’ 남은 건 절망 뿐...매일노동
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
- 심미선(2013).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심재진(2004). 영국의 단일평등위원회 설립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2(4), 32-38.
- 안소영(2019.8.16). 탈북 모자 아사...무관심과 차별 탓. VOA. <https://www.voakorea.com/episode/5043658-97442>에서 인출.
- 안진(2011).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광주광역시, 전북,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 531-568.
- 안혁근, 김준모, 주윤현, 맹보학, 권용수, 이영범...베트남 조직과 학원(2010). 국
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엄수아(2014.9.17.). 법무부 “인권 보호 주체는 우리” vs 시민단체 “인권위해 뭐
했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

- html?idxno=75586에서 인출.
- 오세욱(2019). 암묵적 편견. 한국기자협회. 2019.10.23. <http://www.journal.or.kr/news/article.html?no=46765>.
- 외교부(2017). [인권일반] [기본규범]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B규약).
- 우기택(2016). 기본법과 체제정당성에 관한 연구-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38-66.
- 원숙연(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225-256.
- 유효종, 이와마 아키코(2012).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 윤수종(2005).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 사회, 67, 12-38.
- 윤인진, 김춘석, 김석향, 김선화, 김화순, 윤여상...임순희(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윤인진, 송영호(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 윤정혜(2014).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 현황 및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 이보라, 조문희, 탁지영, 허진무(2020.1.28.).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별금지법'[가장 보통의 차별].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8209>에서 인출.
- 이정민, 이동영(2019). 대학생이 인식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연구: 장애인·다문화인·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차이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43, 61-98.
- 이준일(2017).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방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 이해주, 최윤진, 김진화, 박성숙, 김윤나, 김성애(2008).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 사례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단체 연석회의(2009). [보도자료]세계인권선언 61주년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http://hrnet.jinbo.net/bbs/zboard.php?id=hr>

- _act&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
range=headnum&desc=asc&no=301
- 인권도시연구소(n.d.). 지방자치인권정책. http://hrcity.or.kr/bbs/board.php?bo_table=B30
- 임정현(2005). 반편견(anti-bias) 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정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장서연, 김정혜, 김현경, 나영정, 정현희, 유민희, 조혜인, 한가람, 박한희(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장서연(2018). 제도적 차별이 소수자의 삶을 모욕할 때. 허프포스트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discrimination_kr_5afe2b06e4b07309e0565571에서 인출.
- 장세룡(2016). 집시의 공화국 시민화 정책의 방향: 프랑스에서 이주민 집시 거주지의 철거와 추방. 역사와 세계. 49. 199-239.
- 전북 인권문화컨벤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65>
- 전영평(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 전영평(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유경(2019.06.19). 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 ... 차별·혐오 발언 논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8504.html>에서 인출.
- 주진우(2018).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 정책리포트(248), 1-17.
-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10문 10답.
-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 한국노동연구원(2007). 이주 노동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2013-2018).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 허수미(2008).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사회과교육*, 47(4), 153-181.
- 홍관표(201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309-344.
- 홍미화(2014).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 탐색. *법과인권교육 연구*, 7(2), 133-153.
- Ahuja, T. (2019). Veer Into The Other Side: How To Fight Implicit Bias In The Digital Age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19/04/25/veer-into-the-other-side-how-to-fight-implicit-bias-in-the-digital-age/#1f76226069d9>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Alperin, A., Hornsey, M. J., Hayward, L. E., Diedrichs, P. C., & Barlow, F. K.(2014). Applying the contact hypothesis to anti-fat attitudes: Contact with overweight people is related to how we interact with our bodies and those of others. *Social Science & Medicine*, 123, 37-44.
- Al Ramiah, A., Hewson, M., Dovidio, J. F., & Penner, L. A. (2010). Chapter 5: The Social Psychology of Discrimination: Theory,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 Berbrier, M.(2002). Making Minorities: Cultural Space, Stigma Transformation Frames, and the Categorical Status Claims of Deaf, Gay, and White Supremacist Activists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Sociological Forum*, 17(4), 553-591.
- Bhandal, L. & Hopkins, L.(2007). Fighting racism and promoting equal rights in the field of education.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1-40.

- Blackwell, C. W., Ricks, J. L., & Dziegielewski, S. F.(2004). Discrimination of Gays and Lesbians. *Journal of Health & Social Policy*, 19(4), 27-43. DOI: 10.1300/J045v19n04_02
- Bodapati, M., Anderson, J. F. & Brinson, T. E.(2008). Revisiting Hubert Blalock's power threat theory to determine its effect on court workgroup behavior as it concerns structured sentencing. *Criminal Justice Studies*, 21(2), 109-134. DOI: 10.1080/14786010802159806
- Bogardus, E.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rewer, M. B., & Kramer, R. M. (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https://doi.org/10.1146/annurev.ps.36.020185.001251>
- Brown, R(2010). *Prejudice*. Wiley-Blackwell.
- Cameron, L., & Rutland, A.(2006). Extended contact through story reading in school: Reducing children's prejudice towards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Issues*, 62, 469-488.
- Capotorti, F, (1979). Study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UN Sub-Commission of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New York: UN.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74-80. <https://doi.org/10.2307/3033890>
- Chu, D., & Griffey, D. (1985). The contact theory of integration: The case of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2, 323-333.
- Cohen, E. G., & Lotan, R. A. (1995). Producing equal-status interaction in the heterogeneous classro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 Journal, 32(1), 99-120. <https://doi.org/10.2307/1163215>
- Correll, J., Judd, C.M., Park, B. & Wittenbrink, B.(2010). 'Measuring prejudice,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In J.F. Dovidio, M. Hewstone, P. Glick and V.M. Esses (eds.),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Thousand Oaks, CA: Sage.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https://doi.org/10.1037/0022-3514.92.4.631>
- Deal, M. (2006). Attitudes of disabled people toward other disabled people and impairment group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ity University, London).
- Di Bernardo, G. A., Vezzali, L., Stathi, S., Cadamuro, A., & Cortesi, L. (2017). Vicarious, extended and imagined intergroup contact: A review of interventions based on indirect contact strategies applied in educational settings. *TPM-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24(1), 3-211.
- Dovidio, J. F., Brigham, J. C., Johnson, B. T., & Gaertner, S. L.(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N. Macrae, C. Stangor and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276-319. New York: Guilford.
- Dovidio, J. F., & Gaertner, S. L.(1986).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Historical trends and contemporary approaches.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1-34. Academic Press.
- Dovidio, J. F., Kawakami, K., & Gaertner, S. L.(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62-68.
- Dowler, K.(2003). Media consumption and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 and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punitive attitudes, and perceived police effectiven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0(2), 109-126.
- Eagly, A. H., & Chaiken, S.(1998).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p. 269-322). McGraw-Hill.
- ECRI(2007).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0. www.coe.int/en/european-commission-against-racism-and-intolerance/recommendation-no.10. 2019.11.30. 인출.
- Ellemers, N., & Barreto, M. (2009). Collective action in modern times: How modern expressions of prejudice prevent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5(4), 749-768.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9.01621.x>
- EUR-Lex(2019a). The European Council Directive 2000/43/EC. <https://eur-lex.europa.eu/eli/dir/2000/43/oj>. 19.12.5 인출.
- EUR-Lex(2019b). Council Directive 2000/78/EC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L0078:en:HTML>. 19.12.5 인출.
- European Commission(2015). Discrimination in the EU in 2015. Special Eurobarometer 437.
- European Commission(2018).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de-practice-disinformation>
- European Commission(2019a). Discrimination in the EU in 2019. Special Eurobarometer 493.

- European Commission(2019b).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tackling-online-disinformation>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5-6. Retrieved from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2016_0504_data_discrimination.pdf [<https://perma.cc/9XQT-9VYQ>].
- Feagin, J. R., & Feagin, C. B.(2003). *Racial and Ethnic Relations*(8th ed).
- Felicia, P.,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 Foa, R. (2015). Creating an Inclusive Society: Evidence from Social Indicators and Trends. Expert Group on Social Development and Agenda 2030. New York, NY: United Nations.
- Gleason, P.(1991). Minorities (almost) all: The minority concept in American Social Thought. *American Quarterly*, 43(3), 392-424.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https://doi.org/10.1037/0022-3514.70.3.491>
- Government of Canada. (2019). Community Support, Multiculturalism, and Anti-Racism Initiativ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funding/community-multiculturalism-anti-racism.html>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https://doi.org/10.1037/0022-3514.74.6.1464>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Hays-Thomas, R. (2012). The delusion of exclusion: Masters Psychology as Minority. *The Psychologist-Manager Journal*, 15(3), 164-173.
- Hamberger, J., & Hewstone, M.(1997). Inter-ethnic contact as a predictor of blatant and subtle prejudice: Tests of a model in four West European nations1.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173-190.
- Herek, G. M., & Capitano, J. P. (1996). "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412-424.
- Hewstone, M., & Swart, H. (2011). Fifty-odd years of intergroup contact: From hypothesis to integrated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3), 374-386.
- Hjerm, M. (2007). Do Numbers Really Count? Group Threat Theory Revisited.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33(8).
-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One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www.worldvaluessurvey.org.

- Johnson, A. (2006). Privilege, power, and difference. New York: McGraw-Hill.
- Kende, J., Phalet, K., van den Noortgate, W., Kara, A., & Fischer, R. (2018). Equality Revisited: A Cultural Meta-Analysis of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8), 887-895.
- Lalonde R., Guguere B., Fountaine M., & Smith A.(2007).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Ideological Assymetry in Relation to Interracial Dating and Transracial Adoption in Canad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5), 559-572.
- Loewen, G., & William, P. (2010). The Social Justice Perspective.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23(1), 5-18.
- Longmore, P. (2003). The second phase: From disability rights to disability culture. *Disabled and Proud*.
- Loseke, D.(1999). *Thinking About Social Problem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Macpherson, W.(1999).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London, UK Home Office.
- McBride, M. (2015). What works to redu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Edinburgh: Scottish Government
- Math, S. B., & Seshadri, S. P.(2013). The invisible ones: sexual minorities. *The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37(1), 4-6.
- Meeusen, C., & Kern, A.(2016). The relation between societal factors and different forms of prejudice: A cross-national approach on target-specific and generalized prejudice. *Social Science Research*, 55, 1-15.

- Meeusen, C. (2017). The structure of (generalized) prejudice: The relation between contextual factors and different forms of prejudice. PhD Thesis: KU Leuven.
- Mendoza-Denton, R.(2011). The Top 10 Strategies for Reducing Prejudice. Greater Good Magazine.
- Meuleman, B., Davidov, E., & Billiet, J.(2009). Chang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an societies, 2002-2007. A dynamic group conflict theory approach. *Social Science Research*, 38(2), 352-365.
- Miller, D. (2001).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rphy, M.C., Kroeper, K. M., & Ozier, E. M.(2018). Prejudiced Places: How Contexts Shape Inequality and How Policy Can Change Them.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5(1), 66-74.
- Naaranoja, K. R. (2016).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nd LGBT Issu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elsinki.
- National Research Council(2004). *Measuring Racial Discrimin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10887>.
- Nelson, K. A. (2017). Locke: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freedom". Retrieved from <https://inpropiapersona.com/articles/locke-where-there-is-no-law-there-is-no-freedom/>
- Nibert, D.(1996). Note on minority group as sociological euphemism. *Race. Gender & Class*, 3, 129-136.
- Nussbaum, M. (1999). Sex & Soci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01).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 Pérez-Testor, C., Behar, J., Davins, M., Sala, J. L. C., Castillo, J. A., Salamero, M., ... & Segarra, S.(2010). Teacher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Homosexuality.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3(1), 138-155.
- Pettigrew, T. F., & Meertens, R. W.(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57-75.
- Pettigrew, T. F., & Tropp, L. R.(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helan, J. C., Link, B. G., & Dovidio, J. F.(2008). Stigma and prejudice: one animal or two?.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358-367. doi:10.1016/j.socscimed.2008.03.022.
- Raabe, T., & Beelmann, A.(2011). Development of Ethnic, Racial, and National Prejudi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ultinational Meta-Analysis of Ag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82(6), 1715-1737. doi:10.1111/j.1467-8624.2011.01668.x.
- Reeves, Aaron & de Vries, Robert(2016). Does media coverage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recipients? the impact of the 2011 English riot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7(2), 281-306.
- Reskin, B. F.(2003). Including mechanisms in our models of ascriptiv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1).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 92-115.

- Schütz, H., & Six, B.(1996). How stro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 meta-analytic answer.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441-462.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ed. Phyllis A. Katz and Dalmás A. Taylor, pp. 53-84. New York: Plenum.
- Stacey, M.(2018). Adapting Minority Group Threat to Examine the Social Control of Sexual Orientation Bi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20), 3079-3101.
- Statistics South Africa(2019). *Mid-year population estimates 2019*. <http://www.statssa.gov.za/publications/P0302/P03022019.pdf>.
- Stephan, W. G., Stephan, C. W.(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Oskamp, S.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23-46). Hillsdale, NJ: Erlbaum.
- Stephan, W., & Vogt, W. P. (2004).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wim, J.,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Talaska, C. A., Fiske, S. T., & Chaiken, S.(2008). Legitimizing Racial Discrimination: Emotions, Not Beliefs, Best Predict Discrimination in a Meta-Analysis. *Social justice research*, 21(3), 263-396. doi:10.1007/s11211-008-0071-2.
- The Council of Europe(2016). Factsheet on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www.coe.int/en/web/minorities/fcnm-factsheet 2019.12.4. 인출.

The Council of Europe(2017). Fourth Opinion on Bosnia and Herzegovina - adopted on 9 November 2017. Advisory Committee on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The Human Rights Committee(1994). General Comment 23, Article 27, UN Doc. HRI/GEN/1/Rev.1 at 38(1994), paras. 5-1.

The UN General Assembly.(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Series*, 999, 171.

The UN General Assembly. (1992).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A/RES/47/135.

Tibbitts, F. L. (2017). Revisiting 'Emerging Model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Education*, 1(1).

Torres-Harding, S. R., Siers, B., & Olson, B. D. (201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Justice Scale (SJ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 77-88. DOI 10.1007/s10464-011-9478-2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England: Penguin Books.

European Commission.(2007). European handbook on equality data.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16). European handbook on equality data: 2016 revision, Brussels: European.

van Amersfoort, H.(1978). 'Minority' as a sociological concept. *Ethnic and Racial Studies*, 1(2), 218-234.

- Voci, A., & Hewstone, M. (2003).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Toward Immigrants in Italy: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and the Moderational Role of Group Salienc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1), 37-54.
- Vonofakou, C., Hewstone, M., & Voci, A. (2007). Contact with out-group friends as a predictor of meta-attitudinal strength and accessibility of attitudes toward gay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04-820. <https://doi.org/10.1037/0022-3514.92.5.804>
- Waddington, L., & Diller, M. (2000). Tensions and coherence in disability policy: The uneasy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civil rights models of disability in American, European and international employment law. *International Disability Law and Policy Symposium*.
- Wagner, U., Christ, O., Pettigrew, T. F., Stellmacher, J., & Wolf, C. (2007). Prejudice and minority proportion: Contact instead of threat effec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 380-390.
- Wark, C., & Galliher, J. F. (2007). Emory Bogardus and the Origins of the Social Distance Scale. *The American Sociologist*, 38(4), 383-395.
- Welch, K., Payne, A. A., Chiricos, T., & Gertz, M.(2011). The typification of Hispanics as criminals and support for punitive crime control policies. *Social Science Research*, 40(3), 822-840.
- Wirth, L.(1945). *The Problems of Minority Groups*. In *The Science of Ban in the World Crisis*. Ralph Linton,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47-72.

- Young, D. R. (1932). American minority peoples: A study in racial and cultural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per & Brothers.
- Yuker, H. E., & Hurley, M. K. (1987). Contact with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asurement of intergroup contact. *Rehabilitation Psychology*, 32(3), 145-154. <https://doi.org/10.1037/h0091569>

부록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하에, 귀하의 개인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등)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개비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파일로 작성된 자료는 보안USB에 문서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수행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의 보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10월

연구책임자: 포용복지연구단 주유선 부연구위원

• 조사주관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1. 선정 질문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3. 기타

선문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1. ()년

선문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구/시/군

선문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자·전문가
2. 사무 종사자
3. 서비스·판매 종사자
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6. 단순노무 종사자
7. 학생
8. 전업주부
9. 기타(무직, 은퇴 등)



II. 이주노동자

문1.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이주노동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 여러 명이 있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구분	접촉 경험		접촉 빈도			
	없다	있다	주 4회 이상	주 1~3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1	2	1	2	3	4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2. 다음과 같은 관계로 이주노동자와 직접 만났을 때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 앞서 응답한 유형별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떠올리며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3	4	5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3.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이주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구분	관련 정보 접촉 경험		관련 정보의 내용				
	없다	있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1	2	3	4	5
1.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3. 온라인 게임 및 웹툰							
4.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							

문4. 다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장입니다. 귀하는 다음 문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1.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2.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3.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4.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5.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6.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7. 이주노동자들은 보통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					
8. 이주노동자들과 직장동료가 되면, 한국인 동료들이 더 많은 책임과 일을 떠맡을 것이다					
9. 결혼이주여성인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듯이,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0. 이주노동자와 보통 한국인의 직장문화나 업무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1.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그들을 고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북한이탈주민

문5.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북한이탈주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로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 여러 명이 있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구분	접촉 경험		접촉 빈도			
	없다	있다	주 4회 이상	주 1~3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1	2	1	2	3	4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6. 다음과 같은 관계로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만났을 때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 앞서 응답한 유형별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떠올리며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3	4	5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7.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구분	관련 정보 접촉 경험		관련 정보의 내용				
	없다	있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1	2	3	4	5
1.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3. 온라인 게임 및 웹툰							
4.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							

문8.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장입니다. 귀하는 다음 문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1.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2.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3.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5.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만약 노력한다면 혜택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인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가까운 친구사이일지라도 서로를 편하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7. 한국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쏟고, 보통 한국인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다					
8.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9. 북한이탈주민은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정직하다					
10.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					
11. 나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상사로 임명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2. 나는 나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내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3.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을 원하지 않는 곳에 어울리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14.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다					
15.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나 기술과는 다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16. 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					
17. 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IV. 성소수자

문9.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성소수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셨습니까?

※ 여러 명이 있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구분	접촉 경험		접촉 빈도			
	없다	있다	주 4회 이상	주 1~3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1	2	1	2	3	4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10. 다음과 같은 관계로 성소수자와 직접 만났을 때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 앞서 응답한 유형별 대표적 인물 한 사람을 떠올리며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3	4	5
1. 가족으로서					
2. 친구로서					
3. 일터에서					
4. 우리 동네에서					

문11. 귀하는 최근 6개월 간 성소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구분	관련 정보 접촉 경험		관련 정보의 내용				
	없다	있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1	2	3	4	5
1.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3. 온라인 게임 및 웹툰							
4. 가족, 친구 및 지인의 말							

문12. 다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문장입니다. 귀하는 다음 문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1.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한다					
2. 성소수자들의 도덕관념 또는 종교적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3. 성소수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4. 성소수자와 이성애자는 비록 가까운 친구사이일지라도 서로를 편하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5. 만약 나에게 자녀가 있고, 자녀가 동성애자이며 동성애자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6.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성소수자라면 비록 적절한 학위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화가 날 것이다					
7. 나는 성소수자가 내 가족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8. 이민자들의 새로운 나라의 관습을 받아들이듯이, 성소수자도 사회의 관습을 좀더 받아들이л 필요가 있다					
9. 성소수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성애자가 아동에게 미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10. 만약 성소수자가 진정으로 사회에 통합되길 원한다면 그들의 성적지향성을 숨길 필요는 없다					
11. 나는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12.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종종 놓친다					
13. 나는 성소수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					



V. 가치관 및 사회인식

문13.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자유 및 권리가 얼마나 존중 혹은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존중되는 편이다	매우 존중된다
	1	2	3	4	5
1. 이주노동자의 자유 및 권리					
2.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및 권리					
3. 성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					

문14. 귀하는 각 사형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인종적 특성 때문에 차별 받는 집단으로, 수적 규모보다는 지배집단에 종속해 있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매우 중요 하다	선택할 수 없음
	1	2	3	4	5	6	7	8
1.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2.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문15. 귀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함에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한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정책을 고친다
3.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든다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 방식을 개선한다
6.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존중에 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문17. 귀하는 다음 문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들에 직면한다					
3.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					
4. 나는 때때로 나의 불편한 기분을 남들에게 퉁다					
5. 나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6.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					
7.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8. 논쟁을 할 때 나는 항상 감정에 차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9. 나는 가끔 보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도움을 준다					

문18.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1	2	3	4
1. 가족(친척 포함)				
2. 이웃				
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VI. 일반사항

배문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 졸업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2.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하여 세후 금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8. 1,000만원 이상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종교 없음
2. 가톨릭
3. 개신교
4. 불교
5. 기타

배문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사실혼/동거 포함)
3. 사별
4. 이혼
5. 별거

배문5.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구분한다고 할 때,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1. 매우 보수
2. 다소 보수
3. 중도
4. 다소 진보
5. 매우 진보

부록 2. 부표 및 그림

〈부표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명시적/ 암묵적 편견	문항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명시적	1.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1.80	22.80	34.50	34.90	6.00
명시적	2.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1.60	17.50	34.70	40.40	5.80
명시적	3.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3.70	26.90	38.00	23.20	8.20
명시적	4.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70	40.50	28.10	16.80	3.90
명시적	5.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8.30	35.80	30.30	20.10	5.50
명시적	6.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4.60	30.20	36.10	26.20	2.90
암묵적	7. 이주노동자들은 보통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	2.00	11.80	36.60	42.40	7.20
암묵적	8. 이주노동자들과 직장 동료가 되면, 한국인 동료들이 더 많은 책임과 일을 떠맡을 것이다.	3.30	32.00	39.70	21.90	3.10
암묵적	9. 결혼이주여성인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듯이,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00	2.50	18.70	57.80	20.00
암묵적	10. 이주노동자와 보통 한국인의 직장문화나 업무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0.50	5.30	41.00	46.30	6.90
암묵적	11.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그들을 고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40	9.10	36.10	47.00	6.4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시적/ 암묵적 편견	문항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명시적	1.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6.80	44.10	37.70	9.40	2.00
명시적	2.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8.30	47.50	36.60	6.00	1.60
명시적	3.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2.90	15.30	29.10	42.50	10.20
명시적	4.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6.70	38.70	38.80	12.60	3.20
명시적	5.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만약 노력한다면 혜택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	16.70	35.90	39.60	5.80
명시적	6. 한국인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비록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서로를 편하게 느낄 수 없을 것이다.	5.00	35.50	38.60	18.10	2.80
명시적	7. 한국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쏟고, 보통 한국인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다.	6.00	29.80	40.70	17.70	5.80
명시적	8.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4.00	27.70	36.70	28.50	3.10
명시적	9. 북한이탈주민은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정직하다.	2.20	14.90	59.80	21.00	2.10
명시적	10. 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	11.80	18.50	47.70	18.30	3.70
명시적	11. 나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상사로 임명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4.40	14.20	42.10	34.80	4.50
명시적	12. 나는 나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내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4.00	16.10	43.00	31.80	5.10
암묵적	13.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을 원하지 않는 곳에 어울리기 위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4.90	29.40	41.90	21.20	2.60
암묵적	14.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다.	1.00	5.40	30.00	54.40	9.20
암묵적	15.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나 기술과는 다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1.60	15.80	51.50	28.20	2.90
암묵적	16. 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	4.70	23.70	43.90	25.90	1.80
암묵적	17. 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8.20	22.40	50.30	16.90	2.2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3〉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시적/ 암묵적 편견	문항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명시적	1.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 나 가치를 훼손한다.	9.40	27.70	28.20	25.80	8.90
암묵적	2. 성소수자들의 도덕관념 또는 종교적 신념 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6.60	20.90	29.50	31.90	11.10
암묵적	3. 성소수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은 우 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7.10	24.50	29.00	30.50	8.90
명시적	4. 성소수자와 이성애자는 비록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서로를 편하게 느낄 수 없 을 것이다.	8.20	25.70	29.60	27.90	8.60
명시적	5. 만약 나에게 자녀가 있고, 자녀가 동성애 자이며 동성애자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를 갖는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5.70	10.30	24.80	33.80	25.40
명시적	6.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성소수자라면 비록 적절한 학위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화가 날 것이다.	12.00	26.00	33.10	19.90	9.00
명시적	7. 나는 성소수자가 내 가족과 성적으로 친 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25.10	33.00	28.60	9.10	4.20
암묵적	8. 이민자들의 새로운 나라의 관습을 받아들 이듯이, 성소수자도 사회의 관습을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7.50	12.10	38.10	32.90	9.40
암묵적	9. 성소수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성 애자가 아동에게 미치는 것과는 다를 것 이다.	7.10	17.20	33.50	30.80	11.40
암묵적	10. 만약 성소수자가 진정으로 사회에 통합 되길 원한다면 그들의 성적 지향성을 숨길 필요는 없다.	5.50	13.60	41.90	33.10	5.90
암묵적	11. 나는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 서 이해할 수 있다.	10.00	19.10	42.50	24.50	3.90
암묵적	12.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종종 놓친다.	4.20	10.70	35.90	43.10	6.10
암묵적	13. 나는 성소수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	10.60	23.00	41.40	20.50	4.50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4〉 집단 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비교

(단위: 점)

구분	명시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성별					
남성	3.03(.51)	2.96(.71)	2.80(.49)	3.34(.84)	c>a>b
여성	3.05(.53)	3.01(.61)	3.00(.54)	3.13(.92)	c>a>b
연령					
만 19~29세	2.79(.55)	2.85(.70)	2.88(.55)	2.65(.93)	b,a>c
만 30~39세	3.06(.53)	3.13(.58)	2.97(.57)	3.06(.85)	a>b
만 40~49세	3.08(.52)	3.03(.69)	2.91(.53)	3.30(.84)	c>a>b
만 50~59세	3.06(.48)	2.97(.67)	2.85(.48)	3.35(.81)	c>a>b
만 60세 이상	3.14(.46)	2.95(.64)	2.89(.50)	3.57(.75)	c>a>b
지역					
수도권	3.04(.53)	2.97(.66)	2.91(.53)	3.23(.91)	c>a>b
비수도권	3.04(.51)	3.00(.67)	2.89(.51)	3.24(.86)	c>a>b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23(.37)	3.18(.56)	2.87(.40)	3.63(.74)	c>a>b
고등학교 졸업	3.03(.53)	3.03(.70)	2.87(.53)	3.19(.89)	c>a>b
대학교 졸업	3.05(.52)	2.98(.64)	2.91(.53)	3.25(.88)	c>a>b
대학원 졸업 이상	2.95(.49)	2.80(.62)	2.86(.48)	3.19(.94)	c>b>a
혼인 상태					
미혼	2.85(.55)	2.90(.68)	2.85(.55)	2.79(.94)	a>b>c
기혼	3.11(.49)	3.01(.64)	2.92(.51)	3.39(.81)	c>b>a
사별	3.17(.43)	3.10(.88)	2.90(.58)	3.51(.65)	c>a>b
이혼	3.09(.52)	3.04(.72)	2.88(.52)	3.35(.93)	c>a>b
별거	3.14(.09)	3.12(.25)	2.85(.27)	3.45(.57)	c>a>b
직업					
관리자/전문가/사무직	3.03(.55)	2.95(.63)	2.91(.54)	3.24(.92)	c>a>b
실업자/비경활인구	3.03(.53)	2.99(.66)	2.94(.54)	3.17(.94)	c>a>b
그 외	3.05(.48)	3.01(.68)	2.84(.49)	3.29(.79)	c>a>b

구분	명시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6(.54)	2.73(.64)	2.68(.62)	2.86(1.04)	c>a>b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3(.53)	3.01(.69)	2.89(.57)	3.20(.90)	c>a>b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08(.48)	3.03(.64)	2.92(.47)	3.30(.84)	c>a>b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04(.57)	2.96(.66)	2.90(.54)	3.25(.94)	c>a>b
700만 원 이상	2.97(.54)	2.86(.67)	2.89(.52)	3.16(.87)	c>b>a
종교					
가톨릭	2.97(.49)	2.86(.63)	2.84(.55)	3.22(.78)	c>a>b
개신교	3.17(.50)	2.99(.63)	2.88(.55)	3.64(.91)	c>a>b
불교	3.07(.51)	3.05(.67)	2.92(.50)	3.23(.77)	c>a>b
기타	3.06(.50)	3.00(.70)	2.93(.58)	3.27(.71)	c>a>b
종교 없음	2.99(.53)	2.99(.67)	2.91(.51)	3.07(.90)	c>a>b
정치 성향					
보수적	3.29(.57)	3.07(.69)	2.95(.55)	3.58(.81)	c>a>b
중도	3.07(.48)	3.05(.63)	2.97(.49)	3.18(.82)	c>a>b
진보적	2.90(.53)	2.86(.67)	2.78(.51)	3.07(.95)	c>a>b

주: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5〉 집단 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비교

(단위: 점)

구분	암묵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성별					
남성	3.20(.32)	3.30(.50)	3.12(.44)	3.17(.50)	a>c,b
여성	3.15(.31)	3.27(.46)	3.06(.48)	3.10(.49)	a>c,b
연령					
만 19~29세	3.05(.36)	3.13(.54)	3.09(.49)	2.93(.52)	a,b>c
만 30~39세	3.16(.28)	3.33(.49)	3.01(.42)	3.13(.43)	a>c>b
만 40~49세	3.22(.32)	3.35(.48)	3.11(.45)	3.21(.55)	a>c>b
만 50~59세	3.19(.30)	3.30(.42)	3.12(.44)	3.14(.49)	a>c,b
만 60세 이상	3.21(.31)	3.30(.45)	3.12(.49)	3.23(.45)	a>c>b
지역					
수도권	3.15(.31)	3.28(.47)	3.06(.47)	3.11(.48)	a>c,b
비수도권	3.20(.32)	3.30(.48)	3.13(.45)	3.17(.51)	a>c,b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05(.34)	3.04(.40)	3.09(.40)	3.02(.59)	b>a>c
고등학교 졸업	3.17(.34)	3.31(.53)	3.11(.46)	3.10(.51)	a>b>c
대학교 졸업	3.18(.31)	3.28(.45)	3.09(.47)	3.16(.50)	a>c>b
대학원 졸업 이상	3.19(.29)	3.34(.47)	3.10(.47)	3.14(.41)	a>c>b
혼인 상태					
미혼	3.10(.34)	3.19(.53)	3.10(.47)	2.99(.50)	a>b>c
기혼	3.20(.30)	3.31(.45)	3.09(.45)	3.19(.49)	a>c>b
사별	3.26(.42)	3.40(.50)	3.21(.65)	3.17(.59)	a>b>c
이혼	3.18(.33)	3.37(.58)	3.04(.56)	3.14(.50)	a>c>b
별거	3.32(.18)	3.20(.16)	3.30(.35)	3.47(.41)	c>b>a
직업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3.19(.31)	3.31(.48)	3.10(.44)	3.17(.50)	a>c>b
실업자/비경활인구	3.14(.32)	3.24(.49)	3.08(.46)	3.09(.48)	a>c>b
그 외	3.20(.32)	3.32(.46)	3.09(.48)	3.17(.52)	a>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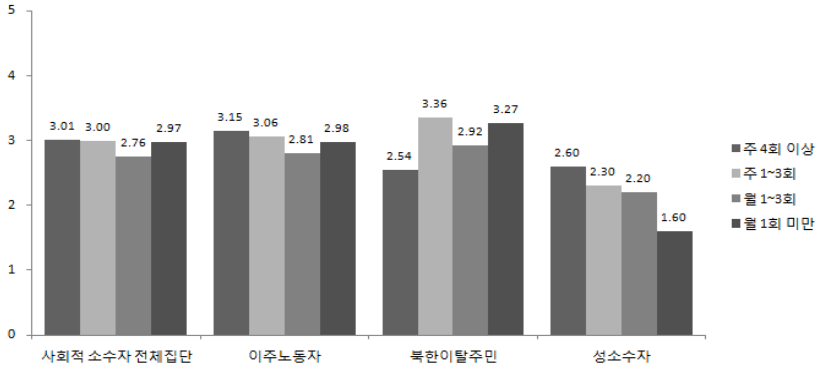
구분	암묵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03(.43)	3.03(.67)	3.07(.57)	3.00(.56)	b>a>c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13(.31)	3.28(.48)	3.05(.47)	3.05(.54)	a>b,c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21(.31)	3.31(.44)	3.13(.45)	3.19(.49)	a>c>b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18(.33)	3.32(.49)	3.06(.50)	3.16(.48)	a>c>b
700만 원 이상	3.17(.26)	3.24(.49)	3.10(.39)	3.18(.40)	a>c>b
종교					
가톨릭	3.17(.30)	3.29(.41)	3.10(.50)	3.12(.51)	a>c>b
개신교	3.22(.29)	3.29(.47)	3.13(.46)	3.24(.47)	a>c>b
불교	3.18(.32)	3.26(.48)	3.15(.46)	3.12(.48)	a>b>c
기타	3.18(.27)	3.37(.45)	2.99(.54)	3.18(.52)	a>c>b
종교 없음	3.15(.33)	3.28(.50)	3.07(.45)	3.11(.51)	a>c>b
정치 성향					
보수적	3.29(.37)	3.36(.50)	3.11(.47)	3.23(.53)	a>c>b
중도	3.15(.32)	3.27(.46)	3.08(.47)	3.11(.46)	a>c>b
진보적	3.16(.29)	3.26(.48)	3.10(.45)	3.12(.51)	a>c>b

주: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으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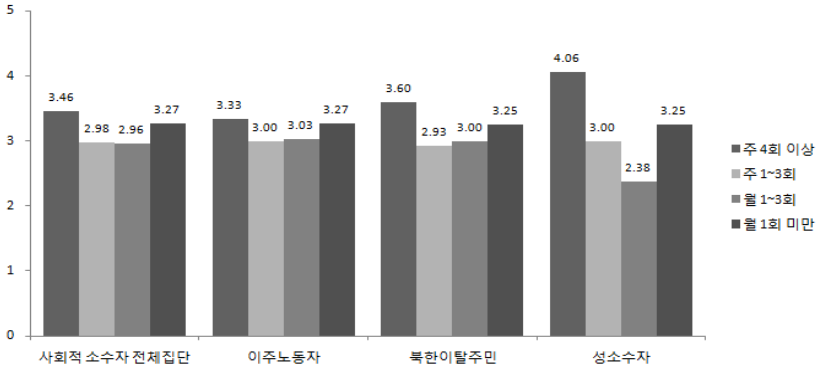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으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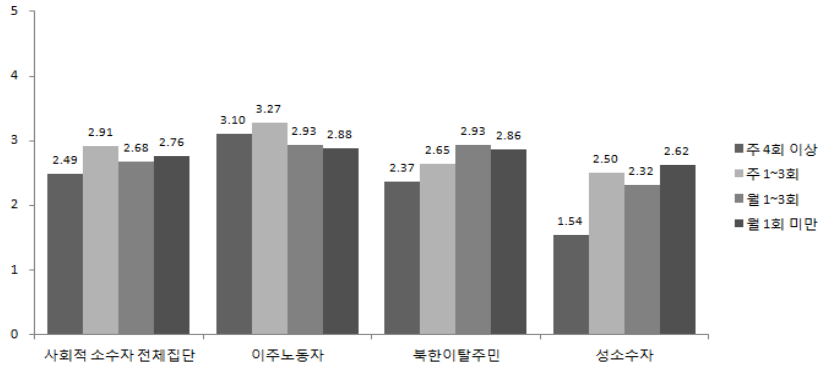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3]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친구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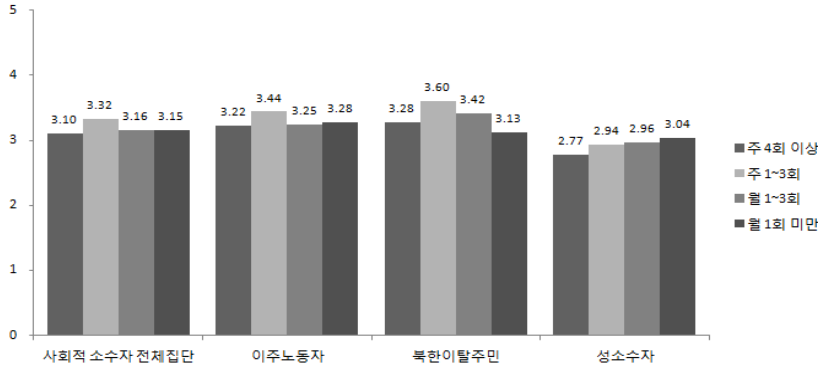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4]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친구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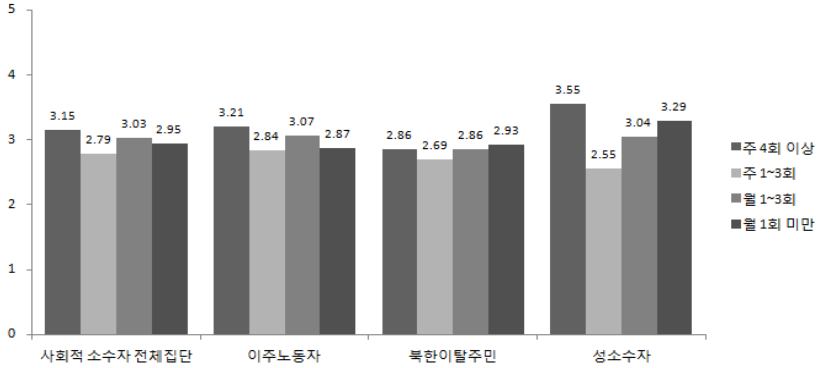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5]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일터에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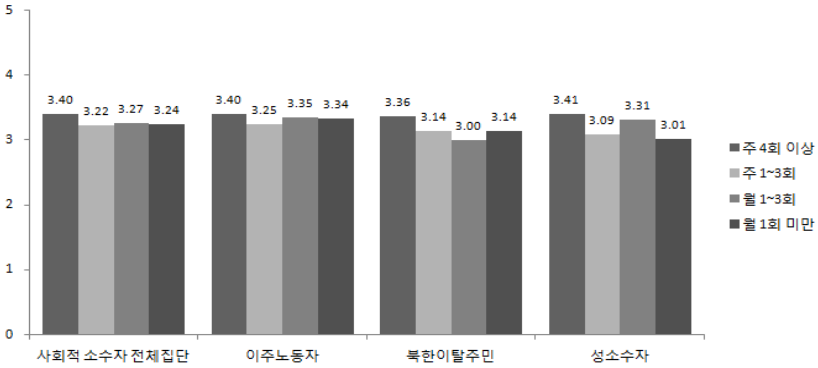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6]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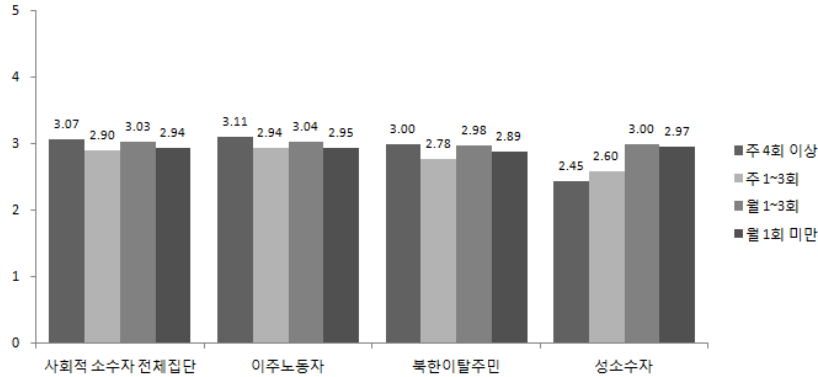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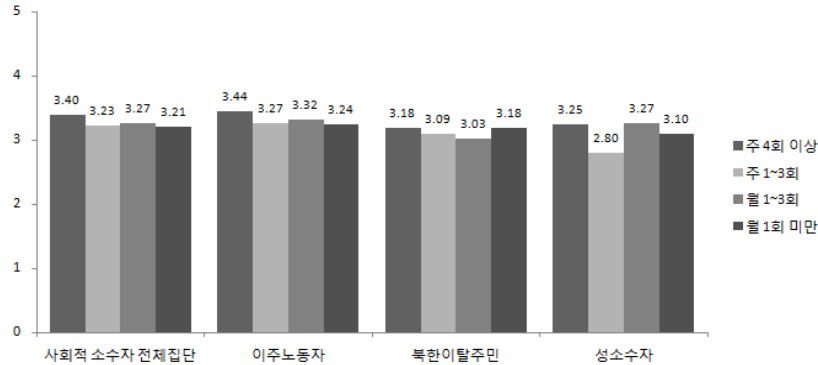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7]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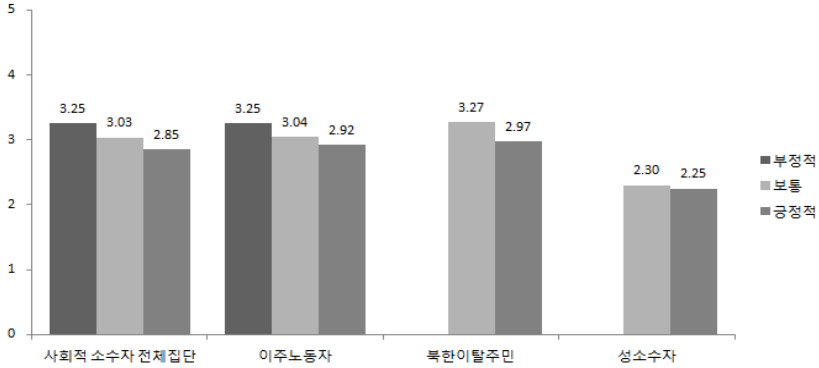
[그림 8] 직접접촉 빈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9]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으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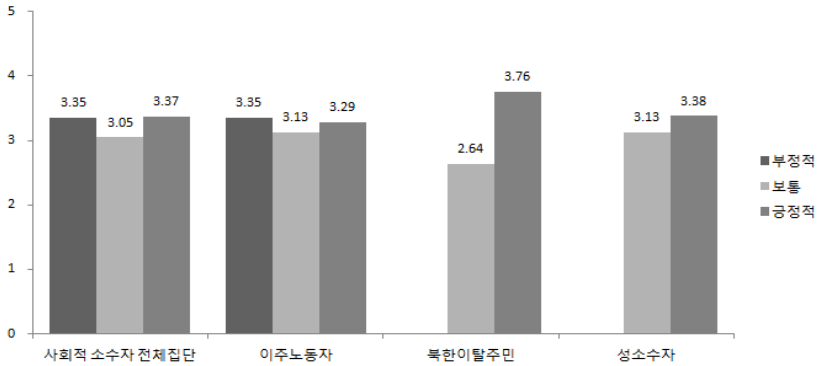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0]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으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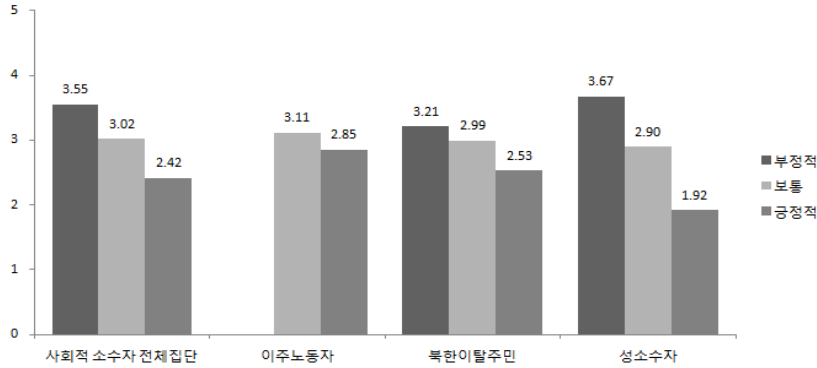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1]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친구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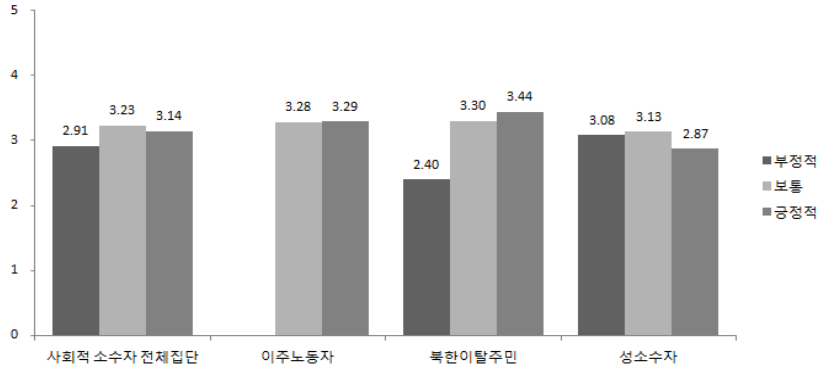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2]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친구로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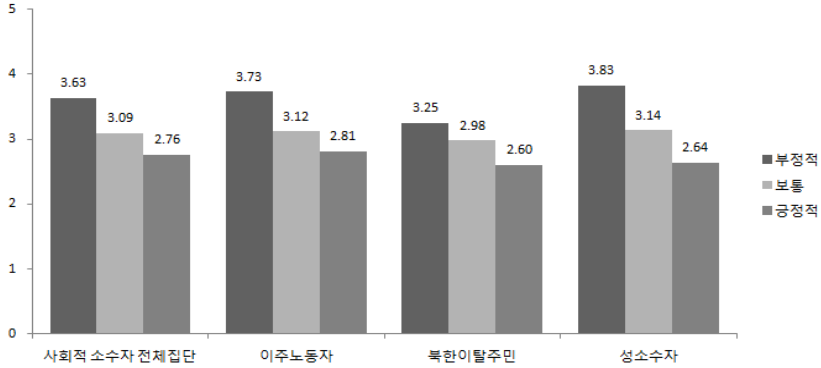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3]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일터에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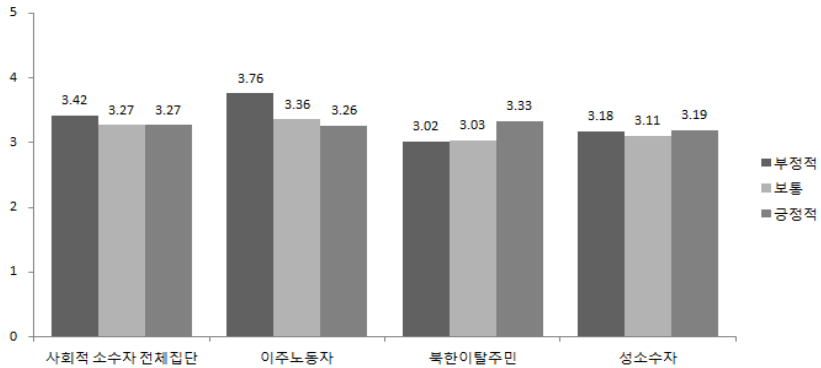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4]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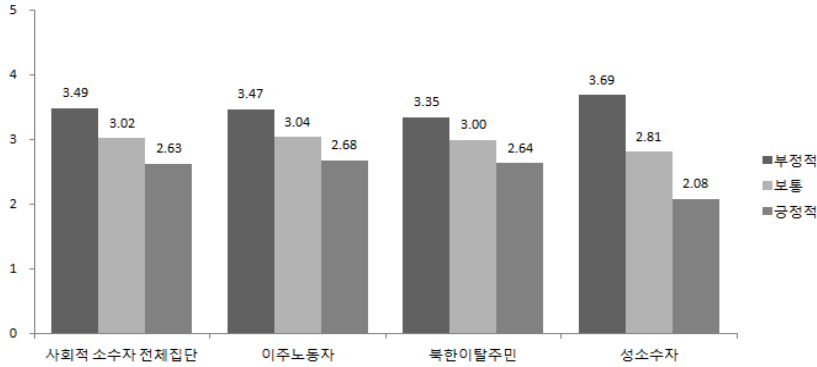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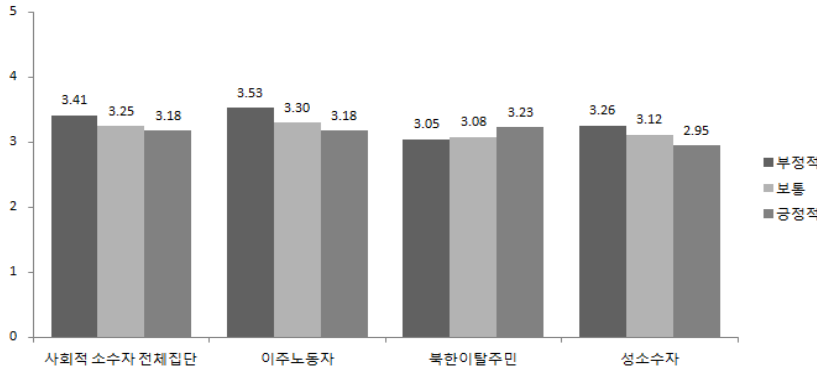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5]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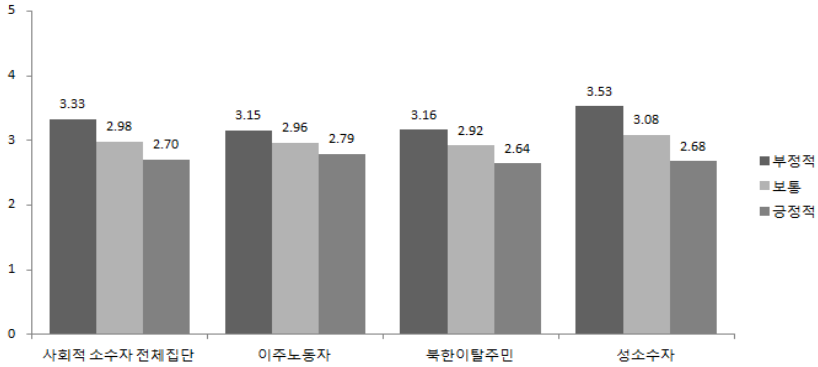
[그림 16] 직접접촉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우리 동네에서)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7]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대중매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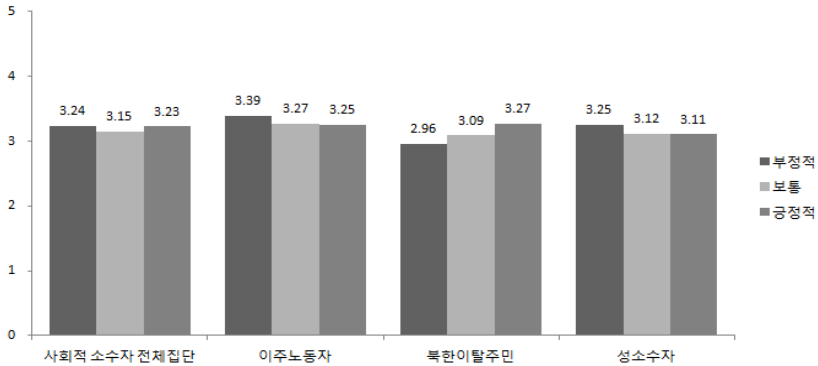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8]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대중매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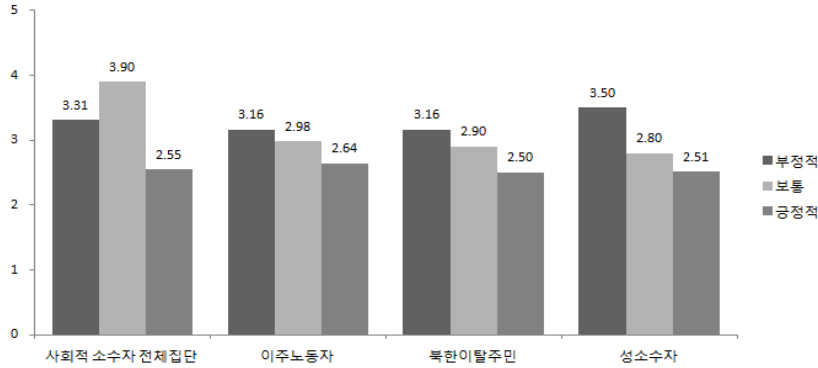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19]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소셜미디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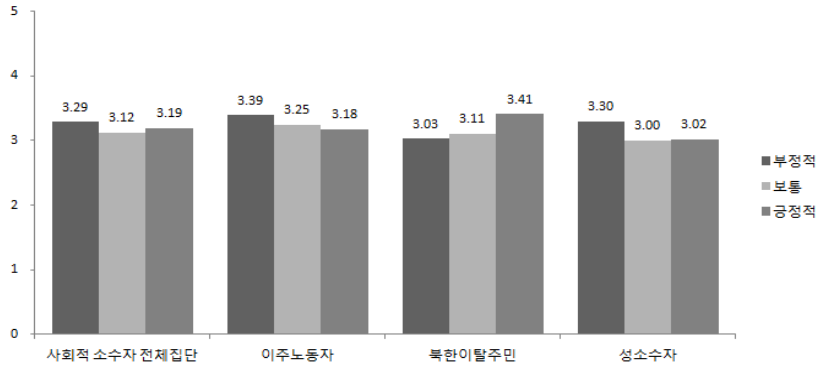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0]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소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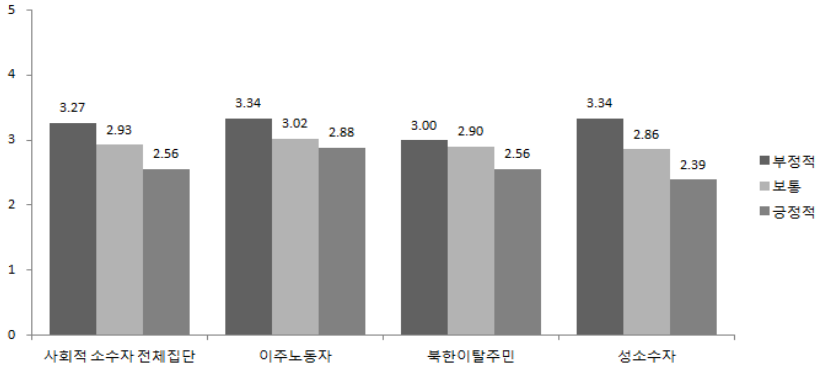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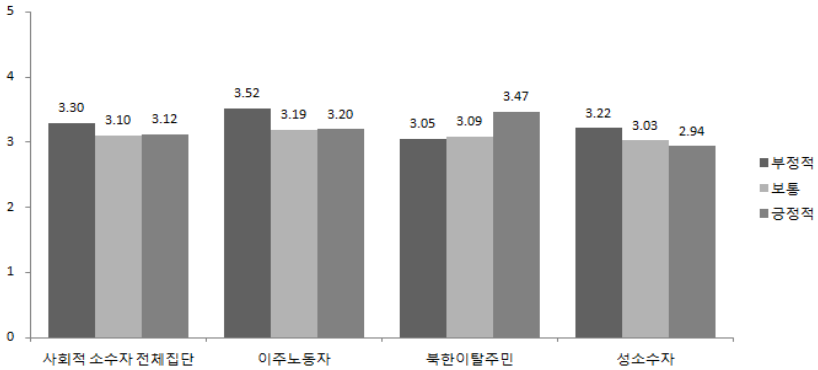
[그림 21]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온라인 게임 및 웹툰)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2]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온라인 게임 및 웹툰)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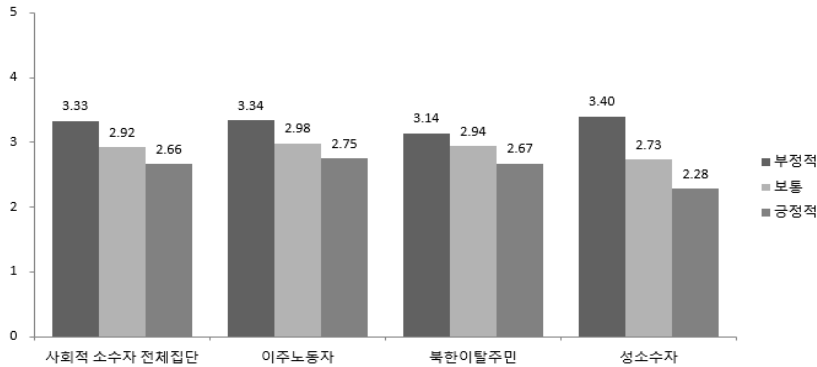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3]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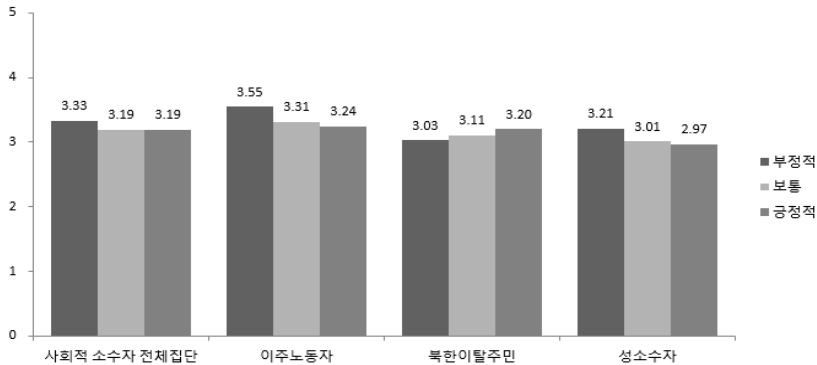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4] 간접접촉 내용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가족·친구 및 지인의 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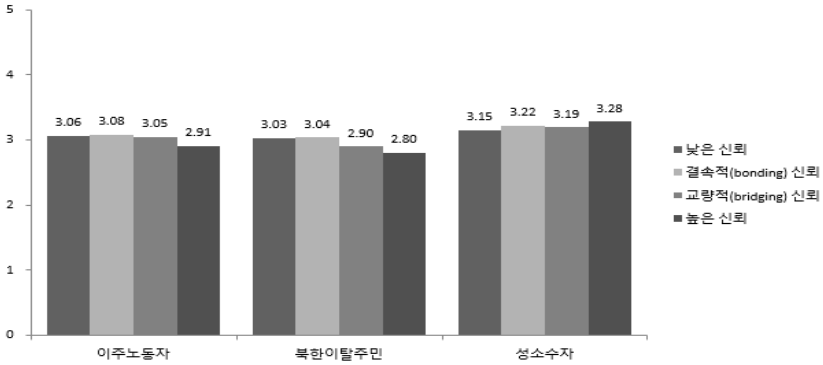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5]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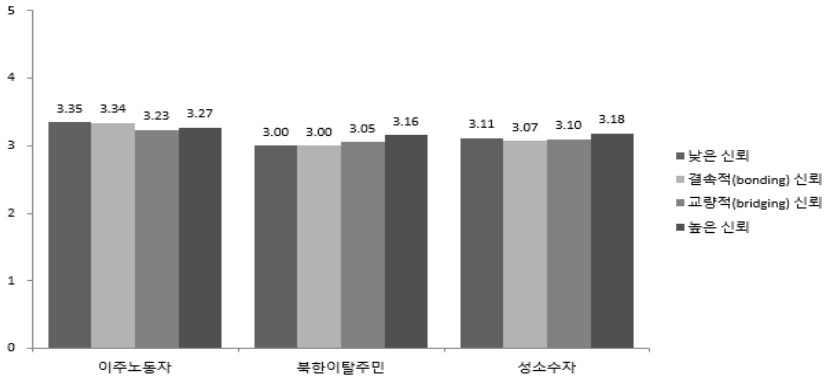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6] 대인 신뢰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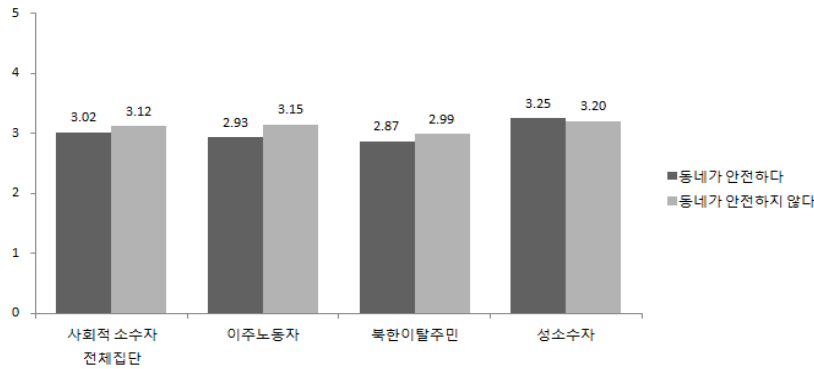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7]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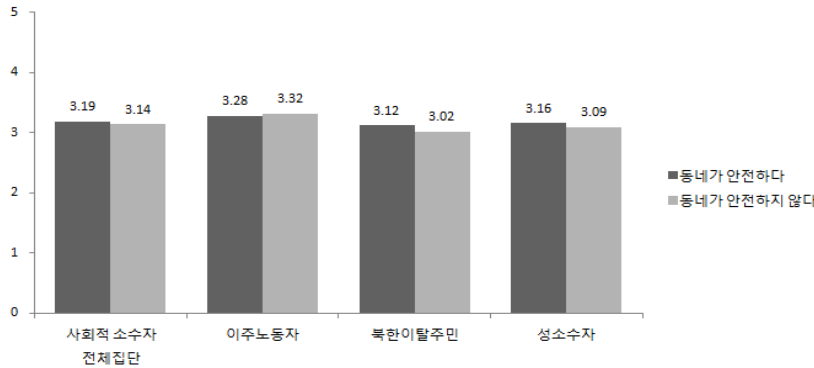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8]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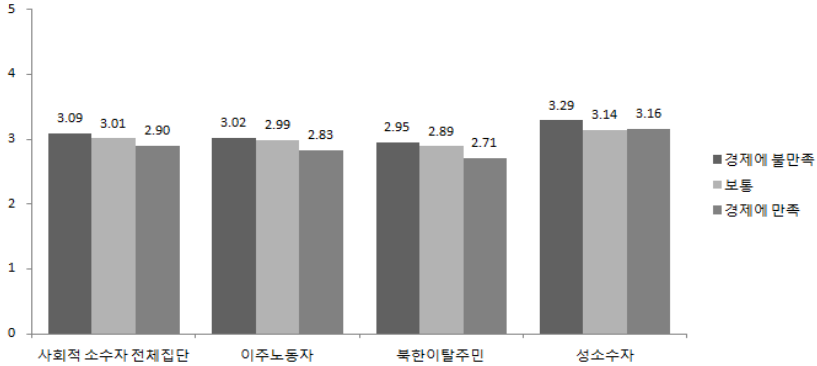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29]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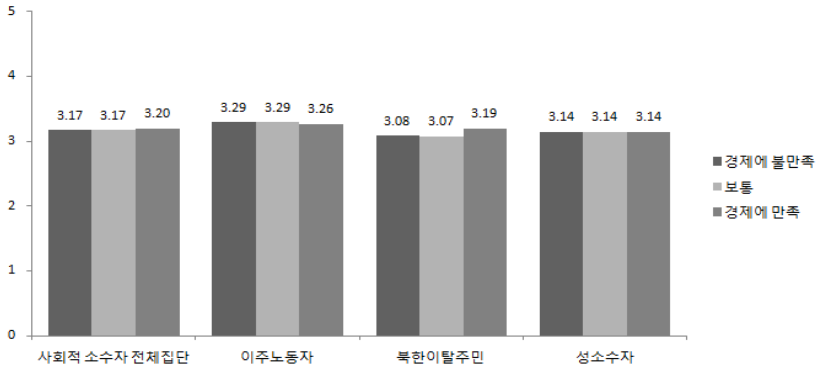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30]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단위: 점)



주: 평균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6〉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
(단위: 점)

구분	명시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경제에 불만족	3.09(.51)	3.02(.63)	2.95(.53)	3.29(.91)	c>a>b
보통	3.01(.48)	2.99(.66)	2.89(.46)	3.14(.82)	c>a>b
경제에 만족	2.90(.59)	2.83(.76)	2.71(.56)	3.16(.88)	c>a>b

주: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7〉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단위: 점)

구분	암묵적 편견				집단 간 비교
	사회적 소수자 전체 집단	이주노동자 ^a	북한이탈주민 ^b	성소수자 ^c	
경제에 불만족	3.17(.31)	3.29(.48)	3.08(.46)	3.14(.50)	a>c>b
보통	3.17(.30)	3.29(.47)	3.07(.43)	3.14(.47)	a, c>b
경제에 만족	3.20(.38)	3.26(.48)	3.19(.52)	3.14(.53)	a>b b>c

주: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8〉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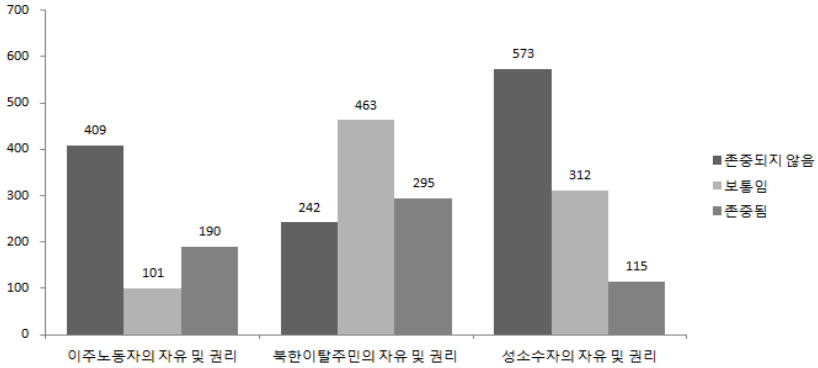
구분	존중되지 않음	보통임	존중됨
이주노동자의 자유 및 권리	40.90	10.10	19.00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및 권리	24.20	46.30	29.50
성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	57.30	31.20	11.50

주: 평균(표준편차)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그림 31]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 및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단위: 명)



자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원자료(2019).

〈부표 9〉 인권교육

연번	교육	법령	교육 대상	의무 여부
보편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1항, 제13조2항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의무, 공무원은 의무X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2항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
장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1항, 시행령 제5조의2 1항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6항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

연번	교육	법령	교육 대상	의무 여부
다문화·외국인	다문화이해 관련 연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6항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5항, 제12조의2 1항.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 공무원 의무X
	재한외국인 민원 업무 전담직원 교육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0조1항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무원(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X

연번	교육	법령	교육 대상	의무 여부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보수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의3 1항 및 2항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x
이동	아동학대 예방 및 신교의무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1항 및 2항, 제26조의2 1항 및 2항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 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연번	교육	법령	교육 대상	의무 여부
노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노인 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3 1항 및 2항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 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사자 의무, 이용노인 의무X
정신 건강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1항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의무
노숙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의무
성희롱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2항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 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부표 10〉 기초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영월군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원주시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태백시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포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성남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수원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오산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의정부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사천시	사천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창원시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함양군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미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기본 조례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도	시군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 증진 기본조례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목포시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보성군	보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영암군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완도군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화순군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4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시도	시군구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금산군	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논산시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보령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여군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산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천군	서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예산군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천안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태안군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홍성군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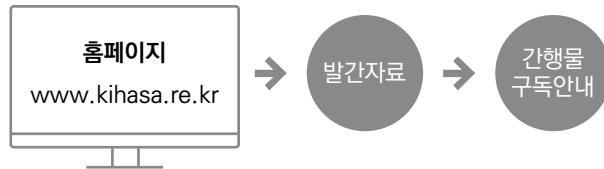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Yes24 <http://www.yes24.com>

